

I. 청소년을 바로 알자

I. 청소년을 바로 알자

미래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할 청소년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많다. 여기서는 청소년지도자로서 지녀야 할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시각과 청소년의 삶의 양식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교자 한다.

1장.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

청소년에 관한 신문기사나 논문을 보면 모든 청소년이 문제청소년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폭력과 절도, 약물남용과 가출에 관한 기사에는 거의 빠짐없이 청소년이 등장하고, 청소년문화는 퇴폐와 향락주의, 감각주의로 일관되고, 미래와 목적없이 물질을 추구하며 생을 즐기는 청소년의 생활문화가 그려지고 있어 청소년 모두가 파국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 세대가 병들어 있기에 극약 처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수 밖에 없는가? 이것은 간단히 논의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청소년문제를 논하고 현실성 있는 문제해결책을 모색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성인은 성인대로, 노인은 노인

대로 누구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발달적, 가정적, 사회적 상황 때문에 크든 작든간에 문제행동을 하게 된다. 청소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해 주변에서 요란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극히 비판적인 전망을 하는가 하면, 어른이 정해 놓은 규준에 비추어 청소년의 행동이 이 규준에 일치하면 모범적 행동이고, 이를 벗어나면 탈선 행위라고 단순하게 규정짓기도 한다. 청소년이 행한 문제행동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사회적 가치규준에 벗어난 일탈 행동과 사회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까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또한 문제행동의 규정기준은 시대적 차이, 사회적 관습과 문화적 가치와 행위자의 나이나 성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행동 유형은 변화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한 연령대에는 수용되는 행동이 다른 연령대에는 반사회적 경향의 지표가 될 수 있고, 남자에게는 별로 문제시되지 않으나 여자에게는 문제행동으로 규정되기도 하며, 1960년대의 문제행동이 1990년대에는 문제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행동을 놓고 ‘이것이 문제행동이다’라고 쉽게 단정짓는 것은 경솔한 판단이다. 문제행동에 대한 판단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행동이나 심리 상태의 정상여부 또는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하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데 그 행동이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지, 심리적 고통이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가를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슷한 연령과 상황에 처

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평균에서 많이 이탈되어 있는가, 그 행동의 빈도가 주기적인가, 일시적인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다.

둘째, 일부 비행청소년으로 인해, 다수의 건전하고 오히려 보수적인 청소년의 삶이 왜곡되어 기성세대에 비추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니 논의에 여지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해 과잉반응 내지는 과장되게 해석하지는 말자는 뜻이다.

셋째,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안이 별 변화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행동이 일어나도 이에 대해 식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근래 들어 청소년 폭력, 자살, 금품갈취, 약물비행 및 성비행동에 관한 사건이 많이 보고되면서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관심이 증폭되어 가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여론이나 일반인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바에 비하면 그나마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점만으로도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자살이니 폭력이니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방송매체나 신문 등에서 유행처럼 앞다투어 다루고, 문제제기만 무성하고 일회성 대안 또는 비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행동이 재발해도 항상 처음부터 문제의 원인과 현상 파악에만 급급할 뿐, 우리가 취했던 이전의 대안을 돌이켜보고, 이 시점에서 어떻게 그 체도를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없는 실정이어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넷째, 일반인이나 매스컴은 청소년의 행동이 밖으로 드러나고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폭력, 금품갈취

등 반사회적 행동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청소년 폭력이나 금품갈취만이 문제인가? 물론, 이러한 문제행동은 범죄에 속하고, 청소년 폭력집단이 조직화, 거대화됨에 따라 다수의 청소년과 성인을 위협하고 그 피해가 치명적이므로, 문제삼을만 하다. 그러나 이 외에도 비사회적인 행동, 즉, 남과 어울리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공상하거나 불안해하며 자폐증, 무기력감, 등교거부 행동등 처음에는 주위의 눈에 띄지 않지만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고, 유해업소 아르바이트나 약물오·남용, 가출, 자살, 우울증, 입시병, 청소년의 충동구매와 다수의 청소년이 겪고 있는 표출되지 않는 문제행동도 심각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장. 청소년의 행동특성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요즘 청소년의 행동특성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서 오는 독립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해 자신의 외부 세계와의 투쟁과 타협을 하는 시기이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 혼란스럽고, 자극적인 성인문화에 여과없이 노출되어 있는 생활여건 속에서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은 과거와 다르다. 즉, 그들의 부모 세대나 기존의 사회가 중시했던 가치에 대해 회의적이기 쉽고, 무엇이 옳고 그릇된 지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며, 가족이나 사회의식, 인생관등에 있어서 진보적이고 변화지향적이거나 동시에 자극

적이고 충동적인 것을 지향하는 행동 패턴을 보일 수 있다.

요즘의 청소년 세대는 대부분이 절대빈곤 상태를 체험하지 못했고, 뮤직비디오나 외국영화, 위성방송등 영상매체와 컴퓨터를 비롯한 뉴미디어에 매우 익숙한 세대이다. 물자가 풍부하고 다양해지면서 소비를 부추기는 선정적, 자극적 광고에의 노출, 교육과 사회화 부문에서 통제와 자율이라는 상호모순적인 환경은 청소년 세대의 소비지향적, 개인지향적, 탈권위주의적 특성을 조성하고 부추기고 있다. 이들은 충동적으로 소비하고, 물질주의를 중시하고, 유행을 쫓는 낭비 성향을 보이고, 일보다 여가를 중시하는 특성이 강하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개성과 다양성을 음악, 옷, 장신구, 음식의 취향, 여가활용 방식에 표출하여 매우 자유분방하고 남을 의식하지 않는 채, 소비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준거집단에의 소속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든, 아니면 보다 높은 지위 또는 이상적인 집단을 준거로 삼아 자신의 집단과는 구분하기 위해서 소비한다. 이들 청소년은 권위주의적 인간관계, 통제, 전통적 예절이나 격식에 대한 저항과 거부등을 탈권위주의적 특성을 갖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과거 청소년들과 전혀 다른 신체적, 심리적 발달을 경험하는 별종은 아니다.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서 오는 독립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해 자신의 외부 세계와 투쟁과 타협을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단지, 과거에 비해 세상이 변화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부모 세대나 기존의 사회가 중시했던 가치에 대해 회의적이며, 사회 전반에 걸쳐 무엇이 옳고 그릇된 지에 대해 혼란스럽고, 자극적인 성인 문화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생활여건 속에서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

은 과거와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여건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숙고하기보다 쉽고 간단하며, 자기중심적인 해결책을 취하게 한다. 이것을 놓고 기성세대들은 청소년들이 즉흥적이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유아적이라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기성세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특히 부모의 책임이 크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녀양육시에 자녀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키우며 수용적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 잘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한 면이 많기 때문이다. 아이 스스로 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잘 못한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부모가 대신 해주거나 자녀의 엉뚱한 질문에 대해 대답이 궁한 나머지 아이의 엉뚱함을 탓하지는 않았는지 함께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학교성적에 대해 과도한 열을 올리는 부모들을 보며 지나치다고 생각하면서도 따라하지 않으면 불안하여서 자녀에게 더 공부할 것을 요구하는 부모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 왔다. 자녀는 부모의 과도한 기대에 초조해하고, 긴장하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못건뎀다. 이렇듯 결국 자녀가 보여주는 행태의 상당 부분이 부모 행동의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나약하다, 인내심이 부족하다, 행동이 답답하다, 한심스럽다는 말을 부모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모든 청소년이 다 문제청소년이고 한심스러운 것은 아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다각적으로 생각해보고, 가능한 여러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을 자신의 역량에 맞추어 선택하고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청소년도 있다. 좌충우돌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감내해야 할 것도 받아들이는 청소년도 있다.

그러나 학력 제일주의가 팽배한 우리 문화권에서는 유아적이며, 무기력한 청소년이 양산될 수 밖에 없다. 학업성적에 따라 차별화된다 해도, 각 집단별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다를 바 없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모범적인 생활로 선생님의 인정을 받으며, 미래를 위해 공부 이외의 모든 욕구와 기회를 연기한다.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이 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학교내의 위계질서와 규칙에 자기자신의 정체감을 짜 맞추며, 자기중심적 성향을 보인다. 모든 에너지가 학업 쪽으로 쏠리다보니, 자연 원만한 또래관계나 전인적 발달 등 균형잡힌 발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반면, 소위 노는 아이들은 자신의 이미지나 이미 쳐져버린 성적 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무의미한 학교생활을 벗어나고자 한다. 겉으로는 교사나 급우의 평가를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 괴로워한다. 이들은 답답하고 억눌린 마음을 학교 밖에서 어른들이 금기시하는 일을 실제 해 봄으로써 해소한다. 괴로움을 덜기 위해 당구장, 카페, 호프집/소주방, 디스코텍, 만화방, 전자오락실 등에 놀러 다니면서 즉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한다. 자신의 성숙함을 과시하기 위해 치장하고, 술과 담배를 상습적으로 하며, 노는 것도 한 때라며 현실을 즐긴다. 이들에게 미래는 없는 것 같이 행동하며, 더욱 자신은 누구인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에 관한 사고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중간층 아이들은 앞서 두 집단으로부터 주눅든 생활을 한다. 공부를 포기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위상으로 인해 갈등한다. 학교 경쟁에서 실패를 맛보고, 열등의식이 형성되어 무력감, 무능감, 소원감 등 정서적 감정을 겪는다. 이들 청소년은 앞서 두 집단보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 꿈을 키울 수 없다는 점에 불안해하고 자신의 역량과 삶의 목표에 대해 고민한다.

이렇듯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준비도가 다르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은 무엇일까.

밖으로 표출되는 신세대 청소년의 행동은 기성세대와 다르지만, 인간이 갖는 공통적 속성 차원에서 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면 누구나 경쟁상태보다는 휴식을 원하며, 심각한 것보다는 즐거움을 누리려고 한다. 청소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요즘처럼 순간적이고 자극적인 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가운데, 민감한 청소년이 이것을 무시하고 지내기에는 더더욱 어려움이 클 것이다. 오히려 혼탁해진 환경 속에서 그나마 밝은 생각을 갖고 건강하게 지내는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할 것이다.

부모건 교사건 청소년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청소년의 행동이 그릇된 경우, 이를 바로 잡기에 앞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먼저 살펴야 한다. 지도자의 효과없는 충고가 반복되면, 잔소리로 들리고, 비슷한 상황에서도 이들의 반응이 예상되어 청소년 스스로 대화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완벽한 어른의 모습만을 보여주려 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도 있다. 어른 스스로 자신의 실수에 대해 인정하고 어리다해도 필요한 경우 이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보다 성숙하고 인간적인 모습이다.

청소년을 대할 때 또한 잊지말아야 할 바는 누구나 때로는 일상의 틀을 벗어난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싶어하며,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다. 어른들 스스로가 청소년의 행동에 대해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돌이켜보자. 어른들도 청소년기에는 분명 숨기고 싶거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미소짓게 하는 행동 한가지씩은 분명 있을 것이다. 바로 열린 마음을 갖고 청소년을 대하지 않으면, 양세대간의 거리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지게 된다.

II. 문제 행동에 대한 이해

II.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청소년은 꿈과 희망의 미래를 힘차게 펼쳐갈 우리 사회의 주인이다. 이들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행동양식을 지닐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은 청소년의 정서와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다양한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수의 청소년이 연루되기 쉬운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청소년지도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1장. 청소년흡연

청소년 행동에 대한 제약이나 통제가 많이 줄어든 1980년대 이후부터 청소년 흡연율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학생의 흡연도 눈에 띄게 증가하여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흡연행위는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신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며 약물남용을 유발하는 요인의 하나로 나타남(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3)에도 불구하고 기호품이라는 미명으로 방치되고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을 감소를 위한 지침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청소년흡연의 실태, 원인, 위험성 및 여러 상담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청소년흡연 실태

(1) 흡연에 대한 태도

담배가 기호품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점차 소비가 증가되고, 청소년 사이에서도 청소년흡연에 대한 우호적 사고가 팽배해지고 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7). 특히 중학생(31.5%)보다 고등학생(50.6%)이, 남학생(37.3%)보다 여학생(44.8%)이 흡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2) 흡연율

청소년의 흡연경험율은 청소년의 지위, 학년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학회의 연구(1993)에 의하면 초등학생 9.6%, 중학생 14.7%, 고등학생 48.8%, 근로청소년 37.7%, 무직청소년 64.9%, 소년원청소년 95.5%가 흡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율의 증감추세를 살펴보면(청소년대화의 광장, 1993) 남학생은 고1(54.1%)에서 고2(80.8%)사이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여학생은 중3(13.5%)에서 고1(28.7%)사이 많이 증가했다.

인문계 고등학생 1,79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강윤주(1996)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상 남학생의 매일흡연자는 20.5%이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매일흡연율이 증가하여 3학년이 1학년보다 10.4% 많았다. 여학생의 경우 매일 흡연율은 4.1%이며, 가끔/주간/매일 흡연자를 합한 흡연율은 남학생이 27.7%, 여학생이 6.6%이며, 과거 흡연경험까지 포함할 경우, 흡연경험율은 남학생 48.2%, 여학생 17.8%로 나

타났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997)의 조사에서도 중고생의 흡연경험은 전체응답자의 36.4%이며, 중학생(31.0%)보다 고등학생(41.1%)이, 여학생(28.7%)보다 남학생(47.7%)이 많았으며, 이는 주왕기·조영제(1997)의 연구결과와도 이와 일치한다.

(3) 흡연시작 연령

주왕기·조영제(1997)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흡연시작 시기는 10세이전이 13.7%, 11-12세가 13.0%, 13-14세 15.7%, 15-16세 25.3%, 17-18세 19.1%, 19세 이후가 11.6%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15-18세에 담배를 처음 피워보았다는 비율이 많지만, 남학생은 12세이하에 시작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여학생은 19세이후에 시작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러한 경향은 이상은(1994)과 현대사회과학연구소(199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청소년 혼자 있을 때 보다 또래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 담배를 더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복자, 1994). 중학생의 84.5%, 고등학생의 85.2%가 여럿이 있을 때 담배를 더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행동이 또래 압력과 동조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4) 금연에 대한 태도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의 대부분 금연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나, 많은 청소년들이 금연 의사만 있을 뿐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흡연 중고생의 91%가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1회시도(22.6%), 2-3회(45.9%), 4-6회(15.8%), 7회이상(6.7%) 시도한 바 있으나 효과적으로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다(고복자, 1994). 따라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대책 모색이 시급하다고 본다.

2. 청소년흡연의 원인

청소년흡연 원인을 관련 연구(청소년대화의 광장, 1993: 강윤주, 1996: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7) 결과를 토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단순히 어른의 흡연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그 행동에 대해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거나 그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또는 자신이 어른스러워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담배를 핀다.

청소년흡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또래의 압력이다.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준거 집단인 또래 집단에서의 소속감과 인정은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친구들이 담배를 권하게 되면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친구들도 다 피는데 나만 못하면 창피하다는 생각에서 흡연을 시작한다. 청소년은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심과 도전심으로 흡연을 하기도 하는데 금지된 행동을 같이 했을 때 또래집단내 결속은 더 강해지기도 한다.

스트레스는 흡연행동을 촉진하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다. 청소년은 입시의 부담감과 반복되는 시험, 앞날에 대한 답답함,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등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또한 가족간 갈등, 부모와의 소원함, 특히 부모와의 별거는 여학생의 흡연을 부추기는 요소이다. 운동이나 건전한 오락과 같은 적절한 분출구를 찾지 못

하는 청소년은 흡연을 통해서 일시적인 심리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얻게 되지만, 점점 더 담배에 의존하고 나중엔 습관이 된다는 점에 문제가 된다.

3. 청소년 흡연, 무엇이 문제인가

성인에 비해 청소년의 흡연을 더 문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일반적으로 흡연은 폐암을 비롯하여 심장병, 호흡기계 질환의 직접적 원인으로 건강에 결정적 해독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기의 흡연은 건강에 더욱 해롭다. 타르는 담배 연기를 입에 넣었다가 뱀종이에 내뿜을 때 나타나는 미립자가 농축된 흑갈색의 물질인데 식으면 액체가 된다. 바로 이 타르 속에는 각종 독성물질과 발암물질이 있다. 니코틴은 위의 수축을 약하게 하고 식욕을 잃게 하여 칼로리의 소모가 많아져 영양의 효율을 아주 적게 하고 신체적 발육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뇌세포를 비롯한 신체조직의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데 담배 연기에 노출될 경우 피해가 더욱 심하다.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은 일산화탄소, 즉 무연탄 냄새를 지속적으로 맡고 있다는 것과 같아 혈액의 산소운반기능을 감퇴시키고, 만성 저산소증 현상을 일으켜 신진대사에 장애를 주고 빨리 노화된다. 지적, 정서적 성장기에 흡연으로 인한 저산소증은 두뇌 활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사고능력과 의욕을 감퇴시키게 된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흡연자는 저체중아 및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의무총감(Surgeon General)의 1989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폐암으로 인한 사망율이 비흡연자의 5.2배인데 비해서 15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경우에는 18.7배에 달한다. 즉, 청소년의 흡연은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둘째,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성인기에 시작하는 것보다 니코틴 중독증에 더 깊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 담배는 니코틴 성분으로 인해 일단 피우기 시작하면 습관성이 되는 것이 특징이므로, 이른 나이에 시작하면 더욱 끊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청소년기의 흡연은 청소년 비행의 첫걸음이 된다. 청소년흡연이란 사회 규범의 일탈을 의미하고 대개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나쁜 여타의 일탈행위로 쉽게 이행된다. 흡연 청소년끼리 자연스럽게 또래 집단이 형성되고 술이나 약물을 탐닉하게 되어 자체 능력을 상실한 채 각종 비행을 저지르기 쉽기 때문이다.

4. 청소년흡연에 대한 잘못된 상식

우리가 담배에 대해 갖고 있다는 상식 중에도 근거없는 것이 많으며, 그릇된 정보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1 : 니코틴과 타르 함량이 적은 순한 담배는 인체에 미치는 해가 적은가.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이 적은 담배도 건강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니코틴의 함량이 적은 담배를 피는 경우 니코틴의 혈액내 농도가 충분하기 않아 담배를 더 많이 더 자주 피우게 되므로 담배 소비만 늘어날 뿐이다.

문2 : 담배를 피면 살이 빠지는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거나 살을 빼기 위해서 담배를 툼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일반적으로 흡연자의 체중은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4kg 적는데 이는 담배를 피우면 식욕감퇴와 만성 산소결핍증으로 신진대사에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일단 담배를 끊은 후 체중이 즉시 늘게 된다. 따라서 흡연은 체중 감소의 근본적 방법이 되지 못하고, 건강만 해치게 될 뿐이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체중을 줄이는 여러 방법 중에서 가장 해롭고 어리석다.

문3 :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가.

니코틴은 중추신경 흥분제이기 때문에 정신을 반짝나게 해 주며 잠시나마 기분이 전환되고 피로를 잊게 해 준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다. 담배에는 4,000여종의 독성물질이 있고 이 많은 물질들을 제독시키는 과정에서 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결국 피로가 쌓이면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5. 청소년흡연 관련법규

청소년흡연 규제법규는 청소년의 흡연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 대한 규제가 일반적이다. 미성년자보호법에 미성년자는 흡연을 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력을 지닌 것은 아니다. 이는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관련 법규들이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관련법의 일관된 지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청소년흡연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등이 있다.

(1) 청소년보호법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제26조1항). 제26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1조8항).

*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제2조1항).

(2) 미성년자보호법

○ 제2조1항에 미성년자는 흡연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미성년자는 20세 이하의 청소년을 지칭한다. 흡연을 하였을 경우, 유해행위를 한 청소년을 처벌하기 보다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판매상의 처벌과 친권자의 제지 대한 의무에 주안을 두고 있다. 우선 제3조에 “미성년자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한 친권자를 대신하여 이를 감독하는 자가 흡연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를 제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제4조1항에 영업자는 “담배 또는 주류판매자 및 그 고용인은 미성년자에게 그가 흡연 또는 음주할 것을 알고 이들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제6조1항에서 이를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 이 법은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명문화하였다.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풍속영업소에서 술과 담배를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조6항).

○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1항).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를 받는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영업정지·시설개수명령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2항).

(4) 국민건강증진법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

서는 아니되고(제9조2항), 또한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 담배를 판매 하여서는 아니된다(제9조3항).

○ 제9조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 배를 판매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제34조1항), 제9 조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34조2항).

6. 청소년흡연을 줄이려면

청소년흡연은 평생 니코틴 중독의 출발점이 되며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흡 연율은 남녀 모두 증가추세에 있으며, 흡연시작 연령 역시 연소화 되고 있다는 점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청소년흡연 예방 및 감소를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 급한 청소년흡연의 원인, 담배의 해악, 청소년흡연 관련법규를 알아 두어야 할 뿐 아니라, 아래 제시한 내용 역시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흡연을 조기에 발견하자.

① 조기발견에 도움이 되는 단서들

- ▶전과 달리 이유없이 껌을 자주 씹는다.
- ▶양치질을 자주한다.
- ▶갑자기 부모나 교사의 곁에 가기를 꺼린다.

- ▶ 말할 때 이유 없이 고개를 돌리고 말한다.
- ▶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하기를 꺼려한다.
- ▶ 갑자기 밤에 잠깐씩 나갔다 들어온다.

청소년이 담배피는 것이 확실한 경우, 부모나 교사등 지도자의 적절한 개입이 요구된다. 이 때 흡연행동에 대해서 설명없이 처벌이나 위협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일시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할 수 있지만 다시 흡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소년의 금연을 위해서는 어떻게 흡연을 하게 되었는지, 흡연을 하면 어떤 점에서 좋고, 어떤 점에서 불편한 지를 청소년 자신이 평가하여, 금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흡연 폐해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제시하여 청소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흡연하지 않을 때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와 청소년 지도자들은 앞서 언급한 흡연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청소년의 금연의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자

담배는 마약과 같이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끊기가 매우 어렵다. 담배를 끊고 이틀째가 되면 가장 괴롭고 금단 현상을 겪게 되나, 금연 후 3일이 지나면 과반수 정도의 사람은 금단현상에서 완전히 풀려나게 되므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72시간을 견디도록 한다. 이 때 주위의 도움이 매우 필요하다. 금연하려는 청

소년들의 의지력과 용기를 강화시켜 주고 운동을 하거나 그 밖에 흥미를 끌 수 있는 오락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흘이 지나면 니코틴 급단 현상이 서서히 없어지지만, 적어도 한달 동안은 긴장을 풀지 않도록 한다. 일단 한달이 지나면 담배를 성공적으로 끊을 수 있다.

성공적으로 금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체적 사항을 금연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 ▷청소년 스스로 담배를 끊을 결심을 하도록 하고 이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선언한다.
- ▷일단 선언한 후에 주위에 담배, 껌, 성냥, 라이타 등 담배와 관계된 물건들을 버림으로써 결심을 다시 한 번 다진다.
- ▷흡연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담배를 피지 않는다]라는 구호를 소리내어 외치며 결심을 다진다.
- ▷과일과 과즙 위주로 식사를 가볍게 하고 과식하지 않는다.
- ▷적어도 하루에 여섯컵에서 여덟컵의 물을 마신다.
- ▷심호흡을 천천히 3번 되풀이한다.
- ▷식후 15분쯤 가벼운 산책을 한다.
- ▷식사 후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않는다.
- ▷알콜 음료는 피한다.
- ▷너무 뜨겁지 않은 욕탕에 서서히 들어가도록 하며 온수 샤워를 한다.
-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 ▷흡연자 가까이 가지 않는다.

(3) 학교와 사회내 협조를 요청하자

비슷한 또래가 모여 청소년 짝연의 온상이 되고 있는 당구장과 카페에 대한 지역관리 및 순찰이 요구되며, 이들 업주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 내 흡연공간으로 지목된 운동장, 체육관, 화장실에 대한 학교 측의 관리 및 지도가 병행될 때, 이들의 활동이 그나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7. 금연관련 상담기관

청소년보호위원회	02-735-2648~9
청소년보호특수전화	(지역번호)-1388
서울시 학교보건원 (학교건강관리과)	02-3999-549, 544
(보건연구과금연교실)	02-3999-535, 564
한국소비자연맹	02-794-8816
서울위생병원 5일 금연학교	02-210-3615
국립의료원 금연교실	02-260-7284
한국금연운동협의회	02-641-5191
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	02-958-8695
연세대 보건대학원	02-361-5046
전주금연교실	0652-86-4273
울산5일 금연교실	0522-77-1829
부산위생병원 건강교육과	051-254-3069
금연교육연구소	0373-72-8975

안양금연학교	0343-48-8581
금연의 전화	02-700-6654(서울)
	051-700-6787(부산)
	042-700-6898(대전)
계명대병원	053-252-5101
청소년대화의 광장	02- 253-3813

* 참고문헌

- 강윤주. 1996. 청소년흡연과 관련된 요인. 학교보건연보 제26호.
- 고복자. 1994. 청소년금연교실의 효율적인 운영. 학교보건연보 제 24호.
- 면목사회복지관. 1995. 청소년악물남용 상담 매뉴얼.
- 이상은. 1994. 초·중·고등학생들의 흡주 및 흡연실태에 대한 조사. 학교보건연보 제24호.
- 주왕기·조영제. 1997. 청소년 약물남용 전국 실태조사.
청소년학 연구. 제 4권 제1호, 169-181.
-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3. 청소년 흡연행동: 습관형성과정, 실태, 대책.
- 한국청소년학회. 1993. 청소년 약물남용실태와 예방대책.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3. 마약류란 무엇인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7.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조사결과.
마약없는 밝은사회. 통권 제9호.
- 현대사회연구소. 1992.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실태.

2장. 청소년음주

우리사회는 술 마시는 것 자체에 대해 매우 허용적이다. 특히 남자라면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이다. 게다가 청소년음주는 다른 비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크게 문제삼지 않는 분위기이다. 청소년들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마시거나 스트레스를 풀다거나 친구로부터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 음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서서히 술의 양도 늘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나중에는 알콜중독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술에 대한 바른 지식없이 무분별하게 술을 마심으로써 판단력을 상실한 채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며, 죽음에 이르게 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여기서는 증가추세에 있는 청소년의 음주 실태와 원인,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 음주 실태

청소년의 음주 실태는 연구마다 세부적인 수치상에 차이를 보이나, 전반적으로 음주경험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생청소년 보다 근로/소년원 청소년의 음주경험율이 높다는 점은 공통적인 결과이다(표 2-1).

<표 2-1> 청소년의 음주 경험률

(단위 : %)

조사대상자 연구자(연도)	고등학생			중학생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평균
김경빈(1993)	72.6	17.5	45.1	38.8	25.1	32.0
차경수(1993)	76.9	68.6	72.8	42.8	35.0	38.5
마약퇴치운동본부(1997)			86.0			63.7

학생 청소년보다 근로 청소년/소년원 청소년의 습관성 음주가 심각하며, 남자 고등학생 5명 중 1명은 습관성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경애, 1992; 김경빈외, 1993; 차경수외, 1994).

음주경험 학생 중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음주를 최초로 경험한 경우는 10.3%, 초등학교 30.3%, 중학교 42.5%, 고등학교 16.8%로(이상은, 1994), 매우 어린 시기부터 술을 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이전에 이미 40.6%의 청소년이 음주를 경험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며 음주교육은 초등학교 시기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 청소년 음주의 원인

청소년 음주의 원인은 다양하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마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7). 즉, 성인은 흔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청소년은 술을 권했을 때 적절히 거절할 방법을 모르
고, 술을 거절했을 때 친구로부터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 음주를 하
는 등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로움, 우울, 불
안감을 잊기 위해 또는 심심해서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단순
한 호기심으로 마시거나 어쩌다 마신 술맛이나 분위기가 좋아서 조
금씩 마시는 사이에 술을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가족 중 알콜중독자가 있는 경우, 술에 대해 혐오스러
워하면서 동시에 술 마시는 것에 익숙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3. 술은 왜 위험한가

술(알콜)은 탄소, 수소, 수산기로 이루어진 화합물질이며 뇌의 기
능을 둔화시키는 중추신경 억제제로 수면 및 마취 작용이 있는 중
독성이 강한 습관성 약물이다.

알콜함량은 술에 들어있는 에틸알콜의 백분율로, 백주에는 3-5%,
일반 포도주 14-20%, 소주 25%, 위스키, 럼, 진, 보드카와 같은 희
석식 주정제는 40%이상의 알콜이 함유되어 있다.

술을 마시면 위의 점막이나 작은 창자 윗부분에서 흡수되어 혈류
를 통해 온 몸에 순환하게 된다. 체내에 흡수된 알콜의 98%는 간에
서 대사되며 나머지 2%는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신장을 통해 소변
또는 허파를 통해 호흡으로 배출된다. 간이 하루에 분해할 수 있는
알콜 양은 체중 70kg인 경우 49mg으로 2홉들이 소주 1/2병 정도인

데 단시간에 다량의 술을 마시면,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며, 심한 경우 사망까지 초래한다.

특히 신체내 조직이 미성숙한 청소년기에 술을 마시면 성인이 마신 경우보다 훨씬 강력하게 인체에 작용한다.

첫째, 술은 간질환(지방간, 간염, 간경화, 간암), 위장질환(위장염증, 위궤양), 췌장염, 알콜성 말초신경계 질환, 알콜성 치매, 성격장애(충동성 증가, 분노, 후회, 자기연민, 의치증, 명정함, 공포)등 여러 질병을 일으킨다.

둘째, 술은 청소년기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여 성장장애를 초래하여 음주청소년은 왜소한 체격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청소년기에 술을 마시면 빠른 속도로 뇌신경 세포에 알콜이 확산되어 마비 현상이 일어나고 감각과 운동의 둔화가 초래된다. 또한 판단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대뇌피질의 기억 세포가 파괴됨으로써 기억력이 감퇴되어 학습효과가 저하된다. 파괴된 뇌신경 세포는 다른 세포와는 달리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에 그 폐해가 심각하다.

넷째, 술을 마시게 되면 뇌신경계의 마비와 흥분을 야기함과 동시에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어 창피감도 없어지고 대담한 행동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길에 세워 둔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타고 뺑소니치기도 하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며 여성을 희롱하거나 성폭행을 하는 등 비행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다.

다섯째, 호기심에서 시작한 경우나 어린 시기에 술을 접한 경우 습관성 음주자나 만성 알콜중독이 되기 쉽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알콜중독은 수십년간 술을 마신 사람이 걸리는 줄 알지만,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만성 알콜중독자수는 1,830만명에 이르며 이 중 395만명은 14-17세 연령층의 10대들이다(황종우, 1995).

대개의 알콜중독자는 자신이 중독자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언제나 자유롭게 술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알콜중독이 되면 심리적 의존성이 생겨 술에 대한 강박적 사고를 가지며,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술을 찾는다. 그러나 술이 깨면 더 큰 무기력을 경험하고 이 상태에서 해방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필요로 한다. 신체적 의존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손이 떨리고 환각이 보이거나 얼굴과 손발이 창백해지고 식은 땀이 나고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고 의식의 몽롱하여 외계를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한다. 또한 엉뚱한 헛소리를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급단 증상이 나타난다. 술로 인한 폭력과 알콜성 편집증으로 인해 폐인이 되어 대인관계를 제대로 못하고 실직하거나 가족 불화를 경험하게 되는 등 폐해는 치명적이다.

한편, 급성 알콜중독증은 평소 술을 마셔보지 못한 청소년이 갑자기 급하게 폭주를 한 경우에 일어난다. 급성 알콜중독증은 안면이 붉어지며 호흡곤란, 의식혼탁, 감각둔화, 동공이 넓어지고 경련, 식은땀, 구토, 약한 맥박등 증상을 보이며, 심한 경우 사망한다. 이와 같이 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혈중 알콜농도에 따른 술이 신체 및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표2-2로 정리될 수 있다.

<표 2-2> 술이 신체 및 정신에 미치는 영향

혈중알콜농도	신체/정신 반응	알콜제거시간
0.03%	홍조, 발작, 근육이완, 현기증/ 판단력, 이성 호려짐	2시간
0.06%	근육조절능력감소/ 억제감탈피	4시간
0.09%	구토, 출혈/ 조직적 사고 곤란	6시간
0.15%	근육조절능력저하, 운동능력상실/ 사고와 행동의 일관성 결여	8시간
0.40%	혼수상태/ 기억상실	10-12시간
0.50%	사망	

4. 술에 대해 바로 알기

음주 청소년을 접할 때 무조건 술이 해로우니 나중에 커서 마시라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다. 다음은 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음주 청소년을 접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질문과 응답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문1 : 술을 마시면 간장병에 걸리기 쉬운가?

술마시는 사람은 당연히 간장을 걱정해야 한다. 술을 마시면 20%는 직접 위에서 흡수되고, 나머지 80%는 소장에서 흡수된다.

이렇게 흡수된 술은 문맥이라는 혈관으로 모이고 여기에 모여진 술은 전부 간으로 보내진다. 술은 유독성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간으로 보내 무독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 체중 60~70 kg인 사람의 한 시간 동안 대사량은 청주로는 1홉, 맥주로는 한 병으로 이것을 혈액 속에서 완전히 소실시키는데는 3시간을 요하게 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시면, 대사되지 못한 술 자체가 전신에 고루 퍼져 조직파괴를 일으키게 되며, 대사작용을 하느라 간에 부리가 가기 때문에 기능 저하를 일으켜 간장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문2 : 체중과 음주량과의 관계는? 체구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보다 주량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 체중의 3분의 2는 수분이다. 체중이 무거운 사람은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콜 성분이 체내에 들어가 체액속의 수분과 희석되므로 혈중 알콜농도가 잘 오르지 않는다. 따라서 체중이 무거울수록 음주 허용량이 높아진다. 그러나 술을 무독 처리하는 간장 대사량은 체중 뿐 아니라 인종, 실내온도, 술의 온도, 술의 농도, 위에 남아 있는 음식의 양, 음주패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체구가 큰 사람이 무조건 술을 잘 마신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 특히 간의 유독성 분해 효소가 거의 생산되지 않는 사람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진홍색으로 변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호흡이 곤란해지므로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면 위험하다(황종우, 1995).

문3 : 술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임산부의 음주는 선천성 태아알콜증후군을 일으켜 정신기능 저하, 심장장애, 심장기능의 결함이 있는 비정상적 신생아가 출산될 수 있다. 산모의 음주량에 대한 안전선은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주왕기, 1995), 임신기간 동안 음주를 삼가해야 한다.

문4 : 술을 마실수록 술에 강해지는가?

술을 마실수록 술에 강해져 내성이 생기게 되지만, 2-3배 이상 늘지 않는다. 술의 양이 늘어나면 간의 유독성 물질 분해 효소가 과잉생산되어, 간장 조직이 약화되고 단백질 합성, 호르몬 조절, 면역체 유지 등 간이 하는 일에 지장을 일으켜 지방간, 간경화, 간암과 같은 악순환을 밟게 된다. 또한 술에 강한 사람이 수술후 회복이 빠를 때, 보통량의 마취제로는 마취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마취제 역시 유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유독성 물질 분해 효소가 이를 무독성으로 대사해버리기 때문이다.

문5 : 남성과 여성 중 술에 치명적인 사람은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은 체중이 적다. 술의 2대 장애라고 할 수 있는 간경화증과 알콜만성중독자가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남성을 20년으로 본다면, 여성의 경우는 10년 미만에 70%가 발병한다는 의학통계가 있다. 이는 여성음주가 남성에 비해 훨씬 더 위험도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문6 : 술을 마실 때 음식과 함께 마시면 좋은가?

음식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술이 위로 들어가면 술이 직접 위벽에 닿지 않아 위점막의 손상을 막고 술의 흡수를 지연시켜서 간장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문7 : 술과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술을 약물과 섞어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술과 항히스타민제(기침, 감기, 알레르기 치료제), 마리화나, 바비류레이트나 기타 수면 유도약과 함께 사용하면 이러한 약물의 작용을 위협할 정도로 상승시킨다. 이들 약물과 소량의 술을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운전능력, 기계조작과 같은 작업능력을 손상시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

문8 : 술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가?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일시적으로 몸이 따뜻해짐을 느끼나 실제로는 체온 손실이 많다. 특히 겨울에 음주 후에 차가운 바깥에서 자다가 동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9 : 블랙커피등은 술을 깨게 하는데 효과적인가?

커피는 술을 분해시키는 기능은 없지만 두통과 전신의 피로감을 없애주는 진정 작용으로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효과적이다.

5. 청소년음주 관련 규제법규

(1) 청소년보호법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제26조1항). 이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1조8항).

*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제2조1항).

(2) 미성년자 보호법

○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2항에 미성년자는 음주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음주를 제공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6조의 2항).

(3)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 풍속영업소에서 술과 담배를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조6항).

○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1항).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를 받는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영업정지·시설개수명령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2항).

6. 청소년 음주를 줄이려면

청소년 음주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술에 대한 정확한 지식, 해악, 거절하는 방법 및 금주 관련 프로그램이나 상담/치료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1) 술에 대해 바르게 알려주자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은 술에 대한 올바른 기초지식도 없이 호기심으로 음주를 시작하고 습관적으로 마시는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음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들에게 술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려주어야 한다. 술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고 중독성이 있으며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통제할 수 없으므로 적정량만을 마셔야 한다는 점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음주 청소년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곳에 의뢰하기 위해서는 금주교육기관 및 상담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2) 술을 거절하는 법을 알려주자

술은 다른 약물처럼 중독성이 있어 청소년기 음주는 평생 알콜중독으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술을 마시게 되는데 만약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피하기 어렵고, 파들림을 당하게 되어 술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

로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과 연습, 주위 사람들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미국의 컬버고등학교(Culver High School)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한 금주 방법을 알아두면 술을 거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목사회복지관, 1995).

술을 거절하는 방법

- ▶마시지 않겠어. 나는 나 스스로를 통제하고 싶어.
- ▶마시지 않겠어. 나는 부모님과 싸우고 싶지 않아(선생님, 친구, 형제등).
- ▶마시지 않겠어. 만일에 술을 마시면 내가 가진 특권을 잃게 될 거야(예: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권한).
- ▶마시지 않겠어. 술은 별로 맛이 없어.
- ▶마시지 않겠어. 나는 원래 술을 마시지 않아.
- ▶마시지 않겠어. 내 모습이 달라져서 싫어.
- ▶마시지 않겠어. 나중에 공부해야 돼.
- ▶마시지 않겠어. 나는 지금 머리 속이 맑기를 원해.
- ▶마시지 않겠어. 술을 마시고 난 후에는 꼭 내 자신에 대해서 놀라곤 해.
- ▶마시지 않겠어. “웬찮은 십대”는 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 ▶마시지 않겠어. 술을 마시고 나면 피곤할 것 같아.
- ▶마시지 않겠어. 더 이상 살이 찌고 싶지 않아.
- ▶마시지 않겠어. 나는 스스로를 단련하는 중이야.
- ▶마시지 않겠어. 술 말고 다른 음료는 없니?

(3) 술 마시는 태도에 대해서 알려 주자

청소년들이 어른의 나쁜 음주문화를 따라하지 않도록 술을 마실 때의 바른 태도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

- ▶ 조금씩 천천히 마신다.
- ▶ 주량을 자랑하지 않는다.
- ▶ 음식을 섭취하며 마신다.
- ▶ 술을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다.
- ▶ 자신의 적정 음주량 이상 절대 마시지 않는다.
- ▶ 타인에게 지나치게 술을 권하지 않는다.
- ▶ 술과 함께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4) 알콜중독 진단표를 활용하자

음주청소년을 지도할 때, 알콜중독 성향을 파악하면 정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음은 알콜중독 성향을 예측하기 위해 미국의 존홉킨스 대학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알콜중독자 진단용 설문지를 제시한 것이다. ‘예’를 답한 수를 기준으로 알콜 중독의 정도가 평가되는데, 1개인 경우는 중독을 경계하는 것이고, 2개는 중독의 가능성이 있으며, 3개 이상은 틀림없는 중독자로 분류되는데, 이 기준에 따라 해당 청소년의 행동을 관찰하고 처우한다.

알콜중독자 진단용 설문지

1. 출근, 음주 때문에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 잦은가
2. 음주로 말미암아 가정이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가
3. 다른 사람에 대하여 수줍은 생각이 들어 술을 마시는가
4. 다른 사람에게서 호평을 받으려 술을 마시는가
5. 술을 과음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가
6. 음주 때문에 금전적 곤란을 받고 있는가
7. 당신보다 낮은 수준의 동료들과 어울리거나 열등한 환경에서 술마시기를 좋아하는가
8. 당신의 음주가 가족의 행복에 대해 무관심하게 했다고 생각하는가
9. 음주를 시작한 후부터 품고 있던 야망이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는가
10. 당신은 매일 일정한 시간이 되면 술을 마셔야만 하는가
11. 아침에 깨어 일어나면 술 생각이 간절하게 일어나는가
12. 음주가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가
13. 음주량이 처음에 비하여 줄어드는가
14. 음주가 당신의 직업이나 사업을 위태롭게 하는가
15. 근심 걱정을 모면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는가
16.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기 보다는 혼자서 마시기를 더 좋아하는가
17. 음주로 인하여 완전히 기억을 상실했던 일이 있는가
18. 음주 때문에 의사의 치료를 받은 일이 있는가
19. 자신감을 갖기 위해 술을 마시는가
20. 음주로 인하여 병원이나 전문요양원에 입원한 일이 있는가

(5) 만취해 의식을 잃은 청소년에 대한 조치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청소년을 접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의식이 혼탁하고, 감각이 둔화되며, 동공이 넓어지고 경련, 식은 땀, 구토, 맥박등이 약하면,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태라면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한다. 만취한 자의 옷을 풀어 편하게 해 주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옆으로 눕혀, 손가락을 입에 넣어 억지로 토하게 한다. 그 다음 술을 마시면 생리적으로 호흡과 피부와 소변을 통해 알코올의 2%가 자연배설되므로 보온이 필요하며 특히 알콜 분해효소가 근소하거나 전무한 사람은 체온을 유지시키며 알콜의 체외 발산을 도와주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환자의 의식상태를 감안하여 약간 비스듬히 일으킨 후 커피나 홍차를 입에 떠 넣어준다. 액체가 기도로 잘못 넘어간 경우 환자가 기침을 하면 신경반사가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지만, 기침을 하지 않거나 얼굴과 손톱이 청흑색으로 변한 경우라면 이미 사망했다는 징후이다.

7. 음주관련 상담 및 치료기관

청소년보호위원회

02-735-2648~9

청소년보호특수전화

(지역번호)-1388

국립 서울 정신병원

02-457-0095

국립 나주 정신병원	0616-31-0541, 1343
시립학교건강관리소	02-399-9564
안양 신경정신병원	0343-55-3331 ~ 8
양산 신경정신병원	0523-389-1234 ~ 40
천주의 성요한 의원	062-529-0041 ~ 3
면목사회복지관 상담실	02-439-2038 ~ 9
동부시립아동상담소	02-248-4567
밀알선교복지회	02-527-3210-2

* 참고문헌

- 김경빈 · 주왕기 · 박명윤. 1993. 약물남용의 실태와 예방대책. 한국약물남용연구소.
- 소경애. 1992.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 현대사회연구소.
- 면목사회복지관. 1995. 청소년약물남용 상담매뉴얼.
- 이상은. 1994. 초중고등학생들의 음주 및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 학교보건연보. 제 6집.
- 주왕기. 1995. 본드, 마리화나, 필로폰. 박영륜출판사.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7.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조사 결과. 마약없는 밝은 사회. 통권 제9호.
- 황종우. 1995. 알콜박사의 귀강이야기. 아침.

3장.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기에는 가정, 학교, 또래집단, 매스컴, 지역사회환경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환경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유해한 영향을 미칠 때, 청소년은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기 어렵고, 왜곡된 가치관을 갖기 쉬우며, 심한 경우 비행에 연루되기도 한다. 심리적으로 혼란스럽고, 주위 자극에 대해 민감하며 청소년에게 금기시하는 행동이 유독 많은데, 놀고 싶은 욕구를 자연히 가면서 이미 공존하고 있는 흥미본위의 성인문화를 무시하고 공부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유해업소에 접촉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휩싸이다가 점차 빠져들면서 헤어나지 못하고 유해업소에 취업을 마다 않는 사태에 이르는 등 연쇄적으로 다른 비행을 한다.

여기서는 요즘 청소년의 유해업소 실태는 어떠하며, 이러한 행위에 따르는 법적 조치, 유해업소 출입 방지를 위한 지침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실태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는 다방, 카페, 룸싸롱, 술집, 여관, 단란주점, 카바레, 사창가 등 그 성격이 객관적으로 유해하다고 인정되고, 법적으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업소 및 자체적으로는

유해업소로 분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유해성이 있는 모든 업소를 포괄한다. 청소년백서(1996)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업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1>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업소현황

계	식 품 접 객 업 소				위 생 접 객 업 소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단란 주점	유흥 주점	이용 업소	숙박 업소	전자 유기장
592,039	417,629	16,309	17,533	64,661	30,441	30,764	14,702

* 자료 : 청소년백서 1996

형사정책연구소의 연구(김준호·박정선, 1995)에서는 유해업소를 크게 오락성업소와 성인용업소로 나누고, 각각을 5개의 하위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오락성업소로 분류된 업소로는 오락실(성인오락실, 전자오락실), 만화·비디오가게(만화가게, 만화방, 비디오가게, 비디오방), 롤러스케이트, 당구장, 노래방 등의 다섯 유형의 업소가 포함된다. 이에 비해 성인용업소에 포함되는 업소들은 술집(스탠드바, 룸싸롱, 생맥주집, 호프집, 단란주점, 소주방 등), 포장마차, 디스코장(디스코·나이트클럽, 락카페, 카바레, 성인디스코), 숙박업소(여관, 여인숙, 호텔), 매춘업소(사창가, 퇴폐이발소) 등의 다섯 유형의 업소들이다.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해업소 출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대략적인 추이를 파악할 수는 있다.

수도권과 지방 6대도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문조(1992)의 연구에 따르면, 우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집이나 학교 주위의 유해업소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집 근처에 있는 유해업소는 비디오가게(94.2%), 전자오락실(91.2%), 카페/레스토랑(79.9%), 술집(78.2%), 만화가게(77.4%), 노래방(75.8%)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 중 특히 술집 및 카페와 같이 청소년들의 출입을 불허해야 하는 성인용 업소들이 청소년의 생활환경 주위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해업소 출입경험을 살펴보면, 영화관(92.8%), 전자오락실(89.2%), 비디오가게(87.3%), 만화가게(62.7%), 카페/레스토랑(61.7%), 노래방(43.3%), 포장마차(24.6%), 술집(24.4%), 당구장(19.6%), 디스코장(7.3%)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노래방, 술집의 출입경험이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학생의 유해업소 출입은 유해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소한 업소의 출입에서 시작하여 점차 유해성 정도가 높은 업소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먼저, 전자오락실·비디오가게·영화관과 같은 사소한 업소에 출입하여 카페·만화가게·노래방을 거쳐 점차 당구장·포장마차·술집·디스코장과 같은 보다 심각한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순서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을수록 유해업소의 출입이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유해성의 정도가 높은 업소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당구장(중학생: 6.7%→고등학생: 32.2%), 술집(중학생: 12.5%→고등학생: 35.2%), 노래방(중학생: 24.8%→고등학생: 61.0%) 출입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성별에 따른 출입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체적으로 많

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전자오락실, 당구장, 술집 출입은 남학생이 많은 반면, 카페/레스토랑은 여학생의 출입율이 높게 나타났다(문화체육부, 1992).

유해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소의 출입에서 시작하여 점차 유해성의 정도가 높은 업소로 출입이 전개되는 양상은 고성혜·이용교(1996)의 연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소의 이용율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한 학급당 노래방은 36.1명, 오락실은 29.6명, 비디오방 19.5명, 단란주점과 락카페는 각각 10명 정도가 출입 경험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학교 방과 후, 놀이문화에 취한 집단은 특히 돈암동이나 신촌, 수유리, 미아삼거리, 노원역등 청소년들이 많이 오가는 지역 내의 노래방, 소주방이나 호프집에 가고, 락카페를 가는 등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준호·박정선(1995)의 학교주변 유해환경 실태 및 비행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교 주변에는 주로 오락성업소(오락실, 만화·비디오가게, 롤러스케이트장, 당구장, 노래방)가 많이 발견되었고, 특히 노래방과 전자오락실의 분포가 두드러졌다. 이에 비해 성인용 업소(술집, 포장마차, 디스코장, 숙박업소, 매춘업소) 가운데는 술집의 분포가 두드러졌는데 이 역시 많은 학교주변에서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이용실태 조사를 보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유해업소 출입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성이나 폭력과 관련된 업소에는 더욱 그러한 경향을 보였다. 학교별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거의 모든 유해업소 출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과 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용하는 유해업소의 소재지를 보면, 오락성업소는 집 근처에 있는 것을 선호

하고, 성인용 업소는 집이나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업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용 요일별로는 공휴일이 주를 이루었으나 전자오락실과 당구장과 같은 곳은 평일 출입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해업소에 출입할 때는 친구들과 동행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환경에 많이 출입하는 청소년은 비행 경험이 많으며, 비행의 경중과 무관하게 어느 정도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학교 주위, 일반 주택가와 청소년을 주고객으로 하는 유해업소들이 청소년들을 자극하고 있어 청소년의 유해업소에 대한 일상적 노출은 심각한 편이다. 현실적으로 이들 유해업소를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는 없다. 가정이나 학교에 안주하지 못하고 청소년을 유해업소로 내모는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을 가능한 한 완화시키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다. 그러나 학교 주위의 정화구역 내에서 만이라도 유해업소를 제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하며 학교 주변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2.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원인

(1) 방출요인

유해업소로의 방출요인은 청소년을 건전한 환경 밖으로 내모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가정, 학교, 동료 집단과 같은 각종 제도영역에

서의 부적응을 의미한다. 가족구조상의 문제점(가계수입,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결손 여부, 주거상황), 가족관계(훈육방식, 가족관계, 여가활동)적 측면에서 가족유대 약화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정생활에서 소외의식을 심화시키고 가족이탈 심리를 자극하게 된다.

우리 사회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공부압력이 강한 사회에서는 학업 실패나 교사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심한 긴장과 불만족을 초래하게 된다. 학교에서의 생활은 더 이상 의미없고 건조할 뿐이며 외부에는 재미있는 것이 많아 자극과 유혹에 대해 흔들리기 쉽고 제도 영역을 벗어난 곳에서 도피적 쾌락을 찾는다. 학교 밖에서 어른들이 금기시하는 행동을 또래들과 해 봄으로써 소속감과 해방감을 느끼고 자신의 성숙함을 과시하고자 한다.

(2) 유인요인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이유는 출입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비용, 또는 윤리의식이나 자제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 가운데 학교나 집과의 지리적 근접성은 반복 접촉을 통해 출입동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 주변에 유해환경이 존재하는 지리적 근접성은 그 대상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즉, 부정적인 것이라도 늘 존재하게 되면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고 오히려 친숙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해 호감을 갖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 외에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 유입되는 이유에는 기존의 청년문화가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다양하고 재미있는 성인문화에 유입되고 기존의 성인문화 공간은 수입증대만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결여된 채 이들 청소년을 유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매개요인

유해환경으로의 배출과 유해환경의 유인요인의 작용을 강화시키는 매개 요인으로서는, 첫째 공적 통제체제의 약화를 들 수 있다. 사실상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데 거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이는 행정당국에도 책임이 있지만, 유해업소들이 주로 비공식부분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공식적 통제만으로는 생존적 저항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공동체적 생활양식의 해체, 빈번한 사회적 이동, 사회적 무관심 등으로 지역사회나 이웃에 의한 비공식적 통제가 작동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자유롭게 접촉하게 하는 한 요인이다.

둘째, 청소년들이 받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내안적 방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끊임없는 경쟁사회 속에서 긴장을 해소하고자 하지만 손쉽게 활용할 방법을 모르고, 공부 이외의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결국 대부분은 TV 시청을 한다. 그런데 대중매체는 실체 해부라는 명목 하에 감각주의적이며 자극적인 내용을 다룸으로써 유해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자아내게 된다.

3. 유해업소 출입은 왜 문제인가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유해업소는 폐쇄적 공간으로, 그 공간에서 현실적 책임을 망각하고 억눌린 욕구를 해소한다. 지리한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즉각적인 쾌락을 경험하게 되고, 일회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며 보다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것을 좇게 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또한 비행친구들과의 접촉기회에 의해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진다는 점에 우려되는 바가 크다.

유해업소를 자주 이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요구되고 그 곳을 이용하기 위한 의상 등 치장비용을 청소년이 감당할 수 없다. 아직까지 인적 자원으로로서의 가치가 없는 청소년은 자신의 노동력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마음껏 즐기기 위해 이들은 한탕주의 심리로 금품갈취 등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유해업소에서 즐기는 것을 벗어나 유해업소에 불법 취업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에 문제가 심각하다.

4. 청소년 유해업소출입 관련 법규

청소년들은 자신의 비행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행동은 자유라고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들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조항에 위배되며, 그 행동이 발각되었을 경우 어떤 처

벌을 받게 되거나, 또한 개인에게 주어질 장래의 여러 차원의 불이익을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인식시키는 것은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1)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유해업소의 정의

-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를 말한다(제2조5항).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명백하게 유해하다고 결정한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3조).
-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업소.
- 2. 전기통신시설을 갖추고 음란·폭력적인 내용의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소.

○ 청소년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금지

-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24조1항).
-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0조2항). 그리고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

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제54조).

○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금지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해당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제24조2항).
- 제24조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1조7항).

(2)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목적(제1조)

-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전과 청소년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풍속영업의 범위(풍속: 제2조, 시행령: 제2조)

- 식류위생법시행령 제7조8호 나목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당, 요정).
- 광중위생법시행령 제3조2호 나목 특수목욕장업 : 사우나탕, 증기탕업, 복합 목욕탕업(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을 말한다).
- 광중위생법시행령 제33호 가목 컴퓨터게임장업 : 전자유기기구 또는 체력용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유기장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3항 소극장업 : 객석이 300석이하이거나 객석의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공연장(예술적 관람물 전용공연장 제외)을 경영하는 영업.
-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및 비디오물 감

상실업.

- 만화대여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5항 노래연습장업 :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영업.

○ 풍속영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금지

- 18세미만의 자를 풍속영업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종종사자로 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조4항).
- 제3조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0조2항).
-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 혹은 종사자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풍속영업소의 폐쇄,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할 수 있다(제7조).

○ 청소년의 풍속영업소 출입금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제3조5항).
-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 혹은 종사자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풍속영업소의 폐쇄, 6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7조).

○ 풍속영업소별 출입금지 연령(시행령 : 제5조)

- 유흥접객업의 경우는 20세미만의 자
- 특수목욕장업중 증기탕업의 경우에는 20세미만의 자
- 전자유기장업중 성인용 전자유기자업의 경우에는 18세미만의 자
- 소극장업 중 18세미만의 자의 관람이 금지된 공연물을 공연하는 경우에는 18세미만의 자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의 경우에는 20세미만의 자
-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18세미만의 자. 다만, 18세이상의 보호자나 친족 또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미성년자보호법

○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유기장 등(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다(보호: 제2조1항3호).

·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장소

1) 미성년자가 관람할 수 없는 공연물을 공연하는 장소

· 미성년자가 관람할 수 있는 공연물(시행령: 제2조1항)외의 공연물과 관람할 수 있는 공연물이라도 그 내용이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거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심한 성적 감정의 자극, 잔인성의 조장, 범죄의 유발, 기타 미성년자의 건전한 보호육성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미성년자가 관람하여서는 아니된다(시행령: 제2조2항).

· 미성년자가 관람할 수 없는 공연물의 경우 공연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미성년자의 관람을 금지한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조).

2) 풍속영업소 중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

- 풍속영업소별 출입금지연령(풍속시행령: 제5조)
- 유흥접객업의 경우는 20세미만의 자
- 특수목욕장업중 증기탕업의 경우에는 20세미만의 자
- 전자유기장업중 성인용 전자유기자업의 경우에는 18세미만의 자
- 소극장업 중 18세미만의 자의 관람이 금지된 공연물을 공연하는 경우에는 18세미만의 자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의 경우에는 20세미만의 자

-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18세미만의 자. 다만, 18세이상의 보호자나 친족 또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행행위 영업장소

- 복표발행업, 현상업, 기타 사행행위업 :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 경찰서장이 미성년자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흥가 등에 설정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제2조1항5호).

-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의 설정(보호시행령: 제4조2항1목)

-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영업장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 율락행위가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 기타 경찰서장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출입제한 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출입제한 구역의 출입제한 시간(보호시행령:제4조2항 2목)
-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호 5시까지로 한다.

5.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을 줄이려면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감독하고, 친구관계에 대해 알아야 한다. 학교주변 정화구역 내에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지역사회 모니터링 활동등 시민운동 차원에서 유해환경 감시활동, 법률등 제도적 보완 작업을 마련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을 위한 유익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바를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들의 놀이 지역과 놀이 공간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요즘의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이 어디이며 어떤 시간대에 청소년이 가장 많이 모이고 언제 문제행동을 일으키며, 어떠한 경로를 밟는가 등을 관찰 파출소나 인근 주민의 도움 하에 사전 정보를 갖도록 한다. 이러한 정보를 갖고 뜻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속적으로 순찰하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이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을 다 막을 수 없지만, 제한된 시간이나마 통제 효과가 있고, 더 큰 소동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유해업소 근처에서 출입하려는 청소년을 발견하면 먼저 연령을 확인한다. 해당 유해업소 출입 연령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업소의 출입으로 인해 어떤 법적 제재나 학교에서의 처벌이 가능한가를 인지시키고 다음 간단한 지도를 한 다음 귀가시키도록 한다. 만약, 유해업소 출입 뿐 아니라 다른 약물남용이나 폭행을 범하는 경우 학교나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거나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우, 먼저 업소에 법 위반 사실을 알린다. 동일한 불법행위를 계속할 경우 어떠한 처벌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가를 인지시킨다(관련법규 참조).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금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상행위를 하는 경우, 경찰이나 유해업소 정화위원회나 청소년보호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6. 청소년 유해업소출입 관련 상담기관

청소년보호회

02-735-2648~9

청소년보호특수전화

지역번호-1388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체계

서울 YWCA

02-752-0280

부산 YWCA

051-441-2251

대구 YWCA

053-474-5557

수원 YWCA

0331-252-8165

춘천 YWCA

0361-54 6888

전주 YWCA

0652-226-6123

서울 YMCA

02-787-0061

광주 YMCA

062-234-0122

마산 YMCA

0551-52-9298

인천 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

032-577-0266

대전 한국청소년마을

042-623-3992

청주 보이스카웃

0431-54-6123

* 참고문헌

- 김문조. 1992. “유해시설 및 장소의 실태와 개선대책.” 체육청소년부 편. 청소년유해환경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
- 김준호·박정선. 1995.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 및 비행과의 관계. 형사정책연구원.
- 고성혜·이용교. 1996. 청소년의 행동유형. 한국청소년개발원.
- 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 1996.

4장. 청소년 유해매체 노출

본격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청소년들은 훨씬 신속하고 다양하게 정보를 접하게 되는 등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무제한적 정보의 무차별적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의 건진성장을 저해하게 되고 정서함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유해로운 영상, 통신, 인쇄매체는 무제한적으로 청소년의 생활을 파고 들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불량정보의 바다, 악의 정보의 바다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헤쳐나오게 할 것인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요즘 청소년의 유해매체 접촉 실태, 행위에 따르는 법적 조치와 유해매체 노출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 유해매체 노출실태

학교 주위, 일반 주택가등에 산재한 유해매체를 다루는 유해업소들은 청소년들을 유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청소년의 일상적 노출은 심각한 편이다. 현실적으로 성인만화, 음란잡지, 음란 비디오등 유해매체를 다루는 업소를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들을 규제하는 법이 있어도 행정력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관리나 감독이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청소년의 생활에 친숙한 컴퓨터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는 더더욱 어렵다. 소프트웨어의 종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사용되고 있는 게임의 유익성 내지 유해성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나 적절한 안내가 없기 때문에 유해한 게임에의 노출은 무방비 상태이다.

청소년들은 불법 유해매체를 구입하고 즐기는 것이 정당한 행위가 아니어서 유해매체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어렵고, 조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대전에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1997)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가장 유해하다고 지정한 매체는 음란비디오(33.9%), 음란PC통신(13.5%), 불법 CD-ROM(10.4%), 성인영화(10.0%) 순으로 나타났다. 음란비디오를 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32.5%, 성인영화를 본 적이 있는 경우는 77.1%, 음란 PC통신을 한 적이 있는 경우는 63.4%, 불법CD-ROM을 본 적이 있는 경우는 72.9%, 국외/국내 음란잡지를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79.9-77.4%로 나타나 적지 않은 청소년이 음란매체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만화는 책대여점, 만화방에서 구하고, 성인잡지나 음란잡지는 주로 책대여점, 노점상, 가판대등에서 구입해서 주로 집에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들을 본 후에는 좀 더 자극적인 것을 보고 싶었다거나 성충동이 일어났으며, 다시 보고 싶어졌다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청소년회관의 조사(1997) 결과에 의하면 강남구 조사대상 청소년 중 한 달에 1회이상 유해매체 접촉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의

29.4%로 나타났다. 유해매체의 유해성에 대한 태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대전의 중고생 93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1995)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44.7%가 음란비디오를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음란비디오를 본 후 별 느낌이 없다는 경우는 20.3%이며, 혐오감을 느끼는(10.5%) 경우보다 성적 충동을 느끼고(52.5%), 본 후에도 성적 충동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경우(14.3%)가 보다 많았다. 또한 자위행위를 하거나(40.2%), 강간하거나 강간당하는 상상을 하고(43.3%), 실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7.8%)으로 나타나 음란비디오 시청이 청소년의 성적 충동을 유발함을 알 수 있다. 음란비디오를 시청하는 곳으로 51%가 친구집, 41%가 자신의 집이라고 응답한 점으로 보아 이들의 행동을 가정 외부에서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사항은 이들 음란비디오를 대여해 준 곳에 대한 단속과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음란 디스켓의 경우, 노골적인 성행위가 묘사되는 컴퓨터 디스켓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20.5%이며 주로 친구 집이나 자신의 집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80.8%로 나타났다. 이러한 디스켓은 주변의 친구로부터 구입하거나(63.2%), PC동호인 모임을 통해 입수한다(6.3%)고 응답했다. 유해인쇄 매체를 일주일에 1시간이상 보는 청소년은 중학생의 62.9%, 고등학생의 66.4%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선호하는 만화는 순정만화, 일본번역만화, 포르노만화의 순이며, 특히 남학생의 경우 일본번역만화, 포르노만화, 순정만화의 순으로 선호했다. 포르노잡지는 성적 충동을 일으키고, 일본번역만화는 성적 충동과 폭력충동을 동시에 수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법포르

노 만화는 노점이나 암거래상을 통해 구입하며 성인오락잡지는 서점이나 만화가계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유해매체 노출의 원인

청소년이 유해매체를 접하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이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유해매체를 보기도 하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가장 용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부압력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래로부터 소외되거나 가정에 대한 구심력이 없는 경우, 심한 긴장과 불안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유해매체를 찾게 된다. 유해매체는 감각적이며, 즉각적으로 보상되고 때로는 공격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빠져 들기 쉽다. 미래에 대한 꿈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특별히 할 일은 없고 유해매체는 주변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 번 해 보다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일상적인 반복을 거듭하게 된다.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성년에게 금지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결과를 맛볼 수 있다는 점에 이에 더 매료될 수 있다. 게다가 법적 규제나 감시가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우리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청소년의 유해매체 노출을 더더욱 부추긴다.

3. 유해매체 노출 무엇이 문제인가

청소년이 접하게 되는 유해매체의 특성은 크게 폭력성과 음란성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유해매체를 접하게 될 때,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영상매체에 등장하는 모델의 성격과 행동을 모방하게 된다는 점이다.

폭력물의 경우, 폭력적 행사에 대해 돈이나 권력으로 보상받게 되면 그 폭력장면을 더욱 더 모방하기 쉽고, 폭력장면을 자주 접하게 되면 그것을 사회현상으로 인식하고 더 이상 뉴스거리로 보지 않게 되며 폭력에 대해 둔감해진다. 자신의 문제해결 방식에서도 자신이 용인하는 폭력의 범위가 넓어져 폭력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음란물의 경우, 성교육이 부재한 우리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의 가치관을 유포시킴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게다가 성적 충동을 유발시키고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컴퓨터 게임은 기존의 영상매체와 달리 게임자가 능동적으로 컴퓨터가 제공하는 화면에 개입하여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다른 매체보다 모방성향이 매우 높다. 특히, 많이 유통되는 컴퓨터 게임은 대체로 외국제품으로, 폭력적이거나 외설적인 것과 사행심과 투기를 불러 일으킬 만큼 도박성이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또한, 불법복제를 하는 것에 대해 무감해지고, 외래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심각하다.

음란매체를 다루는 업소는 철저한 상업주의 원칙 하에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어도 무시하고 감행함으로써 청소년을 유인하고 있다. 일례로, 현재 우리나라의 비디오 판매 및 대여가계의 수는 35,636개소로, 미국, 일본보다 많다. 이들 비디오 가게의 과다경쟁과 영세성은 청소년들이 성인을 동반하지 않고도 대여를 용이하게 한다.

폭발적으로 밀려드는 다양한 매체를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이 형성되지 못한 채, 청소년들이 유해매체에 중독되어 즉각적인 폐락에 탐닉하게 되고, 보다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4. 청소년 유해매체 노출 관련 법규

청소년의 유해매체 노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제재가 있다. 그 중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관련 법규 부록 참조).

○ 매체물의 범위 (제7조)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 및 비디오물
- ②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유기기구기관
- ③ 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 ④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 ⑤ 방송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중 교육·음악·오락·연예물
- ⑥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를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를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를 제외한다), 잡지(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를 제외한다)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이외의 간행물 중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⑦ 옥외광고불등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 게재· 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 ⑧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 포장 및 훼손금지(제16조)

청소년 유해표시 및 포장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 판매금지에 관한 조항(제17조)

-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 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검사 및 조사(제35조)

-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서류, 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 조사할 수 있다.

○ 유해매체물의 수거·파기(제36조)

-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유통되고 있거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 기타 당해 유통에 종사는 자에 대하여 그 매체물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을 받은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해매체물에 대한 신고(제44조)

- ①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처벌조항

- 과징금 (제7조)

-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50조 및 제51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의한 과징금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권한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지원
 - 민간의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벌 칙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제50조1항) 제36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제50조4항)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1조).
 1.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

해표시를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2항 및 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1항 및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6. 제20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 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2조)

•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3조).

○ 양벌규정 (제54조)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제5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5. 청소년의 유해매체 노출을 줄이려면

청소년의 유해매체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사항은 PC통신, 음반, 비디오, 전자오락, 영화, 공연, 만화, 화보, 사진, 도서, 광고 등을 망라해 검토하는 일이다.

기존의 법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전남 공무원의 힘으로는 이를 규제하고 감시할 수 없으므로, 공동체적 힘을 결집해서 시민감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신고창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음란물 소각의 날 등을 지역별로 행사를 하는 것도 일반 대중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시각적 효과가 클 수 있다.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유익한 매체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아울러 유해매체의 영향이나 관련 법규에 대한 홍보용 자료를 만들어 청소년과 관계자 대상으로 총체적이고 비판적인 미디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강요만 했지, 그들에게 무엇을 하거나 보라고 지침을 주지 못해 청소년의 신중 영상물에 대한 윤리적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일반인 중 컴퓨터에 관한 정보나 기술적 방법등 새로운 매체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청소년에 대한 지도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서, 컴퓨터는 청소년만의 전유물이 되기 쉽다.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PC 통신을 통한 유해매체는 다른 매체에 비해 관리·감독이 어렵다. 유해매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감시체제가 운영되어야 한다. 문제가 있는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는등 부모나 교사, 기성세대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청소년 유해매체에 젖어 있는 청소년을 접하게 될 때, 청소년지도자로서 행동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다루는 업소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를 확인하고, 행동 경로를 파악하여 그 지역을 지속적으로 순찰하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으로 청소년의 유해매체 노출을 다 막을 수 없지만, 제한된 시간이나마 통제 효과가 있고, 더 큰 소동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매체를 대여, 판매를 한 업소에 먼저 법 위반 사실을 알린다. 동일한 불법행위를 계속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가를 인지시킨다(관련법규 참조). 또한, 청소년 유해매체를 청소년에게 대여 또는 판매금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상행위를 하는 경우, 경찰, 유해업소 정화위원회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이러한 활동은 유력한 시민 단체와 연계하여 활동지역과 주된 활동영역을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모임을 결성하거나 일일 자원공무원 운동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 단체의 단속 공무원과 함께 관리 감독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유해환경 관련 업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미성년자 고용 억제, 유해환경 자율규제의 분위기를 형성해 가도록 앞장서야 한다.

6. 청소년 유해매체 접촉 관련 상담기관

청소년보호위원회	02-735-2648~9
청소년보호특수전화	지역번호-1388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서울 YWCA	02-752-0280
부산 YWCA	051-441-2251
대구 YWCA	053-474-5557
수원 YWCA	0331-252-8165
춘천 YWCA	0361-54-6888
전주 YWCA	0652-226-6123
서울 YMCA	02-787-0061
광주 YMCA	062-234-0122
마산 YMCA	0551-52-9298
인천 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	032-577-0266
대전 한국청소년마을	042-623-3992
청주 보이스카웃	0431-54-6123

* 참고문헌

- 강지원. 1996. “청소년 유해시설 환경의 정화.” 대전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 대전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청소년마을. 1997.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안내.
- 대전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청소년마을. 1997.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실태조사.
- 광주 YMCA. 1997.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의 역할.
- 서울 YWCA 강남청소년회관. 1997.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 세미나 자료집.
- 대전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1995. 청소년유해환경 모니터 교육교재.

5장. 약물남용¹⁾

본드나 가스를 흡입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있을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대체로 약성 약물에서 강성 약물로 전이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약물을 복용하면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육체적 쾌락을 느끼지만, 한번 사용하게 되면 습관성과 의존성이 강하여 이를 중단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약물사용을 막지 못하면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범죄에 연루되기 쉽기 때문에 더더욱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그 폐해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약물남용 청소년의 발견, 지도 및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약물남용의 실태, 원인, 약물의 위험성, 약물남용 청소년 치료 및 상담기관등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다.

1.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청소년 약물남용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
- 1) 약물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WHO의 정의대로 한번 사용하면 자꾸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의존성, 탐닉성), 사용할 때마다 양을 늘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며(내성), 사용을 중지하면 온 몸에 건디기 힘든 이상을 일으키며(금단현상)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서 마약, 대마초 및 향정신성 물질, 흡입제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가 쉽지 않고,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체는 공식통계의 수치보다 훨씬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공식통계에 나타난 약물남용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1-1995년간 전체 약물사범 중 15-19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3.2%이다. 19세 이하의 대마사범은 전체 대마사범 중 5.8-8.5%이며, 환각물질사범 중 19세이하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61.6-80.4%로 비교적 값싸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의 경우 청소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비공식통계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김경빈(199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은 법적 제재가 거의 없는 진통제나 법적 규제가 약간 있는 수면제, 신경안정제, 흡입제 순으로 사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입제의 경우 고등학생(남)이 3.3%, 근로 청소년(남)이 7.7%인 반면, 소년원생은 거의 반수에 가까운 48.2%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소년원 청소년들의 흡입제 사용율이 월등히 높았다. 학생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경험율이 증가하고, 전반적으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약물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연구소(1992)와 차경수(199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가 강하지 않은 약물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약물종류별 약물사용 이유를 살펴보면, 각성제는 잠을 쫓기 위해서, 진해거담제는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잊기 위해서나 어쩔 수 없어서, 신경안정제/수면제는 잠들려고, 흡입제와 대마초는 호기심으로 나타났다(현대사회연구소, 1992). 특히, 진해거담제의 경우 어쩔

수 없어서(17.4%)라는 응답이 적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약을 먹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약물중독의 심각성 또는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흡입제와 대마초는 호기심으로 해 보았다는 비율이 각각 24.3%와 47.8%인 점으로 나타나, 이러한 약물사용의 결과에 대해 분명하게 알려 청소년의 호기심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차종천·최영신의 연구(1993)에 의하면, 약물을 남용한 청소년의 54.3%가 복용 상태에서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약물을 취하든 간에 가장 연관이 많은 비행은 폭력이며, 약물남용 청소년 2명 중 1명은 약물구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 본 경험이 있으며, 소매치기를 한 경우가 31.2%, 심지어 응답자의 12.4%는 강도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약물은 정신과 신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비행을 조장하는 간접적인 부작용도 더 큰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조사(1997)에 의하면,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환각목적의 약물사용이 팬찮다고 응답한 중고등학생은 7.6%이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두번쯤 약물을 사용하고 싶다는 비율도 4.4%로 나타나 약물예방교육의 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약물남용의 원인

청소년의 약물남용 원인은 다양하며, 복잡적이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 호기심
- ▶ 또래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거절 못함
- ▶ 살을 뺄 수 있다거나 기분이 좋아진다는 속임수, 불안감을 잊을 수 있다는 약물남용자의 말에 유혹됨
- ▶ 한 번쯤은 중독되지 않고 괜찮겠지 하는 무지함
- ▶ 가정의 역기능과 학교생활의 많은 변화와 청소년들이 이루어야 할 과업과 책임, 경쟁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피
- ▶ 권태로움을 벗어나 일순간의 쾌락을 위함
- ▶ 신체적, 정신적 의존상태에 이르러 약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을 유지 못함

3. 약물에 대한 그릇된 지식

- ▶ 환각흡입물질은 안전하며 오락적인 물질이라는 생각
- ▶ 약물은 더욱 자신감을 북돋워 준다는 그릇된 생각
- ▶ 약물사용은 단지 나 자신에게만 해가 될 뿐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
- ▶ 한 번쯤 해 본 후 중단할 수 있다는 착각
- ▶ 나는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4. 약물남용은 왜 위험한가

약물을 남용하게 되면 신체적, 심리적으로 폐인이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인간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다량으로 복용하게 되면,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며, 약물에 대해 심리적, 정신적으로 의존된다. 일상활동은 약물 중심으로 되고, 식사 조차도 부수적인 것이 되며 사람보다도 약물을 더욱 필요로 하므로 또래나 가족관계가 파괴되고 대인관계의 폭이 줄어든다. 약물로 인해 자아통제력을 상실할 때에는 비이성적 행동이 증가되며 폭력, 절도등의 비행을 유발시킨다.

약물남용 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약물의 특성과 위험도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이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각성제(중추신경 흥분제)

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며 이에 속하는 약물로는 카페인, 암페타민(히로뽕) 등이 있다.

필로폰 또는 히로뽕으로 알려져 있는 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흥분제로서 피로완화, 기분고양등 각성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한다.

소량을 단기간 사용할 때 불안, 불면, 식욕감소, 두통이 오며, 단기간에 다량을 사용한 경우 땀이 많이 나고, 객관적으로는 말이 많아지고, 편집증상, 환각, 피해망상을 경험하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오랜 기간 음식물과 수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실조, 폐렴, 부정맥, 심장마비 및 뇌출혈등을 일으킬 수

있고, 과도한 자신감과 걱정과 긴장 상태를 경험하며 심리적, 신체적으로 의존된다.

(2) 환각흡입물질

신나, 본드나 부탄가스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로서,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대표적 약물이다.

본드나 가스는 휘발성 물질이기 때문에 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며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는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다.

흡입제를 남용하게 되면, 뇌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감퇴, 집중력 감소, 학습능력 저하, 정서적 불안, 판단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인체의 찌꺼기를 최종 걸러 소변을 만들어내는 콩팥 기능이 손상되며 이로 인해 필수 영양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콩팥에 만성 염증을 일으켜 B형 간염, 에이즈 등의 각종 면역계통 질병의 원인이 된다. 또한, 골수조직의 손상 때문에 피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 재생불량성 빈혈과 백혈병이 생길 수 있다.

히로뽕보다 강력하게 정신병을 일으키며, 아편보다 중독성이 높다. 그러나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며, 이것으로써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 점차 강도가 높은 다른 마약을 하기 쉽다. 흡입제 남용으로 인해 성격이 포악해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아지며, 여자의 경우 생리불순, 기형아 출산 확률이 높다.

(3) 진정제(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바르비탈류는 의학적으로 간질,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나, 오용함으로써, 심리적·신체적 의존을 일으키며, 과다복용시 호흡억제 효과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 중독이 되면 말과 동작이 느리고 둔해지며, 사고력·기억력·판단력 저하가 오며, 이해력이 느려지고 주위 집중력이 떨어진다. 급단 증상으로는 불안, 심한 쇠약감, 진땀, 불면등 가벼운 증상으로부터 간질, 발작, 섬망, 쇼크와 같은 심한 증상까지 다양하다.

벤조디아제핀은 알코올중독 및 각종 약물중독의 해독치료제로 널리 이용된다. 그러나 장기간 복용하면, 불안, 두통, 구토, 식은땀, 식욕부진, 소화기계의 통증, 우울, 불쾌, 근육경련, 간질, 혼수상태를 야기시킨다.

(4) 마 약

① 아 편

아편은 앵속(양귀비)의 설익은 열매 꼬투리에 흠집을 내어 흘러나오는 우유같은 수액을 3-4회 채취한 후 자연 상태에서 하룻밤 정도 건조시켜 생성된다.

아편은 통증을 완화하고 수면을 유도하며 정신적으로 느슨함을 갖게 하여 즐거움과 도취감을 일으키지만, 우울감, 불행감을 느끼게 되며, 식욕감퇴등 기본적 욕구를 억제시키고, 변비, 구토를 일으킨다.

② 몰 편

몰편은 수술 후나 말기암 환자의 심한 통증완화를 위해 사용되나

의학적 용도 이외로 남용하게 되면 중독성이 있어 위험하다. 텍스트로네트르판은 물핀 계열 중에서 유일하게 상업적 판매가 허용된 것으로 약국에서 러미라나 루비킹이라는 상품명으로 부제한적으로 판매된다. 환각 목적으로 1회 20정씩 복용하면, 2-3시간 후 약효가 나타나 6-12시간 지속된다. 내성이 생긴 경우, 1회에 100정 이상을 복용하여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시판에 따른 문제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사용 초기에는 평온감과 비현실적 자신감을 갖게 되지만, 점차 일에 대한 성취욕과 관심을 상실하게 된다. 과다복용시 동공이 확대되고 얼굴이 붉어지고, 피부가 따뜻하고 건조해지며, 입이 마르고 냄새가 나며 침을 삼키기 힘들어지고, 위장 기능이 약해지며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상승, 고열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다. 그 외에도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환각 등의 정신 증상이 나타난다. 물핀중독은 급단현상이 나타나 더욱 위험하다. 급단현상이란 복용 중단 후 수시간 후부터 시작해서 1-2일에 최고조에 달하는데, 하품, 콧물, 눈물과 열이 나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전신에 소름이 돋고 통증을 느끼며, 행동능력이 상실된다.

③ 헤로인

헤로인은 물핀을 화학적으로 변형하여 보다 강력하게 만든 것으로, 냄새가 없고, 쓴 맛이 난다. 복용 후 특징은 물핀과 유사하며 약효 지속시간은 짧아 중독자는 4-6시간 후면 재투약을 갈망하게 된다고 한다.

④ 코카인

코카인은 흥분 효과가 강력하고 즉각적이다. 소량 사용할 때에는

말이 많아지고 피로감도 덜 느끼며 운동능력도 향상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과량 사용할 때에는 뇌에 영향을 미치며, 맥박, 혈압, 호흡이 빨라지며 입맛이 없어지고 동공확장, 혈관수축, 고열을 일으킨다. 독성이 강하여 발작을 일으키거나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장기간 만성 사용시에는 정신혼란, 어지러움, 위험한 환각, 피해망상을 일으키며 자신에게 피해를 줄 것 같은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정신병을 일으킬 수 있다.

(5) 환각제

① LSD

무색, 무미, 무취의 백색분말로, 정제, 캡슐, 액체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통되며 주사로도 사용할 수 있다. 환각은 복용 30분 후에 나타나서 6-8시간 지속된다. 물체가 구부러져 보이거나, 감각이 서로 겹치고, 초월적인 신비한 상태에 빠진다. 그러나 몸이 산산조각이 나는 듯한 공포감, 자신이 미친 듯한 두려움과 무시무시한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신체적으로는 눈동자가 풀리고 창백해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수전증, 오한, 식은 땀, 식욕저하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② 대마초(마리화나)

대마에는 적어도 400여개의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주 성분이 THC이며 중추신경 및 심혈관계에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대마초를 사용하게 되면 식욕이 당기고, 입이 마르며, 감각이 예민해지고, 예전에는 무시되던 사물에 대한 시각 및 청각상의 자극이 아

주 새롭게 인식되며, 촉각, 미각, 후각 등 별로 강하지 않던 자극도 강하게 느껴지게 된다. 일상사에서 남들과의 공감에 잘 안되며, 타인의 감정이 어떤지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대화를 이어가기 힘들어 지며 시간에 대한 인식도 변화해서 몇분의 시간이 몇시간 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고농도의 대마초가 투여되면 환각, 망상, 편집증, 집중장애, 기억력 장애, 외모에 대한 무관심, 목표 추구 행위의 감소가 나타나기도 한다.

5. 청소년 약물남용 관련 규제법규

우리나라에서 각종 약물을 규제하는 법률로는 청소년보호법, 형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그리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의 법률이 있다.

(1) 청소년보호법

○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으로 다른 관련 법규에 우선하고, 청소년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규이기 때문에 가장 주요한 약물관련법규이다.

○ “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약품, 마약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 대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물과 물건을 말한다(제2조4항).

○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제26조1항).

- 벌칙 : 제26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외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배포·대여한 자(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한 자는 제외한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0조3항).
- 양벌규정 :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5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가한다(제54조).

(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다(제2조).

○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판매·대내·매매의 알선 또는 수주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치 아니한다(제3조1항).

- 벌칙 : 제3조1항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41조1항1목).
- 벌칙 : 제3조1항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

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40조 1항1목).

○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을 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수수·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그 식물을 흡연·섭취할 목적이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 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3조2항).

- 벌칙 :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41조 1항2목).

- 벌칙 : 제3조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섭취할 목적 또는 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3조1항2목).

○ 판매등의 제한 : 18세미만자, 정신병자, 마약 기타 약물의 중독자에 대해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제20조1항).

- 벌칙 : 제20조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의 벌금에 처한다(제42조1항4목).

○ 향정신성의약품소매업자는 주사제인 향정신성의약품 및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제20조3항).

- 벌칙 : 제20조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의 벌금에 처한다(제42조1항4목).

(3) 마약법

○ 마약 :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1항).

- ① 앵속·아편 및 코카인
- ② 앵속·아편 및 코카인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③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유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④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것. 다만, 타약품과 혼합되어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것의 재제제가 불가능하며 그 약품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약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마약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제6조1호).

· 제6조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62조1항2호).

○ 면허를 받은 마약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제제, 소분,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 또는 한외마약의 제제를 하지 못한다(제4조).

-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입·수출·제조·제제·소분·매매나 매매의 알선한 자는 수입·수출·제조·제제·소

분·매매나 매매의 알선을 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60조1항1호).

- 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60조2항).
-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61조1항1호).
- 상습으로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한다(제61조3항).

(4) 대마관리법

○ 대마 :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질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제2조1항).

○ 무허가취급의 금지: 대마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수수·운송·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제3조1항).

- 처벌 : 제3조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매매 또는 대마의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9조1항1호).
- 처벌 : 제3조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소지·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0조1항1호).

○ 행위의 금지 : 대마(종자의 껍질 포함)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4조4호).

- 처벌 : 제4조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0조3호).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환각물질 : 환각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환각물질을 말한다(시행령 제11조).

- ① 몰루엔 · 초산에틸 · 메틸알콜
- ② 제1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신나(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 접착제 및 도료
- ③ 부탄가스

○ 환각물질의 흡입등의 금지 : 누구든지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독물을 함유하는 물질 또는 이에 준하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제26조1항).

- 누구든지 제1항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점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제26조2항).

… 벌칙 : 제26조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5조6호).

6. 청소년의 약물남용 감소 및 예방을 위한 노력

약물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한 사람은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약물을 끊기가 매우 어렵다.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앞서 언급한 약물이 얼마나 인간을 황폐화시키는가, 법에 어떠한 저축을 받아가를 청소년에게 이해시키는 것이다. 또한 약물남용 청소년의 징후, 약물사용을 거절하는 방법과 대화하는 방

법, 약물청소년의 상담과 치료하는 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야 할 것이다.

(1) 징후를 바로 알자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예방하거나 발생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물남용자에게 나타나는 일반적 징후를 알아두는 것이 초기에 이들을 발견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 중요하다. 약물남용자에게 보이는 징후는 다음과 같다.

- ▷ 낮과 밤이 바뀐다거나 학교나 직장 출근, 작업의 질, 학업성적 등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이는 등 일상생활의 리듬을 잃는다.
- ▷ 비정상적으로 화를 내거나 감정이 폭발한다. 옷차림 등 외모가 보기 싫게 변하거나 개인 위생에 무관심하게 된다.
- ▷ 동공의 이상을 감추기 위해 적절하지 못한 장소나 시간에도 색안경을 쓴다.
- ▷ 주사자국을 감추기 위해 소매가 긴 옷을 계속 입고 다닌다.
- ▷ 부모나 친구, 직장동료로부터 평소와 달리 돈을 자주 빌린다.
- ▷ 항상 졸리운 듯한 태도나 멍청한 상태로 있어서 허공을 바라본다.
- ▷ 담배나 술의 사용이 증가된다.
- ▷ 주사기나 주사를 맞기 위한 솜, 고무줄등을 갖고 있다
- ▷ 약물을 녹이기 위해 그을린 숟가락, 병등을 갖고 있다
- ▷ 남자의 경우 주사부위에 문신을 하며 여자는 화장을 하여 상처자국을 가린다.

- ▷오랫동안 잠을 자지 않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다.
- ▷손톱이나 옷등에 접착제가 묻어 있다
- ▷커다란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주머니를 갖고 있다
- ▷휘발성 물질의 냄새가 난다
- ▷콧물과 눈물을 과도하게 흘린다.
- ▷발음이 분명치 않다
- ▷지주 잘 넘어진다

(2) 약물사용을 거절하는 법을 알려 주자

또래로부터 약물사용을 권유받을 경우, 또래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두려워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약물은 중독성이 높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를 물리쳐야 한다.

다음은 약물을 거절하는 방법을 기술한 것이다(면목사회복지관, 1995).

- ▷나는 약물을 사용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 ▷나는 즐길 수 있는 취미들이 많아.
- ▷나는 오늘 다른 일을 할 계획이 있어.
- ▷나는 약물보다는 사탕이 더 좋아.
- ▷약물은 나를 바보로 만들어 버려.
- ▷나는 지금 나의 뇌세포를 보호하고 있는 중이야.
- ▷싫어. 나는 지금 집에 가야 해.
- ▷차라리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겠어.
- ▷나는 지금 잠을 자고 싶어.
-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약물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

▷지금 전혀 할 생각없어.

▷싫어.

▷부모님이 아시면 슬퍼할거야. 너 이상 걱정끼쳐 드리고 싶지 않아.

▷이제는 철이 들었어. 난 정신차렸어.

▷더 이상 나를 팽개치고 싶지 않아.

▷이제부터는 성실하게 잘 살고 싶어

▷약물 때문에 내 몸이 너무 망가져 버렸어. 건강하게 살고 싶어.

▷나약하게 약물따위에 의존하고 싶지 않아.

(3) 약물청소년과의 대화방법

▷청소년이 약물을 사용했을 때는 가능한 맑은 정신으로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야기한다.

▷정직하게 이야기한다.

▷모호하게 또는 돌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의사를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화내지 말고 이야기한다.

▷단지, 그때 그 장소에서 보거나 들은 행동만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소리를 지르거나 어른(부모, 선생)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이야기는 피한다.

▷간단하고 짧은 단어를 사용한다(정말로? 누가 ? 어떻게?)

▷폭력은 사용하지 않는다.

▷심한 욕설을 사용하지 않는다.

- ▷ 청소년의 특정한 면을 인정하는 칭찬을 구체적이며 개방적으로 이야기한다.
- ▷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한다.

(4) 청소년 약물중독 선별검사표

어떤 청소년이 약물남용 청소년인가. 단순 약물사용자와 중독자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약물남용자를 감별하기 위한 비교적 손쉽고 객관적 기준으로 김정빈(1993)이 개발한 한국형 청소년 약물중독 선별검사표(KOADAST)와 약물남용 위험성 기준표를 제시한다.

- 1) 가족들과 언쟁이 많아졌다.
- 2) 약물을 일단 사용하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
- 3) 약물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면 거의 참을 수가 없다.
- 4) 혼자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 5) 약물사용 습관을 남에게 숨긴다.
- 6) 약물을 몰래 감춘다.
- 7) 때로 조절이 안된다.
- 8) 정신적 고통을 잊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다.
- 9) 약물사용량을 줄이거나 조절해보려고 노력했었거나 하고 있다.
- 10) 예전보다 약물의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다.
- 11) 대인관계나 사회 생활에 약물이 해로웠다고 느낀다.
- 12) 가족들이 강력하게 약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

위의 12문항이 자신에게 해당되면 2점, 애매할 경우는 1점, 해당이 되지 않을 때는 0점을 주며 최고 24점까지 나올 수 있다. 8점 이상은 약물남용자, 7점 이하는 단순 약물사용자로 분류된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 의사를 직접 만나 면접을 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진단표는 약물남용자를 선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 약물남용 청소년을 처리하는 방법(문화체육부, 1992)

약물사용의 초기 단계

친구의 권유와 호기심으로 가끔씩(몇개월에 1-2번 이하, 1년이하) 사용해 보았으며, 아직 약물의 재미를 느끼지 못한 단계로, 본인 스스로도 미안해하고 아직 어른의 타이름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때를 초기 단계라 한다. 이 때는 부모, 형제자매, 친척, 친구, 선생님등이 앞서 정리된 약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참고로 열심히 설득하면 약물사용 행위 자체를 중단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

약물사용의 중간단계

▶ 비행이나 폭력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

약물사용, 학업성적 저하,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약물 사용하기, 유해업소 출입, 한 두번의 가출 등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지만, 아직은 부모이나 주변 어른들과 대화도 가능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칠 수도 있는 단계이다. 이 때는 학교의 상담선생님, 청소년

년 상담가의 적극 개입과 청소년 및 부모의 협조로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누군가가 열심히 청소년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전문가이며, 상담의 성공도 높아지게 된다.

▶ 폭력 등 비행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

청소년의 성격이 과격하고, 폭력 등 비행 흔적이 여기저기 보이고, 어른들의 타이름에 대해 공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물남용 정도가 어느 단계에 있던지 간에 일반 상담가나 의사가 맡아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 경우에는 이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교정 및 사법당국으로 보내야 한다.

약물의 남용단계

약물사용의 정도가 심해져 주변에서 계속 타이르지만 중단하지 못하고, 약물을 혼자 사용하며, 학교나 가정에서의 생활 변화가 심하고 청소년 당사자가 사용을 중단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계속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는 이미 중독의 단계인 약물남용 이상의 수준이다. 이 경우에는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담 및 치료 기관으로 빨리 의뢰하여야 한다.

7. 약물남용상담교육 및 치료기관

국립서울 정신병원	02-457-0095
국립나주 정신병원	0616-31-0541, 1343
시립학교건강관리소	02-399-9564
면복사회복지관 상담실	02-439-2038-9
동부시립아동상담소	02-248-4567
나눔의 집 청소년상담소	02-534-8366
동대문 YMCA 약물 오·남용예방 상담실	02-248-566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상담소	
· 서울	080-022-5115
· 부산	080-522-5115
· 인천	080-031-5115
믿알선교복지회	02-527-3210-2
주왕기교수 약물남용 자동응답서비스	02-700-6686
생명의 전화	02-763-9191
청소년보호위원회	02-35-2648-9
청소년보호특수전화	(지역번호)-1388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국지부 ◀

구 분	주 소	전 화 번 호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89-3	(02) 586-7803~5
서울특별시 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89-3	(02) 581-1001~4
부산직할시 지부	부산 동구 초량3동 1189-3	(051) 463-8300
대구직할시 지부	대구 수성구 황금동 757-3	(053) 764-1202
인천직할시 지부	인천 남구 주안3동 832-4	(032) 872-4553~4
광주직할시 지부	광주 서구 농성동 624-3	(062) 369-1621
대전직할시 지부	대전 동구 용전동 21-3	(042) 628-2046
경기도 지부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80-8	(0331) 256-0663
강원도 지부	춘천시 근화동 262-1	(0361) 54-5827
충청북도 지부	청주시 근화동 262-1	(0431) 56-5186
충청남도 지부	천안시 대흥동 71 (정석B/D)	(0417) 551-6661
전라북도 지부	전주시 덕진동2가 167-366	(0652) 75-5556
전라남도 지부	광주시 서구 농성동 624-3	(062) 363-3805
경상북도 지부	대구시 동구 신천4동 291-5	(053) 742-5160
경상남도 지부	마산시 산호동 54-7	(0551) 41-8201
제주도 지부	제주시 도남동 914-2 서유빌딩	(064) 57-3428

▶ 마약중독자 치료기관 ◀

구 분	주 소	전 화 번 호
국립서울정신병원	서울 성동구 증곡3동 30-1	(02) 457-0905
국립부곡정신병원	경남 창원군 부곡면 부곡리 70	(0559) 36-6400
국립나주정신병원	전남 나주군 산포면 501	(0631) 31-1343
서울시립정신병원	서울 은평구 응암2동 산6	(02) 303-9111 ~ 3
부산의료원	부산 동래구 연산4동 605-37	(051) 866-9031 ~ 6
부산대남병원	부산시 북구 학장동 164	(051) 324-2227 ~ 8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중리동 1162	(053) 556-7575
제주의료원	제주시 심도 1동 154	(064) 56-1190
인천병원	인천시 중구 신흥동 2가 18	(032) 763-5801 ~ 7
삼영신경정신병원	인천시 서구 심곡동 산 27-2	(032) 524-8833 ~ 4
전남대학교병원	광주시 동구 학1동 8	(062) 220-5114
천주교 성요한의원	광주시 북구 임동 67	(062) 529-0041 ~ 3
대전신생정신병원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682	(042) 823-4401 ~ 3
의정부의료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3	(0351) 873-0001 ~ 4
용인정신병원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상하리 5	(0331) 281-8251 ~ 6

구 분	주 소	전 화 번 호
춘천의료원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17-1	(0361) 54-6843~7
청주의료원	충북 청주시 사직1동 554-6	(0431) 274-2191~3
홍성의료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알미 572-3	(0451) 32-5121~4
군산의료원	전북 군산시 금동 14-1	(0654) 445-7131~3
목포의료원	전남 목포시 용해동 133-1	(0631) 72-2101~2
포항의료원	경북 포항시 용흥동 315	(0562) 47-0551~8
진주의료원	경남 진주시 중안동 4	(0591) 745-8001~7
마산성모병원	경남 마산시 합포구 중앙동 3가 4-247	(0551) 43-3311~7

* 참고문헌

- 면목사회복지관. 1995. 청소년약물남용 상담 매뉴얼.
- 문화체육부. 1992.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대책-양호교사의 약물효과 연구.
- 문화체육부. 1994. 청소년 약물남용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 주왕기. 1995. 본드, 마리화나, 필로폰. 박영출판사.
- 주왕기. 조용제. 1997. 청소년 약물남용 전국 실태조사. 청소년학연구. 제4권 제1호, 169-181.
- 차종천. 최영신. 1993. 약물남용과 범죄와의 관계. 형사정책 연구원.
- 한국청소년학회. 1993. 청소년약물남용의 실태와 예방대책.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3. 마약류 무엇이 문제인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6. 약물남용이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7. 청소년약물남용 실태조사 결과. 마약없는 밝은사회 통권 제 9호.
- 현대사회연구소. 1992. 청소년약물남용의 실태.

6장. 청소년가출

청소년가출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한 사회문제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가출은 한 두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출을 청소년기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가출을 조장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가 크다.

처음 가출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한 번 가출을 하면 그 이후에는 습관적으로 가출하게 되고, 이것이 오래 되면 학업을 중단하거나 중퇴하게 되고, 가출 후 불량 청소년과 어울려 가스나 본드 흡입을 하거나 다른 비행행위를 학습하게 되며, 밤거리를 배회하면서 유흥업소에 출입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등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비행청소년 10명 중 7명은 가출이 많은 비행의 근원이 된다고 보고한 결과(고성혜·한유진, 1995)는 가출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한다. 청소년 가출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청소년 비행의 확산을 막기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지도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청소년 가출의 실태, 원인, 문제점, 대책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가출 실태

청소년기는 주체하기 힘든 자기 자신의 내부적 욕구와 강압적인 외부로부터의 요구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내적, 외적 욕구와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간의 불균형은 청소년들의 부적응을 부추긴다. 바로 이러한 불균형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행동 중 최근에는 가출을 하는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출은 동기에 따라서 도피형, 목적지향적, 맹목적 가출로 나눌 수도 있고 가출의 빈도에 따라 일과성 가출과 상습적 가출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일정 기간의 준비 끝에 행동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충동적 가출과 계획적 가출로, 가출의 단위에 따라 개인 가출, 집단 가출, 연쇄 가출로도 분류될 수 있다. 최근의 청소년가출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다거나 희망하는 공부나 취직, 직업훈련을 받기 위한 욕구로 가출하는 자립, 목적지향적 가출 보다는 도피적, 무목적적, 가정탈출형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즉,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대한 강한 갈등과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가출을 선택하거나 가출을 외박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여 청소년 특유의 모험심과 방랑적 기분, 새로운 체험에 대한 동경심리로 가출을 하거나 친구와 동반 또는 연쇄적으로 가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이용교, 1992: 서울 YMCA, 1995).

매년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가출의 실태는 어떠한가.

청소년가출에 대한 수량적 파악과 가출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대한 자료는 매우 적다. 그 이유는 가출청소년 수용 시설도 손꼽을 정도

로 적고, 가출 후 불법이긴 해도 이들이 취업할 만한 산업이 발달하여 가출자들이 신속하게 흡수되고,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서 가출청소년을 수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가출이 매해 1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미신고자가 많아서 실제로는 10만-12만명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이 청소년 전문가의 추정이다.

가출청소년이 경찰 단속에 의해 적발되어 아동 일시보호시설이나 육아시설에 위탁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6-1에 의하면, 1995년 20세미만의 가출인은 16,013명으로 가출자 40,117명 중 39.9%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에 비해 가출인 총수도 늘고, 전체 가출인 중 20세미만 가출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94년의 37.7%보다 늘었으며, 93년의 29.7%에 비해서는 무려 10% 정도 증가했다.

<표 6-1> 가출인 발생 및 처리상

(단위 : 명)

구 분	발 생	연 령		처 리			
		20세 미만	20세 이상	보호자 인제	수 용	수 배	기 타
1995	40,117	16,013	24,104	19,141	928	20,048	125
1994	35,865	13,522	22,343	21,848	590	12,433	994
1993	40,203	11,933	28,270	18,710	606	19,740	1,147
1992	39,431	12,479	26,952	12,729	751	25,025	926
1991	37,569	11,414	26,155	10,712	848	25,247	762

* 출처 : 청소년백서 1996.

일반중고생, 중퇴생, 소년원생의 세 집단의 가출경험 여부를 비교한 김준호·박정선(1993)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학생 7.1%, 중퇴생 60.1%, 문제소년 96.2%가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경험이 많은 집단일수록 가출경험 비율이 점차 높아진다는 결과에서 가출이 청소년비행 과정에 중요 요인임을 시사받는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학생의 가출경험율이 낮게 나타났지만, 청소년기의 가출에 대해 허용적이고, 가출충동을 느낀 청소년이 10명에 7-8명꼴이라는 조사결과(YMCA, 1991)를 고려한다면, 결코 방치할 수 없는 바이다.

<표 6-2> 청소년의 각 집단별 가출비율

(단위 : 명, %)

가출 \ 집단	일반학생	중퇴생	문제소년	합계
있다	58 (7.1)	167 (60.1)	378 (96.2)	603 (40.4)
없다	762 (92.9)	111(39.9)	15 (3.8)	888 (59.6)
총계	820 (55.0)	278 (18.6)	393 (26.4)	1,491 (100.0)

* 출처: 김준호·박정선(1993)

가출시 연령을 살펴보면, 첫 가출시 평균연령은 12.8세, 두번째 가출 13.4세, 세번째 가출 14.3세를 기록하여 가출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가출의 평균연령도 높았다. 또한, 세번째 가출까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저학년 대에 많이 일어나 짧은 시간내에 가출이 반복됨을 알 수 있다. 남자는 8-13세에 걸쳐 최초의 가출을 하는

반면, 여자는 중학교 시절에 주로 최초 가출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첫 번째 가출에서 세 번째 가출까지의 시기

(단위 : 명, %)

	첫 번째 가출			두 번째 가출			세 번째 가출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취학 이전	10 (4.8)		10 (3.7)	2 (1.1)		2 (0.9)	2 (1.3)		2 (1.0)
초등학교	116 (55.8)	27 (45.0)	143 (53.4)	81 (44.5)	17 (34.7)	98 (42.4)	53 (34.4)	10 (23.3)	63 (32.0)
중학교	76 (36.5)	28 (46.7)	104 (38.8)	82 (45.1)	29 (59.2)	111 (48.1)	3 (47.4)	29 (67.4)	102 (51.8)
고교	6 (2.9)	5 (8.3)	11 (4.1)	17 (9.3)	3 (6.1)	20 (8.7)	25 (16.2)	4 (9.3)	29 (14.7)
20세 이후							1 (0.6)		1 (0.5)
총 계	208 (77.6)	60 (22.4)	268 (100)	182 (78.8)	49 (21.2)	231 (100)	154 (78.2)	43 (21.8)	197 (100)

* 출처: 김준호 · 박정선(1993)

2. 가출청소년의 생활상

가출청소년의 생활상은 우리가 그들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가능하게 하며, 행동경로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의 생활상은 다음과 같다(엄명용, 1995).

가출청소년은 가출한 이유를 둘러대기 위해 부모에게 거짓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또래와 동반 가출을 하거나 가까운 친구의 가출로 인해 또래 집단의 연쇄적인 가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가출 후에는 비슷한 처지의 또래들과 어울려 가스, 본드를 흡입하는 등 비행행위와 불건전한 특유의 언어를 습득한다. 오락실이나 만화가게를 자주 가다가 더 발전하여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하는 유흥업소에 드나들고, 남녀 청소년이 혼숙하기도 한다. 아무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재미있는 생활만이 중요할 뿐, 미래에 대한 계획은 거의 갖지 않고 생활한다. 현재의 순간적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돈은 점점 더 필요하므로 돈을 모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생각하지만, 특별한 기술도 없고, 자격도 없고, 연령 제한이 있는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 남자들은 막노동, 주유소 주유원, 식당이나 술집 웨이터, 뼈끼(호객행위를 하는 사람) 등으로 일하고, 여자들은 술집이나 유흥 향락업소의 종업원으로 취업해 윤락행위를 하며, 취업을 하지 않은 일부 가출자들은 갈취, 차비 동량, 절도 등으로 가출정비를 조달한다고 한다. 유흥업소나 주유소 등에서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시킬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가출청소년을 고용하게 되고, 가출청소년 역시 숙식을 해결할 수 있고, 지낼 만한 돈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가출청소년의 숙박형태는 업소에 취직해서 지내기도 하지만, 여관이나 여인숙에서 남녀혼숙으로 지내거나 동거를 하기도 하며, 새벽까지 공원이나 밤거리를 방황하거나 락카페, 노래방, 비디오방에서 놀다가 노숙을 하거나 연립주택이나 목욕탕의 복도, 화장실, 지하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기성세대의 추한 모

습 속에 끼어서 퇴폐 향락산업의 이용자인 동시에 공급자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설령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쫓아지는 부모의 비난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또는 가족으로 벗어났다는 홀가분함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떠돌이 생활을 한다. 가출했다가 부모나 경찰에 의해 강제로 귀가한 청소년은 집이 갑갑하여 재가출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처음 가출을 결정하고 시도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 번 가출하기는 훨씬 쉬워지고, 죄책감 없이 거리낌 없이 가출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생활은 청소년비행의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퇴폐 향락산업에 젖은 황금 만능주의 및 도덕 불감증의 팽배를 가져온다는 점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김준호·박정선(1993), 고성혜(1996)와 서울YMCA(1996)의 연구 결과 역시 앞서 언급한 가출청소년의 생활상과 거의 일치한다.

▶ 생활비 마련 ◀

가출한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는 과반수 정도이며, 대체로 유흥업소에서 일해 돈을 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가출하기 전에 갖고 있던 돈을 쓰기도 하고, 친구에게 꾸거나 금품갈취, 있는 물건을 내다 팔아 돈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간보내기 ◀

이들이 가출하여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곳은 소주방이나 호프집, 단란주점, 선배나 친구 집이 가장 많고, 당구장, 노래방, 길거리

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 역시 많았다. 이 외에도 여관, 비디오방, 오락실, 만화가게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주방이나 호프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가출청소년의 놀이문화가 향락 및 유해환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가출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 소주방이나 호프집이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 숙 소 ◀

가출시 숙소는 여관, 선배나 친구 집이 가장 많고, 거리나 공원에서 노숙하거나 비디오방에서 잔다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가출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관, 여인숙과 같은 곳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증가한다.

▶ 귀가하기 어려운 점 ◀

집에 돌아가려 해도 부모가 가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꾸중하거나 문제아 취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반응이 1/3 정도 되며, 집의 복잡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경우도 1/4정도에 이른다. 결국 가족불화, 경제적 이유, 폭력등 문제를 안고 있는 집에 대한 부담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해 도피형, 탈출형 가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청소년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위 부여의 기능을 갖는 가족에 대한 불만과 상향 이동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은 청소년의 가족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부모나 동생 보기가 미안해서라는 이유를 든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청소년은 어느 정도 순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 한편, 친구 때문이라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또래집단에 대한 의리 또는 압력이 집에 다시 돌아가는 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청소년가출의 원인

개인의 기대목표와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 및 수단간의 괴리가 클 때 가출유발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엄명용, 1995), 가정에 대한 불만, 학교생활 부적응, 또래관계 문제, 유해환경 문제등과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가출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교우관계가 불량하여 무단결석을 하고, 학습장애를 경험하게 되어 성적이 떨어지며, 학교공부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고 이에 부모의 적대적 비난을 받을 때, 또는 방학 동안 가출을 하여 친구들과 재미있게 논 경험을 가진 경우, 공부 잘 하던 학생이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 후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아 자존심이 상했을 때 또는 새학기가 되었으나 친구도 새로 사귀지 못하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한 경우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순충동 가출은 시험지옥과 부모의 간섭으로부터의 도피가 주된 원인이고, 불량 친구의 선동으로 가출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다.

가출의 원인은 가출에 대한 접근 방법에도 따라서도 정리할 수 있다. 정신병리학적 시각에서는 개인 특성에서 가출의 원인을 찾는데, 충동성이 강하고, 신경증적 증세를 보이며, 심한 자기애적 인격장애가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이용교, 1992). 한편 상황적 문제의 결

과로 가출을 설명하려는 상황적 접근에서는 개인의 특성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으나 학교나 또래 집단, 가족, 사회환경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가출이 발생된다고 본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하면 청소년가출은 청소년과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의 산물로 보는 생태학적 접근이 보다 설명력이 높다. 청소년가출은 청소년 개인의 충동통제력 부족, 학습장애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며, 가족간 응집성이 낮아 가족간의 유대감이 약해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가족으로의 구심력을 약화시키게 되며,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애착의 끈이 형성되어 있지 못해 가출을 하게 된다고 본다. 이 외에도 가족의 규칙이 너무 경직되어 융통성이 없을 경우, 가족내 규칙이라는 것이 없어 가족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거나 일관성 없게 규칙이 적용될 때, 청소년 자녀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부부간의 갈등, 형제간의 불화, 부모의 자녀체벌, 부모의 무관심과 과잉간섭 역시 청소년가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가족의 빈곤 역시 가출을 유발하는 주 요인이다. 그러나 빈곤 자체보다 빈곤 생활에서 면할 수 없는 양친의 무기력, 음주벽, 생활상의 무질서 등 빈곤에 의하여 이차적으로 파생되는 방임과 갈등에 의하여 청소년의 가출을 유도한다고 본다. 물질적 빈곤 뿐 아니라 교육과 의료의 기회 및 지위의 상향 이동의 기회상실 등 각종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의 빈곤을 동시에 의미하며 개인의 성취동기, 열망수준과 자아실현 등 심리적 차원에 있어서의 박탈과 문화적 가치로부터의 소외 역시 청소년가출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표갑수, 1993).

청소년가출의 또 다른 요인은 학교환경이다. 친한 친구가 없이 외톨이인 경우, 학업성적에서 오는 상대적 열등감이나 교사들로부터의 낙인, 입시와 성적에 대한 중압감, 불량교우와의 관계, 불량씨를 가입등이 청소년가출과 관련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청소년들의 학교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지 못하고 불량친구 집단으로부터 인정받고 용기를 과시하기 위해 가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은 청소년을 가정과 학교로부터 밀어내는, 벗어나게 하는 요인인데 반해, 가출청소년의 가출을 장기화시키는 유인 요인으로 사회환경을 들 수 있다. 유해환경의 노출기회의 증가와 매스미디어의 무분별한 정보가 사회환경 요인에 속한다. 걸려지지 않은 유해매체의 기사나 방송등은 청소년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모방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유해환경의 접촉 기회가 증가되면 처음에는 낯선 것에 대해 경계심을 갖지만, 점차 불안이 감소되고, 친숙해지면서 유해환경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김문조, 1992). 주책가나 학교 주변에까지 자리잡고 있는 단란주점, 락카페, 성인오락실등 유해업소 업주는 가출청소년들이 먹고 잠잘 수 있는 곳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부합되어 이들을 고용함으로써 가출을 더 장기화시킨다.

4. 가출의 징후

가출청소년은 가족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가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가족이 자신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가출하는 것이다. 그만큼 가출청소년은 가족의 인정과 사랑, 도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은 가출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몇 가지 징후를 보인다.

권이중(1994)은 청소년의 가출 징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침착성이 없는 것이 현저하다.
- 집중력 감퇴로 하던 일을 도중에 중단한다.
-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흥미를 잃는다.
- 가정, 학교 근처에서 문제행동을 한다.
- 감정이 자주 변한다.
- 실의에 빠지기 쉽다.
- 화를 자주 내며, 가혹한 행동을 한다.
- 학습과 놀이습관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 각종 가족 행사에 참여에 흥미가 없다.
- 일반적으로 방에 틀어 박혀서 나오지 않거나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간다.
- 친구관계가 변하면서, 특히 연상의 사람과 많이 사귄다.

청소년들이 가출충동을 느끼게 되는 가족적 특성과 학교내 여건을 제시한 연구결과(YMCA, 1991)를 통해서도 청소년의 가출이 우려되는 상황을 예견해 볼 수 있다.

▶ 부모의 태도 중 가출을 부추기는 상황 ◀

- 이유는 듣지 않고 무작정 야단부터 칠 때(30.5%)
- 집에서 나의 존재를 전혀 알아주지 않을 때(17.2%)
-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할 때(14.0%)
- 지나치게 과잉보호와 간섭을 할 때(7.2%)

▶ 학교생활 중 가출충동을 느끼게 되는 상황 ◀

-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21.4%)
- 시험성적 결과가 나쁠 때(20.3%)
- 방학 중에(12.0%)
-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때(11.9%)
-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10.5%)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학업부적응에 대한 내용이라 해도 성적과 시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방학 중에 가출충동을 느낀다는 것은 청소년의 놀이문화 부재, 무료함 등으로 인해 무언가 탈출구를 마련하고자 가출 충동을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5. 청소년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

공식통계로 파악되지 않는 청소년가출자가 많고,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자는 더욱 청소년가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사항은 가출자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가출경험자를 문제집단화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가출한 청소년을 찾으려면

어떤 청소년이 가출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나 친지들은 망막하기만 하다. 평소에 청소년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고민이 무엇인지, 친한 친구가 누구이며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가출한 이유도 어렵짐작하여 이해하고 자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대충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청소년과의 대화 부족으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배신감과 당혹감 등 부모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학교에 연락되어 퇴학당할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도 못한 채 아이를 찾아 거리를 무작정 헤매면서 시간을 보내기만 한다. 가출청소년을 찾기 위해 부모나 친지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이상순, 1993).

가출한 자녀는 가출 원인 또는 부모나 친구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적어 놓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모는 이를 찾아보도록 한다. 친한 친구의 전화번호나 소재를 확인한 후 그들을 차례로 만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 특히 중학교 동창이나 국민학교 친구 중 불량하고 가출한 친구나 선배가 있는지 확인한다. 친구들과 어울려 평소에 잘 가던 학교나 학원 주변 만화가게, 카페, 레스토랑, 빵집, 당구장 그리고 오락실에 찾아가 보도록 한다. 혹은 가출청소년이 일시로 머무는 쉼터나 나눔의 집에 연락을 해서 그 곳에 있는지 확인해 본다. 모든 가출인 신고를 받는 182 신고센터에 전화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다해도 현실적으로 가출한 자녀를 찾기는 어

려울 것이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국가기관의 처리과정을 알면 가출한 청소년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출청소년을 발견하고 처리하는 일은 경찰관과 아동복지지도원이 한다. 경찰과 아동복지지도원의 처리과정을 시·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가출청소년을 발견한 경찰관은 신원을 조사한 후 처음 가출한 경우는 바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귀가조치를 시키고 보호자에게 연락이 안되면 경찰서 소년계로 넘기거나 구청 가정복지과의 협조에 따라 그 지역관할 아동상담소나 부랑아 일시 보호시설로 보낸다

아동상담소에서는 발견되거나 이송된 가출청소년들을 아동복지지도원이 상담, 분류, 관정을 하여 귀가조치 또는 시설(육아시설, 교호시설, 직업보도시설, 입양기관 등)에 의뢰한다.

(2) 가출한 청소년을 찾는 경우

가출청소년이 집으로 돌아오거나 찾은 경우, 부모들의 반응은 각각 다르지만, 자녀를 찾은 기쁨과 안도감에 지킬 수 없는 말을 먼저 꺼내며 약속하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후에는 그동안 마음을 풀이며 지냈던 것, 자녀에 대한 배반감 등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비난을 퍼붓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가출청소년을 다시 만나게 된 것에 대해 안도감을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가출하게 된 동기와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처음 가출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어렵지 일단 한번 집을 나가게 되면 그 후

로는 쉽게 가출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가출 재발 가능성이 높다.

이유없이 가출하는 사람은 없다. 호기심이나 친구들이 부추겨서 가출했다 해도 결국 가출을 해 봄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현실상담에서는 인간에게 공통적인 5가지 욕구가 있다고 본다. 힘을 얻어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욕구, 사랑·인정·소속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 자유로움에 대한 욕구, 재미에 대한 욕구와 생존을 위한 욕구가 그것이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바람은 다양한 행위로 나타난다. 이를 청소년의 가출행위에 적용시켜 보면, 부모를 놀려주고, 당혹스럽게 하여 부모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 친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힘든 가정, 학교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은 욕구, 무엇인가 재미있는 것을 맛보고 싶기 때문에 가출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운동이나 예술 방면의 작업에 몰두함으로써 욕구를 충족시키는 청소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출청소년은 정상이 아니며, 문제청소년으로 낙인찍히고 만다. 그러나 이런 시각으로는 가출청소년의 재가출을 예방할 수 없다. 과연 가출청소년이 무엇을 원하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 행동을 해서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얻었는가 등을 알아봄으로써 다음의 가출을 예방할 수 있다.

가출청소년과 대화할 때 무엇보다도 청소년기 발달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즉, 부모나 교사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욕구와 의존적 욕구를 동시에 갖는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대화할 때, 모습을 관심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가출청소년의 공통적 태도는 부모와 약속을 하고 전연 다른 행동을 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징후로는 얼굴이 굳어지거나 흥분해서 얼굴이 붉어지며, 갑작스럽게 거친 언동과 반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가출청소년과 대화할 때,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한다. 가출청소년이 자신이 왜 가출을 했었으며, 어디에 가 있었으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자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때로는 반항을, 침묵을, 때로는 억지라고 할 정도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비꼬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하며, 도덕 교과서적인 충고도 효과적이지 못하며, 이야기하도록 강요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이러한 태도는 가출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달아버리게 할 뿐이다. 설령 부도덕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말을 하게 된 이유를 살펴면서 청소년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말을 해준다면, 청소년 당사자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고,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경계심과 긴장감을 풀 수 있게 된다.

(3) 가출 원인에 따른 유의사항

앞서 살펴본 바, 청소년가출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도 그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단순충동 가출의 경우 일시보호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쉼터와 같은 기관이 가출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되어 유흥업소 등 유해환경과 접촉을 막고 일시보호와 상담을 통해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상습 가출의 경우 문제 원인과 가출청소년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문제유형에 따라 장기 보호기관, 가족치료 전문상담 기관, 심리치료 센터, 직업훈련원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 부모의 학대 및 방임 때문에 가출한 청소년을 위해서는 적절한 법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한다.

가정경제 상태가 열악하고, 가족문제가 심각하여 가족간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이로 인해 가출을 한 경우에는 기본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소득증대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거나 가족상담기관으로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학업부진으로 인한 부적응, 시험불안, 자포자기적 태도, 교사로부터의 낙인, 친구 없는 외톨이 신세, 불량서클 가입 등 역시 청소년 가출을 유발하므로 각급 학교와 청소년지도자와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친한 친구가 누구이며, 주변에 비행 친구나 선배가 있는지, 잘 가는 곳은 어디이며, 학교생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무엇을 원하고,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학교와 연계 속에 작은 일이라도 청소년이 가장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해야 한다.

유해환경의 노출 역시 청소년가출을 유발하므로, 청소년가출을 막기 위한 활동으로 미성년자 고용업소를 정기적으로 순시하도록 한다. 향락업소에서는 미성년자 출입과 취업의 묵인, 주류 제공 및 판매 행위, 음란비디오 상영, 숙박시설에서의 미성년자 혼숙 등 각종 변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청소년의 탈선 및 범죄의 온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감독이 요구된다. 공원이나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가출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귀가 조치하거나 보호 기관으로 의뢰하도록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지역 청소년상담실, 경찰계, 구청, 병원, 학교 등간의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어 연계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청소년가출 관련 상담기관

서울YMCA 청소년쉼터	02-737-6349
부산 청소년쉼터	051-621-0042/0142
인천청소년쉼터	032-761-4855
대한성공회 쉼터	02-877-7942
열린문 쉼터	02-207-4312
안산 예수가정 돌꽃피는 학교	0345-85-3900
서울동부시립아동상담소	02-248-4567
서울시립아동상담소	02-813-7741
청소년선도회	02-216-2472/5
나눔의 집 청소년상담소	02-534-8366
나자렛의 집	02-691-5960
청소년상담소	02-591-7000
기독교청소년상담실 또래의 전화	02-264-0691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 정신건강상담실	02-732-3183

* 참고문헌

- 나눔의 집 청소년 상담소. 1993. 전화상담 사례집.
- 나동석·이용교 역. 1991. 가출청소년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문화체육부. 1996. 청소년백서.
- 서울YMCA. 1991. 청소년연구조사활동보고서. 서울YMCA 청소년상담실.
- 서울YMCA. 1995. 청소년쉼터 리포트.
- 서울YMCA. 1995. 청소년을 돕는 사회적 지지망 형성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 서울YMCA. 1995. 외국 가출청소년 연구자료집.
- 서울YMCA. 1996.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청소년쉼터의 과제와 전망. 청소년쉼터 개설 5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 서울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1993. 귀 자녀도 가출할 수 있습니다. 제 8회 청소년상담세미나 자료집.
- 서울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1994. 청소년 가출 어떻게 할 것인가? 제 9회 청소년상담세미나 자료집.
- 이용교. 1992. 가출. 한국청소년개발원 편저. 청소년문제론.

7장. 청소년폭력

청소년폭력의 발생 빈도나 잔인성, 조직성, 폭력행위의 동기를 살펴볼 때, 청소년폭력은 우리사회의 해결하기 어려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가 되어 버렸다. 청소년폭력에 대한 심각성은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장과 논의만 무성할 뿐,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최근 들어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검찰청의 주도 하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다방면으로 전개하고 있고, 청소년폭력 예방재단이나 교육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반드시 필요한 활동으로 청소년폭력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단결된 움직임이 없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청소년폭력의 실태, 원인 및 대책을 다룸으로써 청소년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폭력에는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협을 가하는 여러 유형의 범죄로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 유인하는 행위 모두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며, 학자에 따라서는 도구적 폭력, 개인간 폭력, 이념적 폭력과 동기없는 폭력, 또는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 또는 대인폭력, 대물폭력, 피해자가 없는 폭력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행위에 이르는 청소년폭력의 실태, 원인 및 대처방안등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1. 청소년폭력의 실태

‘청소년백서(1996)’에 수록된 공식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총범죄 중 소년범죄의 비율은 1991년을 기준으로 1992년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93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95년도에는 91년 비해 21.2%나 증가하여 전체 범죄의 증가율(17.1%)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표 7-1 참조).

<표 7-1> 총 범죄대비 소년범죄 구성현황

(단위 : 명,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총범죄	1,540,914 (100.0)	1,542,035 (100.1)	1,738,952 (112.9)	1,660,973 (107.8)	1,804,405 (117.1)
소년범죄	102,537 (100.0)	99,301 (96.8)	110,604 (107.9)	108,342 (105.7)	124,244 (121.2)
구성비율 (%)	6.7	6.4	6.4	6.5	6.9

자료 : 대검찰청

소년범죄 중 학생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1991년도에 전체 소년범죄의 55.1%였던 학생범죄가 1995년도에는 66.4%에 이르고 있다(표 7-2 참조).

<표 7-2>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전체범죄 (A)	소년범죄		학생범죄	
		인원 (B)	구성비 (B/A)	인원 (C)	구성비 (C/B)
1991	1,540,914(100.0)	102,537(100.0)	6.7	56,496(100.0)	55.1
1992	1,542,035(100.1)	99,301(96.8)	6.4	57,057(101.0)	57.5
1993	1,738,952(112.9)	110,604(107.9)	6.4	66,074(117.0)	59.7
1994	1,660,973(107.8)	108,342(105.7)	6.5	69,611(123.2)	64.3
1995	1,804,405(117.1)	124,244(121.2)	6.9	82,442(145.9)	66.4

※ 자료 : 대검찰청

1995년 소년범죄의 동기를 살펴보면, 우발적 범행이 24.8%로 가장 많고, 이욕 17.8%, 부주의 13.2%, 취중 9.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욕 중에서도 유흥비 조달이 41.4%를 점하고 있어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학생범죄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은 유사하다. 요컨대 뚜렷한 목적보다는 우발적이거나 부주의, 호기심, 유흥을 못이겨 일어나는 경우가 전체의 48.9-53.0%를 점유한다는 사실에서 청소년범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 선도방안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표 7-3> 1995년 소년범죄의 동기별 현황

(단위 : 명)

총계	이 욕	사행심	원한분노	부주의	가정불화
124,244	22,122	1,066	1,492	16,366	134
	유 욕	우발적	취중(호기심)	현실불만	기타
	1,278	30,813	12,346	1,117	37,510

자료 : 대검찰청

<표 7-4> 1995년 학생범죄의 동기별 현황

(단위 : 명)

총계	이 욕	사행심	원한분노	호기심	가정불화
82,442	13,172	662	897	8,263	85
	유 욕	우발적	현실불만	부주의	기 타
	775	20,911	816	13,769	23,092

자료 : 대검찰청

1995년 소년범죄의 유형별 분석에 의하면 폭행, 상해, 공갈 등 폭력범이 38.2%, 절도, 횡령·배임, 작물, 사기 등 재산범이 26.0%,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범이 3.5%, 교통사범이 42.8%로 나타나고 있다. 1991년에 비해 강력범은 21.9%, 폭력범은 15.0%, 재산범은 26.3%, 교통사범은 46.7%가 각각 증가하였다. 재산범은 1993년 이후 매년 8-9%의 대폭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교통사범은 '91년에 비해 '95년에 46.7%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7-5 참조).

<표 7-5>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계	102,537	99,301	110,604	108,342	124,244
강력범	3,568	3,324	4,662	6,942	4,349
폭력범	41,337	36,622	40,380	45,140	47,523
재산범	25,611	26,073	28,099	31,842	32,338
교통사범	20,997	22,875	21,457	23,485	30,808
기 타	11,024	10,407	16,006	7,950	9,226

자료: 대검찰청

소년폭력범을 범죄별로 보면 상해와 폭행은 감소하는 반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은 대폭 증가하였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은 2인 이상 공동범행, 흉기소지범행, 상습범행, 야간범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의 증가는 폭력범이 집단화, 상습화, 흉폭화, 야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년폭력범의 심각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범죄백서, 1996). 또한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구 10,000명당 범죄인 수는 91년도의 62.1명에서 95년의 74.1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한편, 1995년 학생범죄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폭력사범(38.2%)이 가장 많고 다음이 절도사범(22.5%), 강력사범 2.6%의 순이다. 학생폭력사범 경우 1991년을 기준으로 볼 때 1992년에 감소하였다가 이후 1995년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학생인구 10,000명당 범죄인 수는 91년의 34.2명에서 95년의 45.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생범죄 중

폭력범죄의 비중이 가장 높고, 질적인 면에서 단순폭행을 넘어 집단폭행이 많아지며, 잔인해졌고, 폭행 결과,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등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표 7-6> 학생범죄의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계	폭력범	절도범	강력범	기 타
1991	56,496	21,333(37.8)	13,410(23.7)	756(1.3)	20,999(37.2)
1992	57,057	20,336(35.6)	14,085(24.7)	822(1.4)	21,814(38.2)
1993	66,074	23,286(35.2)	14,968(22.7)	1,167(1.8)	26,653(40.3)
1994	69,611	25,143(36.1)	17,307(24.9)	1,730(2.5)	25,431(36.5)
1995	82,442	31,491(38.2)	18,552(22.5)	2,140(2.6)	30,259(36.7)

* 자료: 대검찰청

비공식 통계에 의한 청소년폭력의 동향은 어떠한가. 실제로 청소년폭력은 실태조사를 통해 쉽게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경험적 연구가 미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청소년폭력의 상황이 결코 방치될 수 없는 사회문제라는 것을, 그 심각성의 일면을 알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 설문조사(1995) 결과에 의하면, 지난 한해 동안 폭행을 당한 학생은 초등학생 43,738명, 중학생 103,829명, 고교생 49,215명으로 모두 19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빼앗긴 금액은 초등학생 2억3천7백여만원, 중학생 9억5천4백여만원, 고교생 4억7천8백여만원으로 모두 42만여명의 학생이 총 16억6천9백여만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조선일보, 1995. 12. 5).

1995년 형사정책연구원이 조사한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결과에 의하면, 90년 3,704건, 92년 5,196건, 94년 5,296건, 95년 8월까지 4,044건의 학교폭력이 적발되었다. 피해 내용으로는 금품 피해가 22.6%, 폭력 피해가 14.1%, 협박등 심리적 피해가 15.8%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의 36.1%가 피해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청소년종합상담실이 중고등학생 9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한 학교생활, 건강한 청소년 또래문화형성을 위한 설문조사(1994)에서도 1-2년 사이에 금품갈취나 절도당한 경험이 33.1%, 위협이나 협박을 당한 경험은 30.8%,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은 2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 놀림을 당한 경험이 20.6%, 성추행 15.9%, 성폭력 3.6%로 나타났다.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상담분석(1995) 결과에 의하면 피해학생 중 일회성 피해 16.1%, 상습적 폭력피해 27.0%, 금품피해 16.2%이며 협박피해는 20.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자료를 볼 때, 청소년폭력은 이미 위험 수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안 YMCA(1994)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학생이 12.1%, 사람 만나기 꺼리는 학생이 7.9%로 나타났다. 등·하교시 폭력에 대한 대비로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닌다는 학생이 18.1%, 빼앗길 것에 대비해서 비상금을 가지고 다닌다는 학생이 8.5%, 방어용 무기를 가지고 다닌다는 학생이 4%나 된다는 결과 역시 이미 학교 주변의 폭력은 일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위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청소년폭력의 특징

근래 발생하는 청소년폭력 사건 및 사례에서 발견되는 청소년폭력의 주요한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폭력은 단독범행보다 2인 이상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소년의 폭력집단은 단순한 패거리 집단, 조직적인 규율을 갖고 움직이는 불량씨클, 성인폭력조직과 연계된 하부폭력조직 등이 있다.

둘째, 청소년폭력의 잔인성은 단순비행이나 탈선의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태에 이르고 있다.

셋째, 폭력을 저지른 후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청소년폭력은 비행청소년에게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에게서도 쉽게 발견되는 일반화된 행위 유형이 되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은 보복성 폭력이나 약물이나 음주를 동반한 폭력도 있으나, 뚜렷한 목적이나 동기가 없이 장난삼아 충동적으로 폭력을 저지르기도 한다.

3. 청소년폭력의 원인

청소년폭력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란 간단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청소년폭력은 청소년기의 발달심리적 요인과 가정, 학교, 사회적 환경과 같은 구조적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청소년폭력의 원인을 발달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에 있어 정신적, 신체적으로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학업, 진로, 자아정체감등 해결해야 할 과업이 많으며, 자신에 대한 주위의 기대나 자신의 욕구, 그리고 자신이 처한 현실간에는 괴리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시기이다. 자아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이나 자극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기 쉽고, 욕구가 좌절될 때, 공격적이 되며,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때 자기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충동적이고 자제력이 부족하고, 반항적이며, 적대감이 큰 경우, 폭력적인 행위를 하게 되며, 폭력 행사를 통해 악자를 괴롭히는 쾌감과 우월감을 경험하게 된다. 가해 학생은 위축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감정적 증오감은 보복감을 유발하여 폭력을 낳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둘째, 청소년폭력을 유발하는 가족적 요인으로 가족해체를 들고 있다. 결손가정이나 이혼 증가를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매우 피상론적 견해이다. 보다 구체적 요인으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대적, 거부적, 폭력적, 방임적 양육태도, 부모의 일관성 없는 양육태도와 부부간의 잦은 불화 및 알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 양육된 대부분의 자녀는 사회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동기가 결여되고 초자아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며, 가족에 대한 결속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더 이상 안식처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가족은 청소년 자녀를 비행의 거리로 내몰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청소년 자녀는 부모의 무관심과 부모

의 폭력에 위축되고, 강한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공격적인 문제해결 방식으로 폭력을 모방하게 된다. 가족의 상대적 빈곤감 역시 청소년들로 하여금 열등감과 좌절감을 초래하게 되어 공격성향을 부추길 수도 있다.

세제, 학교교육이 갖는 여러 역기능적 요인 역시 청소년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기존의 사회질서 안에서 성취를 위한 통로가 차단되었다고 느낄 때, 일탈행위를 함으로써 눌렸던 분노와 좌절을 표현하고 나아가 자아정체감과 자존심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관행, 획일화된 교육과정 및 성적평가, 열악한 교육환경, 비인간적인 교육풍토는 청소년에게 공부에 대한 지나친 중압감을 줌과 동시에 인생의 낙오자를 양산하고 있다. 아직은 가능성이 있고, 저마다의 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라는 잣대에 의해 문제집단이 형성되고, 낙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은 힘을 필요로 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남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본다.

네제,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폭력무감주의, 생명경시주의와 치안부제는 청소년폭력을 부추기고 있다. 폭력적 상황을 접할 때, 누구하나 나서서 이를 제지할 수 없을 만큼, 폭력사건은 잔인하고 집단적으로 발생되어, ‘폭력행위를 저지, 저항하기 위해 정의로운 시민정신을 갖고 행동하자’고 주장하기에는 이미 폭력이 사회 및 개인에게 너무도 위협적이 되어버렸다. 대중매체의 폭력에 대한 빈번한 노출, 폭력에 대한 미화, 폭력에 대한 합리화 역시 폭력 행사에 대한 죄의식을 약화시키며, 도덕의식이 약한 사람에게는 방아쇠 효

과가 있다. 퇴폐·폭력문화를 조장하는 잡지, 만화, 광고, 불법비디오 등의 범람과 유흥업소, 비디오방, 락카페등 청소년 유해환경의 잦은 노출 역시 청소년폭력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4. 청소년폭력 관련 법규

폭력범은 형법상의 상해 및 폭행의 죄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인을 가르킨다. 폭력범죄는 기본적으로는 형법의 의해 규제되며 죄질에 따라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서는 청소년폭력이 행해진 경우 어떤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형법(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 존속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57조1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57조2항).

○ 중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58조1항).

-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58조2항).

○ 상해치사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59조1항).

○ 폭행, 존속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가료에 처한다(제260조1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0조2항).

○ 특수폭행

- 집단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1항 또는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1조).

○ 상습범

-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상습적 폭행등

- 상습적으로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폭력에 의한 권리사용 방해, 공갈 또는 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조1항).
- 야간에 또는 2인이상이 공조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

에는 각 형법조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2조2항).

○ 집단적 폭행

- 집단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개인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조1항).
- 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조2항).
-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3조3항).
- 이 범위반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제3조4항).

○ 단체 등의 구성·활동

-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제4조1항).
 -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4조1항1목).
 -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4조1항2목).
 - 그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4조1항3목).
-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4조2항).
 - 공무방해죄 중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 등의 무효·공용물 파괴, 살인죄 중에서 살인, 폭탄·승낙에 의한 살인 등, 위계 등에 의한 폭탄살인 등, 예비음모의 죄,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업무방해, 경매·낙찰의 방해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약취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강간,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 상습범, 예비·음모의 죄를 범한 자.

· 이 법의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

-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의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4조3항).
-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4조4항).

○ 단체 등의 이용·지원

- 제4조1항의 단체나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기타형벌 규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그 죄에 대한 형 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제5조1항).
- 제4조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나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5조2항).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정강력범죄의 적용범위(제2조)

- 살인의 죄 중 살인·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폭력살인, 미수범
- 약취와 유인의 죄중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등,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상습범
- 정조에 관한 죄 중 흥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수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및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의 죄

- 강도의 죄 중에서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약취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상습범, 미수범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단체 등의 구성·활동(제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단체등의 조직(제5조8항)

○ 소년에 대한 형

-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제4조1항).
-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4조2항).

5. 청소년폭력 감소를 위한 방안

청소년폭력은 청소년기의 발달심리적 특성과 가정, 학교, 사회적 요인의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년폭력 감소를 위한 대책 강구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청소년폭력을 예방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조직적 공동대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단편적이고 일시적이며 산발적 대책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최근의 청소년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검찰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민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국민의 일상생활 현장에 접근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려는 취지 하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초기에는 판이 주도하여 기구 결성과 구체적 운동을 전개하고, 점차 범국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순수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운동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드는 점에 의의있는 움직임이다. 여기서는 후원회도 결성하고 전화와 인터넷 신고 상담도 운영하고, 기구에 대한 홍보도 하며 학교폭력,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수시 단속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실효를 거두고 오랜 동안 존속될 수 있으려면 뒷받침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 교육부, 문화체육부, 경찰청, 대검찰청 관할 기구들은 서로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협조 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위 기구 관계자간의 책임 전가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과 장소와 시간대를 파악하여 알리고,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는 것도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 경우, 민간인의 신변상 안전을 위해 집단 활동을 권유하는 것이 좋으며, 이들의 폭력관계 신고에 대해 위 기구들은 즉각적 대응을 해야 이들은 나름대로의 참여 활동에 대해 의의를 찾을 수 있고,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청소년관계 지도자들은 이러한 활동에 동참하거나 다른 지역사회 협의체에 소속되어 지도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초 정보로서 폭력청소년이나 가해청소년의 특징과 이들을 대할 때 유의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폭력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욕구좌절의 경험이 많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충동적이고, 분노와 공격성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출하지 못한다는¹⁾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폭력 청소년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관념적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위에 따르는 법적 구속력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의 엄격성, 범법 행위에 따르는 장·단기적 불이익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둘째, 폭력청소년을 둔 가정은 대체로 가정내 다른 폭력이 이미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부부폭력이나 부모자녀간 폭력은 청소년자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방하게 되고 폭력에 대해 무감해질 수 있으며, 문제해결 수단으로 폭력 사용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폭력을 행사한 가해청소년 역시 폭력문화가 빚어낸 피해자라는 시각에서 이들을 대하여 하며, 폭력 가정은 전문적 가족상담을 요하므로, 관련 기관에 의뢰하도록 한다.

1) 가해자 징표

- 중학교 성적이 초등학교보다 상당히 나빠지고,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심해진다.
-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어릴 때부터 도둑질, 강탈, 음주 등 반사회적 활동에 참가한다.
- 어른들에게 자주 반대하고 공격적이다.
-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며, 충동적이다. 좌절, 장애물을 참지 못하며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 다른 학생들을 힘과 위협으로 굴복시키거나 자기 주장을 강요한다.
- 다른 학생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괴롭힌다.
- 권력과 지배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 다른 학생의 성장환경에 적대감을 품고 있다.

셋째, 청소년폭력은 흔히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피해/가해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대해 각별히 파악하도록 한다. 이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 시간대, 행동반경, 활동의 종류, 또래간의 협약등을 파악하여 청소년 지도시 참고한다.

넷째, 지도자는 피해청소년의 행동적, 심리적 특징을 바르게 알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피해청소년은 위협에 시달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스스로 자기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의사결정을 할 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청소년은 주변에 도움을 주려는 사람에게 조차 자신의 상태를 알리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지도자는 이들에게 비밀이 보장되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느낌이 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해청소년 대상으로 폭력이 잦은 지역을 알려주고, 가능하면 그 지역을 피하거나 혼자서 다니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는 등 주변의 폭력 행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주변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설, 전화번호등을 알려준다.

다섯째, 우연한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에 의해 비행 청소년으로 낙인되는 경우가 없도록,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야 한다. 한번 비행청소년으로 낙인찍히면 이것이 굴레가 되어 다른 비행에도 관련자로 주목받기 쉬운 사회적 풍토 속에서 청소년의 개선 의지는 꺾이기 쉽기 때문이다. 폭력청소년은 소속감 상실, 의미있는 타자와의 관계형성 기회의 상실과 진로나 직업에 대한 정

체감형성 기회의 상실을 경험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사회적 지지당을 형성해서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개입활동을 모색하도록 한다. 우범 소년과의 결연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만약 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여섯째, 청소년지도자는 폭력 징후에 대해 알아두며, 청소년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중 가정이나 학교, 또는 상담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알리고 유기적인 연대를 도모하도록 한다.

폭력징후는 청소년폭력 예방재단이 발간한 학교폭력백서(1996)와 교육부(중앙일보, 1997. 9. 8)에서 제시한 폭력당한 학생의 행동상 특징을 참고하면 청소년 지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부모가 발견할 수 있는 징후 ◀

- 비싼 옷이나 운동화를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다.
- 상처나 멍이 많이 발견되지만 ‘그냥 다쳤다’, ‘넘어졌다’고 답한다.
- 가방이나 공책에 ‘죽이라’와 같은 폭언과 욕설이 쓰여 있다.
- 용돈이 모자란다고 하거나 몰래 돈을 집어간다.
- 맥없는 표정을 짓거나 우울해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며 갑자기 화를 낸다.
- 두통, 복통을 호소하거나 학교에 가기 싫어하며 자주 지각, 결석한다.
-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와 같이 노는 일이 없고, 방에 틀어박혀

있다.

- 식욕이 없으며, 전화오는 것을 싫어한다.
- 친구, 선배로부터 자주 전화가 걸려오며 부모 눈길을 피해 슬쩍 나간다.
- 갑자기 전학을 보내달라고 한다.

▶ 교사가 발견할 수 있는 징후 ◀

- 옷이 지저분하거나 단추가 떨어지고 구겨져 있다.
- 안색이 좋지않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 눈치를 본다.
- 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른다.
- 항상 힘겨루기 대상이 된다.
- 휴식, 점심시간에 외톨이가 된다. 혼자서만 하는 행동이 두드러진다.
- 험담을 들어도 반발하지 않는다.
- 몸이 아프다며 결석이 잦아진다.
- 성적이 떨어진다.
- 친구의 심부름을 한다.
- 학급 내에서 제대로 발언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인상을 준다.

▶ 폭력을 피하기 위한 행동수칙 ◀

- 다툼은 주먹 대신 대화로 해결하고 싸움 현장에 얼씬거리지 않도록 한다.
- 집 근처 안전한 길과 도움을 받을 만한 장소를 알아 두고 본능

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낌이 들면 무조건 피한다.

-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어오면 상대하지 않고 일단 자리를 피한 뒤 선생님이나 부모 또는 주위 사람에게 알린다.
- 폭력을 당했을 때,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주위의 도움을 청한다.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진다.
- 더 이상 주위 친구나 후배들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협력하고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각종 모임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모범을 보인다.

일곱째, 학교폭력의 가해/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법적, 의료적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폭력은 실정법과 관련된 인권 문제로, 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자기방어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가해청소년 구제를 위해 무료법률 지원을 모색하고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활동상의 지침을 참고한다면 적어도 폭력으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수를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해져 있는 폭력미화, 폭력 무감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폭력문화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6. 청소년폭력 관련 상담기관

대검찰청	02-3480-2828
서울지검	02-530-2828
인천지검	032-446-2828
외정부지검	0351-879-2828
수원지검	0331-216-2828
춘천지검	0361-240-4282
대전지검	042-284-2828
청주지검	0431-63-2828
대구지검	080-666-2828
부산지검	051-256-2828
창원지검	0551-85-2828
광주지검	062-233-2828
전주지검	0652-75-2828
제주지검	064-51-2828
청소년폭력예방재단	02-585-0098
청소년 대화의 광장	02-253-3813
서울시립 아동상담소	02-814-0020, 02-813-7741
동부시립 아동상담소	02-248-4567 ~ 9
서울 목동 청소년 회관	02-646-6818, 646-8341
본동 종합 사회복지관	02-817-8052
서울시 청소년 사업관	02-797-8081, 02-796-7057
안산 노동회관	0345-492-3901, 494-2054

계요병원 청소년 의료센터	0343-55-3333
인간발달 복지연구소	02-583-7071
부천 종합사회복지관	032-349-9192
한국 심리상담연구소	02-335-0970~1
보라매 청소년상담실	02-848-7268
원광 아동상담센터	02-561-2082
의정부 YMCA 청소년상담실	0351-872-5151
서초 YMCA 청소년상담실	02-599-8462
영등포 YMCA 청소년상담실	02-676-6114
경기도 청소년 종합상담실	0331-251-3792
인천 청소년 종합상담실	032-888-2161
대구 청소년 종합상담실	053-654-2002
부산 청소년 종합상담실	051-804-5001
대전 청소년 종합상담실	042-257-2000

* 참고문헌

- 구창모. 1992. 폭력.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문제론.
대검찰청. 1996.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자료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6.
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 1996.
조선일보. 1995년 12월 5일.
중앙일보. 1997년 9월 8일.
진태원. 폭력과 비행. 의사신문. 1996년 4월 18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5. 상담분석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6.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예방에서 대책까지. 한울림출판사.
학교사회사업학회. 1997. 학교폭력과 사회복지의 과제.

8장. 청소년성비행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보면 이중적인 상반된 두 문화가 공존하는 듯 하다. 하나는 학교와 가정을 중심으로 한 성문화이며, 다른 하나는 매스컴을 중심으로 한 성문화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아이들이 성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이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성세대들은 성적으로 무지하거나 성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순진하고, 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아이를 조숙하거나 문제아로 보는 경향이 있다. 성에 대한 금기시하는 이러한 분위기는 필연적으로 성에 대한 왜곡된 문화를 창출하게 된다.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의 시선을 피해 나름대로 성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한다. 특히, 직접 행위를 하지 않고 호기심 충족 내지 대리 만족을 할 수 있는 ‘보는 성’이 상품화하기 시작하면서, 법적 규제를 피해 청소년에게 무차별하게 보급된다. 각종 비디오, 컴퓨터 게임, 영화, 음란잡지등을 통해 알게 되는 성은 공격적, 파괴적이며, 쾌락적 부분으로 그려지고 특히, 여성은 성적인 대상으로만 전달되는 등 왜곡된 태도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심각하다.

본 절에서는 청소년성비행의 실태, 원인, 관련 법규 및 대처방안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 성비행의 유형

사회 변화에 따라 성규범 역시 크게 변했으며, 이에 따라 성행동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 역시 변했다. 정절을 중요시 여겼던 시대에는 결혼전 성행동과 혼인관계 이외의 성행동을 일탈로 간주하였으나, 최근의 동향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줄 아는 경우의 성행위는 문제를 삼을 수 없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행동이 기존에는 폭력이나 절도와 같은 중비행으로 분류되었으나, 성에 관한 행동은 개인적인 일로 간주되는 등 성관념의 변화와 함께 점차 지위비행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면을 참고하여 여기서는 성범죄보다는 성비행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자 한다.

성비행에는 광범위한 여러 행태가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성애도 성비행에 포함될 수 있다. 동성애가 정상적인 하나의 인정받을 수 있는 성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은 최근까지도 격렬하게 일어왔다. 최근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는 정신질환의 진단에서 동성애를 삭제했다. 그러나 의학적인 판단에서는 아닐지라도 문화권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를 성비행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성도착증은 성행위나 성적 흥분을 위해 비정상적 대상, 상상, 행위 또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지칭한다. 성도착증 가운데 상상만 하는 행위는 해가 없으나, 심한 것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여기에는 여성물건애, 의상도착증, 관음증, 노출증, 음란전화, 성적 가학증, 소아기호증등이 포함된다.

성폭력은 강간, 추행, 근친강간, 성적 희롱, 성기노출, 음란행위등이 포함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포괄하는 광범

위한 개념이다.

대한가족계획협회(1994)에서 분류한 성비행 역시 앞서의 경우와 유사하며 다음과 같다.

○음란물탐닉 비행

음란만화, 소설, 잡지등 탐닉/ 음란비디오, 영화 시청
음란물건 사용 장난

○대체물품비행

성기대체물비행/ 여성물건접촉/ 이성복장 착용

○이성희롱비행

부녀자희롱, 노골적 음담/음란전화, 편지, 통신/ 성기노출/
홈쳐보기/ 남성접대, 유혹

○강제추행비행

강제추행/부녀자기습추행/ 남성성기 구강, 항문삽입
여성성기 이물질 투입

○동의성교비행

미혼성교/ 윤락가출성교/ 매춘, 윤락/ 혼외성교/ 근친상간/

○강제성교비행

강간/ 어린이강간/ 집단윤간/ 강도강간/가정파괴강간

○변태성교비행

가학성교/피학성교

이상 살펴본 바, 청소년 성비행은 청소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과 관련된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지칭하는 매우 포괄적 개념으
로 볼 수 있다.

2. 성에 대한 인식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는 남녀사이의 진정한 애정과 신뢰에
기반한 성관계가 아닌 성행위들을 자극적으로 조장하고 있으며, 근
본적으로 남녀불평등 관계를 더 뿌리깊게 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식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상담소(1996)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성이라는 말에
서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성관계·키스, 이성교제, 사랑·순결
순이라고 응답했으며, 여학생들은 성이 부끄럽고, 두렵거나 더럽다
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남학생은 흥미롭거나 도전하고 싶
다는 반응을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내고 있어 성별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은 성충동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
며, 성충동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충동을 느
껴본 적이 없다는 청소년은 여학생의 13.64%, 남학생 중 4.78%이
다. 성충동을 느끼게 될 때는 남녀 모두 음란비디오나 만화를 보았
을 때, 선정적인 옷차림의 여성을 보았을 때, 잘 생긴 이성을 보았
을 때, 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라고 응답하였다. 성충동을 느낄
때에는 그냥 참는다는 경우가 50.6%로 가장 많고 운동이나 취미활
동을 한다는 경우가 20.0%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청소년개발원(1995)의 연구에 의하면, 성에 대한 욕구를 느끼지 않는 여학생은 38.6%이며, 남학생은 6.8%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성적 자극을 받는 때는 영상매체를 볼 때이며 가장 많은 성관련 고민은 성충동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민은 상담실이나 전문가와 상의하기 보다는 주로 친구와 의논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행위에 대한 생각은 자연스런 발달과정으로 보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지위비행의 경험이 있는 경우 성행위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추하게 보는 경향이 많았다. 이성교제의 시기는 중학교 때가 가장 많고, 부모 모르게 사귀는 경우는 4명에 1명꼴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이 혼전 성관계를 부정하고, 남녀 모두 순결을 꼭 지켜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는 도덕적 양심 때문이라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정신건강, 임신우려 등을 지적했다. 한편 혼전순결을 꼭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경우도 연구에 따라 24-40%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이성교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 성비행의 실태

성비행에 대한 실태는 다른 어떤 비행보다도 파악하기 힘들다. 대체로 공식통계에 대한 자료는 강간관련 통계와 성폭력 특별법에

의거한 통계자료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신고되지 않고, 적발되지 않은 사건을 고려한다면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1) 공식통계에 나타난 소년강간범죄의 추세

소년강간범은 1966년 377명에서 1995년 1,526명으로 지난 30년간 약 4배 증가하였다.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소년강간사범은 1984년 이후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1991년 이후 5년간 추세를 보면 강력범 중 강간범은 절대수치나 비율 면에서 다시 증가했다가 1995년에 이르러 모두 감소했다.

<표 8-1 > 연도별 소년강간범

(단위 : 명)

연도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인원	377	614	1,100	2,278	3,266	2,675	1,526

* 출처 : 범죄백서(1996)

특히, 여기서 우려되는 바는 학생범죄 중 강력범의 절대수치는 전체 청소년범죄 수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달리 증가하여 전체 소년 강력범 중 학생강력범의 비중이 91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강력범에는 살인, 강도, 방화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간범의 증가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없

지만, 학생강간범 역시 증가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는 청소년 인구 중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

<표 8-2> 소년강력범 중 학생강력범 비율

(단위 : 명, %)

년도	1991	1992	1993	1994	1995
청소년	3,568	3,324	4,662	6,101	4,349
학 생	756(21.2)	822(24.7)	1,167(25.0)	1,730(28.4)	2,140(49.2)

* 출처 : 범죄백서(1996)

(2) 비공식통계에 의한 청소년 성비행의 실태

성비행에 대한 경험적 조사자료는 매우 미흡하다. 중·고생을 대상의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에 나타난 청소년 성비행, 성경험, 음란물 접촉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청소년 성비행에 관한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 성비행 경험

전국 남자고등학생 2,365명을 대상으로 성비행 경험유무를 조사한 연구(김준호외, 1990)에 의하면, 음란서적(74.4%)이나 음란비디오 관람(67.4%) 경험이 가장 많고, 성추행(39.7%)이나 여성희롱(21.4%)도 적지 않게 보고되었으며, 성관계 경험율은 13.0%로 나타났다.

<표 8-3> 청소년성비행 경험율

(단위 : 명, %)

항목	음란 전화	여성 회랑	여성 추행	강간	음란서 적소지	음란 비디오 관람	성관계	남녀 혼숙
사례	276	505	938	87	1,760	1,591	308	438
비율	(11.7)	(21.4)	(39.7)	(3.7)	(74.4)	(67.4)	(13.0)	(18.5)

* 출처 : 김준호외, 1990.

최근 청소년의 성경험율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고등학교 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청소년개발원(1995)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관계 경험율은 7.5%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인문계보다는 실업계가,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소년이, 흡연이나 유해업소 출입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성관계 경험율이 높았다. 이들은 주로 호텔이나 여관 등 숙박업소가 21.7%, 본인들의 집이 30.2%, 자취방이나 하숙방이 26.5%로 나타났다.

서울의 남녀 고등학교 1,0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김준호외, 1996), 이성과의 성관계 경험율은 12.1%로 나타났고, 음란물 접촉은 65.8%로 자주 발생하는 비행으로 나타났다. 이 빈도는 1990년도 조사결과보다 낮은 수치인데, 대상에 여학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8-4> 청소년성경험 정도

성경험 정도	없다	한두번 있다	여러번 있다
음란서적 및 비디오 테이프보기	34.2%	37.8%	28.0%
이성과의 성관계	86.3%	8.7%	4.9%

* 출처 : 김준호외(1996)

일반 고등학생 1124명과 소년원 수용생 346명을 비교한 설문조사(김준호외, 1995)에 의하면 성관계 경험율은 학생과 수용생간의 차이가 현저하고 일반학생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의 경험 이 많다. 음란물 접촉은 남자가 여자보다 경험율이 높지만, 여자 수용생의 경우 남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5> 학생과 수용생의 성경험 비교

구분	성 경 험		음란물 접촉	
	학 생	수용생	학 생	수용생
남 자	15%	77%	90%	94%
여 자	8%	80%	49%	83%

* 출처 : 김준호외(1995)

2) 성폭력 가해 경험

서울시 중학생 1,489명 대상으로 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설문조사(1996)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3.48%가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 성폭력 가해대상은 모르는 사람이 19.5%일 뿐이고, 이성 친구나 동성친구, 동네 아이, 친인척 등 아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성폭력을 했던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 23.3%, 중1학년 25.6%, 중2학년 41.9%로 나타나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중학생이 되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은 혼자서 행한 경우가 21명(46.7%)인 반면, 두 명 이상이 가해한 경우가 24명(53.65%)으로 나타나 청소년 성폭력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 장소는 주로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학교나 그 주변, 상대방의 집이며, 약 60%의 경우 폭력이나 흥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유형은 표 8-6과 같다.

<표 8-6> 청소년 성폭력 가해유형

(단위 : 명, %)

구 분	강 간	성 추 행						합 계
		신체 접촉	음란메 시지(전 화,통신)	음담 패설	성기 노출	추근거 림(대중 교통)	기타	
여학생	4 (11.8)	19 (55.8)	5 (14.7)	3 (8.8)	0 (0.0)	0 (0.0)	3 (8.82)	34 (100.0)
남학생	12 (8.8)	66 (48.5)	15 (11.0)	27 (19.9)	6 (4.4)	7 (5.2)	3 (2.2)	136 (100.0)
전체	16 (9.4)	85 (50.0)	20 (11.8)	30 (17.7)	6 (3.53)	7 (3.5)	6 (3.6)	170 (100.0)

* 출처: 한국 성폭력상담소(1996)

3) 성폭력 피해 경험

청소년은 성폭력의 가해자일 뿐 아니라 주된 피해자이기도 하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 청소년 종합상담실(1994)에서 중고생 9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적 놀림을 당한 경험이 20.6%, 성추행이 15.9%, 성폭력이 3.6%로 성피해 경험이 39.1%로 나타났다.

서울시 중학생 1,489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설문조사(1996)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약 11.4%의 청소년이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표 8-7> 청소년의 성폭력피해 경험

(단위 : 명, %)

구분	여학생	남학생	전체
피해 경험	103(15.54%)	44(6.97%)	147(11.36%)
피해 무경험	560(84.46%)	587(93.03%)	1147(88.64%)
합 계	663(100.00%)	633(100.00%)	1294(100.00%)

* 출처: 한국 성폭력상담소(1996)

청소년 성폭력의 피해 유형 중 강간당했다는 경우는 여자 4.1%, 남자 2.8%이며, 성추행 피해 가운데 남녀 모두 신체접촉이 가장 많고, 음란메시지, 성기노출등이 비교적 많이 보고되었다.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해자가 누구였는지 알아본 바, 여자는 모르는 사람에게 당했다는 비율이 여자 44.6%, 남자 24.4%인 반면, 아는 사람에게 당했다는 비율은 여자 55.4%, 남자 75.6%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 중에는 남녀 모두 이성친구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8-8> 청소년 성폭력의 피해유형

(단위 : 명, %)

구분	강 간	성 추 행						합 계
		신체 접촉	음란 메시지 (전화, 통신)	성기 노출	추근 거림 (대중 교통)	음담 패설	기타	
여학생	16 (4.1)	130 (32.9)	64 (16.2)	59 (14.9)	64 (16.2)	37 (9.4)	25 (6.3)	395 (100.0)
남학생	4 (2.8)	69 (48.9)	20 (14.2)	20 (14.2)	9 (6.4)	9 (6.4)	10 (7.1)	141 (100.0)
전체	21 (3.9)	199 (37.1)	84 (15.7)	79 (14.7)	73 (13.6)	46 (8.6)	34 (6.3)	536 (100.0)

* 출처: 한국 성폭력상담소(1996)

성폭력은 길가는 도중(36.6%)과 이성교제 중(25.4%)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성폭력 피해 장소는 대중교통 안(27.9%), 자신 또는 상대의 집(28.9%), 학교나 학원, 집 주변(20.5%) 등이며, 유흥장이나 여관은 10% 정도로 나타났다. 자신이나 상대방의 집에서, 이성교제 중에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일반론을 뒷받침해주는 바이다.

성에 대한 피해경험으로 인해 성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관이 형성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 방법과 아울러 포괄적 의미의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4. 성비행의 원인

성에 대한 다양한 태도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성에 민감하고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성에 대해 비교적 폐쇄적인 학교와 가정을 벗어나면 사회는 온통 성지상주의 세계처럼 성의 우상화와 성의 상품화가 극에 달해 있으며, 성 개방 풍조로 인해 무규범 상태를 방불케 한다. 게다가 기계론적인 현대 사회의 특성상, 인간은 외로움과 존재 상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성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허전함, 공허함, 무의미함에 빠져 더욱 성에 집착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의 이러한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는 세대는 역시 청소년이다. 자신의 신체 발달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며, 성충동이 강한 청소년들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속도가 다를 수 있다. 즉, 교사로부터 인정을 받는 청소년은 재미있고 자극적인 성인 중심의 성문화가 펼쳐진다고 해도, 자신의 삶의 목표달성을 위해 눈앞의 욕구를 유보시킬 수 있지만,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은 자극적이며 쾌락적인 성문화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고, 빠져들기가 쉽다.

또한, 청소년의 성가치관 여부, 즉, 전근대적인가, 개방적인가에 따라 성문화에 대한 반응은 다를 수 있다. 전근대적인 보수적 성가치관을 지닌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 수치감과 죄책감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성에 대해 개방적인 청소년은 공허감과 의미상실감, 즉 허무주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편에

속하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청소년이 성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기는 매우 어렵다.

성비행 각각의 유형에 따라 발생 원인은 차이가 나지만, 성비행은 앞서 언급된 사회적 조건과 개인 성향과의 상호작용 결과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등 영상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성에 대한 이미지, 태도 및 행동은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확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집단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학습되는 경우,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별다른 죄책감 없이 성비행을 저지를 수 있다.

성비행 원인을 개인 차원에서 찾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공격성이 높고, 충동의 절제와 자아통제력이 형성되지 못한 경우, 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여성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큰 경우, 성비행을 한다. 특히, 유아기의 애정적 접촉의 부족이나 아동학대의 증가, 양육방법의 혼돈, 이혼율의 증가 등은 성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성비행을 한다.

성지식이 많아 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거나 성지식의 결여로 무분별한 성에 대한 태도를 가질 때 성비행을 하기도 한다. 부정적 자아정체감을 갖거나 진학에의 욕구도 충족하기 어렵고 자기생활에 대한 주관성이 결여된 경우, 가족내 문제가 있는 경우, 욕구충족의 대상을 이성에서 찾아서 즉시적이고 강렬한 성적 요구에 탐닉한다.

성비행 중 사회의 주된 관심 영역이고, 행위 결과가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성폭력의 원인에 대해서는 간략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성폭력의 원인을 거시적으로 가부장적 가족제도에서 찾는 경우가 있다. 가부장제 내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성을 소유한다는 관점, 즉 여성은 성적 자율권이 없는 수동적 존재라는 것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성폭력이 유발된다고 본다. 남성은 성 본능이 강한 반면, 여성은 성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고정관념 역시 성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각종 성 관련 산업은 성적 쾌락주의를 부추기고, 남성적 성을 과장하고 왜곡시키는 성문화를 조장하기 때문에 성폭력이 유발된다. 이러한 거시적인 배경은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되며,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에 의한 성폭력은 이 외에도 다른 성 비행의 원인과 유사하게 호기심이나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또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 개인적 열등감과 다른 곳으로부터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성폭력을 할 수도 있다.

5. 성폭력에 관한 그릇된 지식

남성의 성경험은 남자로서의 강함을 상징하며, 여성의 성경험만을 문제삼는 성에 대한 이중기준은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잔존한다. 이러한 기준은 여성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게 하고,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했던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성에 대한 바른 가치관 정착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강간만이 성폭력인가. -- 아니다. 성폭력에는 광의의 성비행이 포함될 수 있다.

▶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다 -- 강간은 인간의 권리를 무시한 육체를 짓밟는 행위로 폭력이다.

▶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 사람들은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느끼지만 대부분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 성폭력은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나는 우발적 범죄다 -- 이러한 생각은 '남성의 성욕은 본능적이며 충동적이고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전제된 것이다. 가해자에 관한 한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을 하게 된 동기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소외감의 표출일 때가 많고 때로는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거나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성폭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성폭력이 쉽게 이러한 수단이 되는 것은 남성의 성을 억제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여성의 성을 남성의 소유로 생각하는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여성비하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여성들의 심한 노출이 성폭력의 주범이다 -- 그렇지 않다. 간접적인 유발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주 요인은 아니다.

▶ 대부분의 강간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 그렇지 않다. 가해자 중에는 아는 사람의 비율이 더 많다.

▶ 강간범은 정신이상자다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 강간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폭력과 흥기까지 동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6. 청소년 성비행 관련 규제법규

(1) 형법 제 32장(강간과 추행의 죄)

○ 강 간

- 폭력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7조).

○ 강제추행

- 폭력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98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저항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과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제299조).

○ 미수범

-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 강간등 상해·치상

- 강간 내지 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301조).

○ 강간등 살인·치사

- 강간 내지 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301조2항).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302조).

○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03조1항).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하는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03조1항).

○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

-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만하여 음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04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13세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하는 자는 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한다(제305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특수강도강간 등(제5조)

- 추거침입, 야간추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야간추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 내지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5조1항).
- 특수강도 또는 특수강도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 내지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5조2항).

○ 특수강간등(제6조)

- 흉기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6조1항).
- 흉기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6조2항).
- 흉기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제6조3항).
- 흉기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한 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른다(제6조4항).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7조)

-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7조1항).
-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7조2항).
-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제7조3항).
-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한다(제7조4항).

○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제8조)

-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한다.

-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8조)
 - 13세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8조1항).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백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8조2항).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제8조3항).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제8조4항).

○ 강간등 상해·치상(제9조)

- 제5조1항, 제6조 또는 그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9조1항).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9조2항).

○ 강간등 살인·치사(제10조)

- 제5조 내지 제8조, 그 미수범의 죄 또는 강간 내지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제10조1항).
- 제6조 내지 제8조, 그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0조2항).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

-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조1항).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조2항).

○ 미수범(제12조)

-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0조(강간등 살인·치사)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 교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제14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호관찰등(제16조)

-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제16조1항).
-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2이상 병과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하여야 한다(제16조2항).

7. 청소년 성비행 발생 감소를 위한 노력

청소년 성비행은 쉽게 드러나지 않고, 유형도 다양하고 유형별 발생요인이 각기 다르며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비행 발생을 줄이기 위한 지도자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성비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여기서는 성적 발달로 인한 청소년의 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지도자로서 지녀야 할 성에 대한 태도 및 청소년 지도활동시에 강조할 사항이나 행동상의 유의사항등을 정리한다.

(1) 성에 대해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인식시키자.

문화 전반에 걸쳐 성과 쾌락의 추구가 과잉평가되고, 그 영향력이 막강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의 의미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청소년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성은 매우 중요한 인간행동의 본능적 요소의 하나이지만 그것이 남녀관계의 전부가 아니며, 다른 범주의 인간의 욕구와 행동과 깊이 연관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이해되고 추구되어야 한다. 인간의 성적 욕구 충족 방식은 문화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설계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예컨대 인간의 기본 욕구 중

식욕의 경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가 문화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인간의 성욕 충족 방식도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맺는가라는 문화적 설계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성이란 사랑과 인격을 전제로 하는 행동으로서 무한한 자유란 존재하지 않고, 통제와 극복이 요구되며,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따르는 행동임을 강조해야 한다. 퇴폐향락적 문화가 근절되고, 우리사회에 올바른 성문화 정착은 누구나 바라는 바이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유해 환경을 한 순간에 없애버릴 수는 없다. 현 시점에서 청소년이 자극적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단지 그러한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자기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철저한 자기관리 능력을 갖도록 인식시켜야 한다.

청소년들이 이를 인식함으로써 성이 상품화되고 과잉평가되고 저질화되는 점에서 야기되는 허무감과 공허감, 분노감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고 오히려 성을 통해 인간문화와 대인관계가 좀 더 풍부해질 수 있다.

(2)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를 알아두자.

청소년기에 있어서 성은 갑작스러운 변화이고 그 변화의 무게 역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상의 원인을 성적 변화에 대한 충격으로만 설명하려 들고, 필요 이상으로 집착해서 성의 지배를 받기도 하며 불안감과 부담감 때문에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사회 내에는 성에 대한 개방과 보수주의라는 상반된 입장이 분명하게 공존하고 있어 이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상반된 입

장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청소년들 중에는 자신이 현대의 개방적 흐름에 너무 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뒤늦음 때문에 성에 대한 자각수준도 뒤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자신의 성적 유능함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성이라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성적 매력이나 외모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 착각에 빠진 청소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3)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성지식을 정확하게 알자.

성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청소년에게 일일이 가르칠 기회가 없다 해도, 적어도 청소년지도자라면 청소년 심리나 문화, 신체 변화등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남녀를 불문하고 성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이성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권하고, 청소년기에 걸 맞는 행동을 일러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은 성교육관련 서적이나 청소년관련 서적을 참조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는 남녀 청소년에게 각각 강조해야 할 성행동 관련 사항을 제시한다(대한가족계획협회, 1994).

남자 청소년에게

- ▶ 자신의 성적 충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것이 왜 자체 되고 극복되어야 하는가를 강조한다.
- ▶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를 예측하고, 자신의 충동

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 ▶ 여성에 대한 강제행위가 법으로 얼마나 중벌로 처벌되는지 인식시킨다.
- ▶ 성에 대한 남녀간의 성차를 알려준다. 여자도 남자처럼 똑같이 성충동을 느끼고 원한다고 생각해서 행동에 옮기는 일이 없도록 한다. 여자들은 온정적, 정서적 관계가 형성되어도 남자들이 생각하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린다.

여자 청소년에게

- ▶ 남성의 성충동은 여성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누누히 강조해서 교육해야 한다. 여자가 남자를 대할 때, 반드시 적개심을 가지고 대할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순진하고 온정적으로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 남자들의 공격적인 태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알려주어야 한다. 수치심에 쌓여 모른체 하거나 자포자기 상태는 남성의 성에 대한 공격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 남녀 모두 순결을 지켜야 하나, 특히 여자의 경우 강제에 의한 성관계는 결코 순결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일을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하는 것도 결코 죄악이 아님을 교육해야 한다.
- ▶ 일단 성폭력이 일어난 이후에 대해서는 그것을 과감하게 던고 일어서는 강인한 정신력을 교육해야 한다. 한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신을 확대하지 않도록 하며, 마치 길을 가다가 돌 뿌리에 걸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야기해 준다. 왜냐하면 그 같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좌절과 자포자기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자초하기 쉽기 때문이다.

(4) 성폭력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자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반박할 수 있도록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해야 한다. 흔히 성폭력을 순결상실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성폭력은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가하는 폭력의 형태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5)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상의 특징을 알아두자.

성폭력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 만큼 남에게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상의 징후를 알아두는 것은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들과 대화시에 참고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성폭력피해(강간/윤간/성적가혹행위) 직후의 특성

영역	영향
정서반응	남성에 대한 공포, 혐오감, 부끄러움, 죄책감. 분노, 적개심, 의욕상실.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소리가 날 때마다 깜짝 놀람. 자신에 대한 혐오감, 열등감. 타인에 대해 공격적임. 여자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움. 식구가 눈치채지 않았나 불안함.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소극적으로 변함. 결벽증, 대인 기피증.
신체증상	임신에 대한 불안감. 불면, 식욕 상실, 두통으로 시달림. 처녀막 손상, 세균감염, 하혈. 딸이 없어짐. 온몸이 쑤시고 심한 건망증. 누가 알까봐 항상 얼굴이 달아 오름.
성적발달	성에 대한 혐오감, 두려움, 거부감. 성적으로 자신을 포기함. 과도한 성적 호기심과 관심표현.
사회 적응력	남성에 대한 불신, 혐오감, 기피증. 학교에 가기 싫음. 직장생활의 어려움으로 그만둠. 대인관계 위축. 학습장애, 집중력 상실, 무단결석, 결근, 사직. 가출시도, 자살소동.
가족관계	가족에게 걱정이 많아지고 우울해짐. 서로 피함. 더욱 잘해 주려고 함. 가족 중에는 피해자의 태도를 더 비난하고 잘못을 피해자에게만 돌리는 경우도 있음. 동네 부끄럽다고 집을 떠나기 원함.

성폭력(강간/윤간/성적가혹행위)의 장기적 영향

영역	영향
정서적 반응/ 자기인식	자포자기, 자기학대. 자살시도. 신경질적임. 낮은 자아존중감. 전망증. 시간 경과에 따라 잊어버리고 명랑 쾌활성 회복. 혼자 있을 때가 많아지고 우울하고 잠념이 많음. 고립감을 느끼거나 의존적 성향이 높아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이상적 사고를 잘못함. 억지를 잘 부림. 정신분열증. 대인기피증.
신체적 장애/ 해리	불안증. 공포증. 신경쇠약. 두통과 악몽에 시달림. 원치않은 임신에 대한 신경쇠약 증세. 신경질과 짜증이 늘어남. 병적 식욕과다/식욕감퇴.
성애의 영향	성불감증. 성적 죄의식. 성적 불안감. 성적 자아존중감 낮음.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 성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 과도한 성행위 추구.
사회적 기능에의 영향	직장 생활 포기. 대인기피. 친구와의 관계 단절. 학업 중단 또는 가출, 윤락행위에 빠짐. 자녀에 대한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 약물중독. 알콜중독.
대인관계의 영향	가해자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 남자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 대한 불신. 고립감으로 인해 모든 관계가 원만치 못함. 모든 사람이 알 것 같은 두려움.
가족관계	부모는 부끄럽게 여기며, 놀라고 당황해하나 곧 사태수습. 대화가 안 되고 숨김. 술만 마시고 식음을 전폐. 가정파탄, 부모의 음주 증가.

(6)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두자

성폭력피해자를 만나면 일단 피해자는 충격으로 인해 일관성없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한다. 예를 들면 지도자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공감해 주고 진실하고 현실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성폭력피해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조금하게 모든 것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

초기상황에서 파악해야 할 성폭력 피해 정보

* 가해자에 관한 사항

- 신체적 묘사
- 차량, 옷, 집 묘사
- 가해자와의 친분관계 여부 및 친분정도

* 발생 상황

- 가해의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구체적 묘사
- 발생장소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도 가해에 참여했는지?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선물이나 기타 다른 물건을 가져 왔었는지?

* 발생 장소

- 주소와 위치
- 혐의자가 피해자를 처음 가해했던 장소는?
- 가해 장소에서 가해자는 가해 후 그대로 가버렸는지?
- 가해 장소에 남긴 물건은 없는지?

* 발생 시간

- 일시
- 첫번째 혐의자가 가해했던 일시는?
- 가해가 반복되었을 시 지속경도와 시간온?

* 가해 과정

- 가해 과정에 대한 구체적 묘사
- 가해에 있어서 음란비디오, 음란서적 등을 사용했는지,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 가해를 위해 사용한 무기, 도구, 위협은 무엇이었는지?
- 가해시 약물, 술을 사용했는지 여부(종류 등)

* 피해자의 외관상 특징과 행위

- 신체적 외상(타박, 창백한 표정 등)
- 옷매무새, 화장 상태, 머리모양
- 기초상황 판단능력 상실, 혼돈, 비논리적 등
- 정서적 반응(울음, 히스테릭, 공포 등)

* 피해자가 증인으로로서 가능한지 여부

- 가해자를 판별해 낼 수 있는지?
- 고소를 원하는지?

성폭력피해자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망을 모색해본다. 의학적, 법적 조치를 주선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의료기관이나 법률사무소, 상담소간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지역사회 내 팀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 일을 보다 쉽게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의과적 진료나 치료는 성병이나 임신여부, 상처부위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진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성폭력을 당한 후 가장 긴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이다.

둘째, 가족이나 친지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거나 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 등이다.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흥분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발생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흥분을 가라앉힌 후, 자녀를 다그치지 말고 침착한 태도로 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자녀에게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자녀가 가장 편히 마음놓고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자녀의 입장을 헤아려 부모 스스로 중심을 잡도록 돕는다.

셋째, 대처방법은 법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4). 이에 관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이에 앞서 여성법률상담소나 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문의하여 어느 정도 법률적인 지식을 갖도록 한다.

(7) 성폭력퇴치 방법을 널리 홍보한다.

성폭력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폭력퇴치 방법을 널리 알려져야 한다. 일례로 정부 제2장관실(1992)에서 발표한 성폭력 퇴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항할 것. 단호하고, 분명하게, 필요에 따라서 소리지르거나 공격하는 등 적극적 저항이 효과적이다. 머뭇거리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 ▶ 생리 중 혹은 몸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 교제 중이라 해도 가급적 성충동을 유발하기 쉬운 상황은 만들지 않도록 한다.
- ▶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분노한 감정을 폭력적인 강간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 ▶ 혐오스러운 일을 벌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트림을 하거나 코 후비는 등 지저분한 행동으로 성적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 ▶ 가능하다면 도망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성폭력 피해를 위해 이에 앞서 유의해야 할 행동이 많다. 낯선 차를 타지 말도록 하며, 외출 시에는 자극적이거나 노출이 심한 옷을 삼가한다거나 자기 방어를 위한 도구나 호루라기를 지니고 다니도록 한다. 도움이 필요로 할 때에는 비명보다는 ‘불이야’라고 소리치도록 한다.

(8) 성폭력가해자를 대할 때의 유의 사항

일반적으로 성폭력가해자는 도덕성이 결여된 범법자로서 낙인찍힌다. 그러나 이들 역시 대중언론 매체의 무분별한 상업성과 기성세대의 무책임한 행동의 피해자이다. 특히,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정서적으로 외로운 존재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하고, 성에 대한 인식 역시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

성폭력은 혼자서 하기보다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함께 함으로써 소속감이나 동질의식을 느낄 수 있고, 영웅심이나 승리감등을 고취시켜 주므로, 죄책감이나 불안보다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나 자부심이 생겨서 동조한다고 한다. 이 경우 소속감과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대체 행동(운동이나 기술습득)을 할 것을 권하는 것이 좋다.

별다른 죄책감 없이 성폭행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가해자의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 결과의 파장을 예상해 보게 하거나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중범죄인지를 알려주는 것도 방법이다.

성적 욕구조절 능력이 약화되어 상습적인 성폭행을 하는 경우는 전문치료기관에 의뢰해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며, 이를 통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9) 유해매체 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와 감독

앞서 성비행 실태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이 음란비디오나 음란디스켓, 만화를 접하는 비율은 점차 늘고 있다. 청소년들은 친구나

동네 비디오가게에서 구한 음란서적이나 비디오를 친구 집이나 여관 등에서 집단으로 돌려보며, 여기에 대단한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주위 친구에게 이야기를 한다. 한번 재미를 느낀 청소년은 더욱 이 끌리게 되고, 모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등 부작용이 커진다. 본 경험이 없는 친구는 주위 친구들이 궁금증을 부추기고, 본인 또한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를 구입하거나 직접 가서 즐길 수 있는 곳을 찾게 된다. 음란매체에서 그려지는 성은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해 쾌락적, 순간적, 공격적, 변태적인 부분을 강조한 것라고 청소년들이 구분해낼 수만 있다면 문제는 덜 심각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 사이에 이 행태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법적 구속력이 강해지면서 이에 관한 풍속도는 달라졌다 해도, 일부 취급업소나 유통업자들은 주고객인 청소년을 붙잡기 위해 불법 판매를 감행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자는 이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청소년 유해매체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10) 성에 대한 건강한 태도 확립을 위한 지침

여기서 다룬 성비행 관련 내용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왜곡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자연스럽게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지침이다. 여기서는 앞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청소년지도자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가족과 성상담소에서 펼친 지침을 제시한다.

청소년의 개인적 수칙

- ▶ 성에 대해 궁금한 것은 전문교사나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한다.
- ▶ 성충동을 느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 ▶ 성충동은 스스로 조절하고 자제할 수 있는 것임을 안다.
- ▶ 이성친구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 ▶ 성관계란 단순히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한 표현임을 안다.
- ▶ 성관계를 통해 임신이 될 수도 있으므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
- ▶ 비디오, 잡지/만화,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에 나타난 성에 대한 묘사 중에는 과장되고 비정상적인 것이 많다는 것을 알자.
- ▶ 성폭력은 성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폭력행위임을 깨닫는다.

부모의 수칙

- ▶ 자녀의 성장에 따른 변화에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다.
- ▶ 자녀의 질문에 편견을 주거나 숨기지 말고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 ▶ 자녀가 성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 당황하지 말고 솔직하고 일관된 태도를 갖는다.
- ▶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성교육을 준비한다.

- ▶ 부모 자신도 ‘바른 성’에 대한 공부를 한다.
- ▶ 부모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전문교사나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한다.
- ▶ 자녀의 이성교제를 인정하고 상호 인격적인 만남이 되도록 돕는다.
- ▶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 앞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 ▶ 부부의 건강하고 평등한 관계가 자녀의 건강한 성의식과 성행동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의 수칙

- ▶ 청소년이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상담기관을 학교나 지역사회에 둔다.
- ▶ 학교, 학원가 주변에 청소년들에게 지나친 성적 자극을 주는 포스터나 광고물을 규제하는 감시체계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만든다.
- ▶ 음란 비디오나 서적을 대여하거나 팔기 전에 “모든 청소년은 나의 자녀”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
- ▶ 영화, 비디오 등의 등급제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지킨다.

8. 청소년 성비행 관련 상담기관

한국성폭력상담소	일반상담	02-529-4271-2
	위기상담	02-573-1888
한국여성의 전화		02-263-6464
광주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062-363-0042-3
가족과 성상담소		02-643-8484
아동학대예방협회		02-776-8000
생명의 전화		02-763-9195
서울 YMCA 청소년상담실		02-599-8462
서울 YMCA 성상담센터		02-735-1551, 1563
서울시립아동상담소		02-814-0020
자비의 전화		02-737-7374-6
나눔의 집		02-605-4580
대한가족계획협회 부설 상담실		
서울 청소년성상담전화		02-634-8213
서울 청소년상담실		02-855-0625
부산 청소년상담실		051-624-5584
인천 청소년상담실		032-522-1569
인천 청소년종합상담실		032-888-2161
수원 청소년상담실		0331-257-3233
청주 청소년상담실		0431-63-2000
대구 청소년상담실		053-566-1900
창원 청소년상담실		0551-61-6219

* 참고문헌

- 광주 YWCA. 1997. 청소년유해환경 시민학교, 청소년유해환경감
시단 교육자료집.
- 문화체육부. 1996. 청소년백서.
- 한국성폭력상담소. 1996. 안전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
- 한국성폭력상담소. 1996.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한국성폭력상담소
교육자료1.
- , 1997. 나눔터 제21호.
- , 1996.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및 대책. 세미나 자료집.
- 심영희 외. 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 김준호 · 고경임 · 노성호 · 최원기. 199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 김은경. 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 김은경. 1996. 법의식과 비행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서울가정법원소년자원보호협의회. 1995. 청소년성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 대한가족계획협회. 1994. 자녀성교육.
- 이규미. 1994. 성 바로 아는 내가 좋다. 희성출판사.
- 한국여성개발원. 1995. 성폭력상담의 실제.

4
7
5
5

Ⅲ. 청소년과의 거리좁히기

...

Ⅲ. 청소년과의 거리 좁히기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자신의 진로나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여 불안과 긴장감을 느끼게 되며, 여러가지 결정해야 할 상황에 처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시기이다. 게다가 요즘의 청소년들은 과거와 비교할 때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끼지만, 청소년을 자극하는 요란한 사회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적응상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다. 기성세대의 청소년과 청소년문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 역시 청소년의 반발심을 자극하여, 청소년 자신이 감내해야 할 것마저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본 지침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소년이 현실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루었다.

청소년이 직면한 문제상황을 이해하고, 문제행동 유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문제행동의 원인을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문제행동의 각 영역에 따라 원인은 다소 다르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로 정리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로서의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1장.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하는 주된 원인은 개인, 가족, 학교와 사회등의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공격성과 충동성이 높은 경우라든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거나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학업성적에 대한 고민, 학업생활에 대한 부적응, 가정환경에 대한 비판 및 반항, 또래에 대한 동조성, 사회의 정의감에 대한 불신, 폭력을 미화하는 사회분위기, 유해환경에의 노출등이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서 가족, 학교, 사회의 제반 환경을 정화함으로써 문제행동의 유발을 막을 수 있으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문제행동을 하고, 누구는 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 개체로서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비정상적 행동이건 문제행동이건간에 이유없는 행동을 하는 자는 없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행동도 행위자에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탐색하기 이전에 그릇된 행동에 대해 안타까와 하면서 행위자를 설득하려 한다거나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기 보다는 더욱 더 우리 자신과의 차이를 지각할 수 있을 뿐이며, 행위자를 돕는 것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인간의 행동은 욕구충족 행위로서, 행위자 자신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추구하는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있으며, 개인마다 욕구충족을 위해 밖으로 표출하는 행동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공통적으로 생존을 위한 욕구, 소속감 또는 애정에 대한 욕구, 재미에 대한 욕구, 자유로움에 대한 욕구, 힘에 대한 욕구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본드를 흡입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은 대체로 본드를 하면 나쁘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이 행동을 반복한다. 중독이 되어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무언가 위로받고 소속감을 느끼며 힘도 갖고 싶는데 본드흡입을 통해 이러한 욕구가 충족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에 따라 소속감과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다.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많은 행동 중에서 하필이면 문제행동을 하느냐고 문제삼을 수도 있으나, 행위자는 의식을 했건, 아니건 간에 그 방법을 선택한 것이며, 우리가 문제삼는 많은 문제행동 역시 욕구충족행위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행동의 바탕에 깔려 있는 다양한 욕구를 이해할 때, 부정적 행동을 긍정적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용이하며, 청소년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는 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고, 긴장과 혼란 속에 노출되며, 다양한 경험이 부족하고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지각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며, 실제로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 또는 과장하거나 비현실적 기대를 갖게 되기 쉬워 좌절하기 쉽다. 지속적인 욕구의 좌절은 주요한 타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상실하게 하여, 비행 예방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 학교 및 기타의 규범적인 집단과의 유대를 형성할 수 없게 되며 문제행동을 유발하기 쉽다.

2장. 청소년과의 거리좁히기 위한 노력

청소년은 기성세대를 현실에 대해 타협하는 실리를 추구하며 권위를 중시하는 세대로 간주하는 반면, 기성세대들은 청소년을 감성적, 충동적이며,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지각능력이 부족한 미숙한 세대로 보호와 관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지각의 차이는 서로 더 멀게 느끼게 하며 세대차이를 더 크게 느끼게 된다.

특히,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을 지도한다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청소년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고 가르치려는 태도를 보이기 쉽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청소년은 구속감과 반감을 느껴 저항함으로써 두 세대간의 거리를 좁히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청소년과의 거리를 좁히면서 이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고를 갖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긍정적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문제행동의 발발을 감소시키며, 인간을 위한 유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개인, 가족, 학교, 사회등의 변신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청소년에게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초래하는 것, 자신의 행동이 법에 어떠한 저속을 받는가에 대해 정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문제행동을 억제하고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상당부분이 충동적이고 인내심 부족으로 발발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자기감정 통제를 위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거나 분노나 공격성,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등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일 수 있다.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삶의 형태를 보이는 가족의 와해된 기능을 회복하고, 적응력을 키워갈 수 있는 가족원 대상의 심리적 지원과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다. 가족원간의 바른 대화법을 가르치고, 갈등 해소방안 제시가 여기에 속할 것이다. 학교에서 중시하는 입시위주의 운영을 벗어나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다양한 준비교육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역시 필요한 대안이다. 또한 우리사회에는 성인중심의 퇴폐, 쾌락적 소비적 문화가 팽배되어 청소년이 건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정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는 청소년이 여가생활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동절기, 하절기 방학 또한 주변환경이 변하는 졸업진학기에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와 다양한 문화접촉 및 향수의 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문화의 지방화와 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참여권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 청소년문화 대책은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한다거나 정당은 독자적으로 청소년 복지 대책 전문위원회를 두거나 그런 위원회를 설치, 청소년 대책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청소년지도를 위한 민간의 인력을 확보하여 활용한다거나, 청소년 관계업소와 청소년 선도기관 및 기관 종사자간에 벌어지는 이해관계 중심 밀착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도 필요한 대안 중 하나일 것이다. 대중매체가 폭력적인 문화를 창출한다면, 감성적인 문화를 창출한다면 우리사회 역시 폭력적이고 감성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대중문화를 창출하고 보급하는 개인이나 매체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공동체적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이다.

이러한 대안은 매우 바람직하고 이상적이지만, 광범위한 장기적인 대안으로서 정책적인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비현실적인 주장이므로 여기서는 청소년지도자로서 청소년과 접할 때 지녀야 할 태도를 중심으로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이웃, 친구로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세대 특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선호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청소년은 성인의 간섭과 압력이 뒤따르지 않는 여가시간을 통해 독자적인 자기세계를 만들어 가고 자기를 발견하며 자기한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거나 성인의 경우에 비해 자신들의 이익과 비밀을 지키기 위해 생성되어 사용되는 은어를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세계를 반영하고 자기표현의 고유한 상징으로 삼고, 음악이나 의상을 통해서도 청소년은 독특한 개성을 발휘하고 싶어 하고 소속감과 동시에 차별화를 꾀한다는 등의 특징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기성 세대의 시각에서 이상해 보이는 옷차림, 머리모양, 한심해 보이는 가치관 등도 청소년들에게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행동인 것이다. 누구나 때로는 파격적 행동을 하고 싶어 하며, 특히 청소년기에는 그러한 성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시기이다. 과거의 청년기를 보낸 사람으로서 요즘의 청소년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인간행동 저변에 깔려 있는 욕구를 헤아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수의 청소년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

적인 방법을 취하고자 하나, 주변의 여러 유혹에 충심을 잡지 못하고, 보다 쉽고 간단한 자기중심적인 해결책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행동 나아가서는 범죄에 속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 문제행동이면, 범죄행위등간에 행동의 욕구를 읽어낼 수 있다면, 청소년의 행동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욕구 충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용이하다.

셋째, 청소년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와 분위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지도자와 의견이 다르고 설명 그릇된 가치를 표명한다 해도 일차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결심하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청소년은 결코 외롭지 않고 많은 위안을 받을 수 있다.

네째, 청소년문화의 존재와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건전한 청소년문화는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고 규범과 가치관을 제시해주며 젊은이의 걱정과 낭만을 건설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며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여 이탈 행위를 줄여 주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일부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놀이나 문화활동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유독 청소년에게 있어서 놀이나 재미의 중요성은 무시하며,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되는 공간에서 만나는 청소년은 모두 문제청소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을 보낼 만한

청소년 문화공간의 부재 및 문화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물이해는 청소년에게 반발심을 일게 하고, 보다 재미있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성인문화 공간으로 쉽게 유입되며 동시에 수입증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문화 공간은 많은 청소년을 유인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다수의 청소년이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 존재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상에 널려 있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거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변 환경에 대해 분별력을 갖게 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역량과 역할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주변의 안타까운 일들을 접할 때,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이 길을 나서는 지도자들은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남을 돕는다는 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한번 하고 그만 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행할 수 있을 만큼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안쓰러운 마음에 최대한 돕고자 하나,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법적이거나 의학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적절한 개입의 시간을 놓치게 된다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관련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청소년이 안고 있는 문제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기관에 의뢰하는등 교통정리를 제대로 하는 것

도 청소년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모두 살아가기 바쁘고, 돈벌이에 급급할 때 청소년들은 대중사회 속에서 무관심과 소외감을 느끼고, 현실도피적이며 터무니없는 환상에 취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향락산업은 돈을 위해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고 묵인하며 대중매체 역시 사회윤리를 마비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중매체와 향락산업의 힘은 막강하고 너무나 방대해서 개인이나 몇몇 사회단체의 대응으로는 고삐를 조일 수 없다. 이럴 때 가장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시민운동이다.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삶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단 시간에 변화나 개선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어도,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기꺼이 참여해야 한다.



부 록

<표 1> 청소년흡연 관련 규제법규

관련법	관련규제조항	처벌조항	기타
청소년보호법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제26조1항).	○ 제26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1조8항). *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제2조1항).	
미성년자보호법	○ 미성년자는 흡연을 할 수 없다.(제2조1항1목) ○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한 친권을 대신하여 이를 감독하는 자가 흡연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를 제지하여야 한다.(제3조) ○ 담배 또는 주류판매자 및 그 고용인은 미성년자에게 그가 흡연 또는 음주할 것을 알고 이들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제4조1항).	* 미성년자는 20세이하의 청소년을 지칭함. ○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6조1항).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법칙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제7조).	금지조항 친권자의 의무조항 영업자의 의무

관련법	관련규제조항	처 벌 조 항	기 타
풍속 영업 의규 제에 관한 법률	○ 풍속영업소에서 술과 담배를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 하여 미성년자에게 술 과 담배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조6항).	○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1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를 받는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영업정지·시설개수명령등 필요한 행정 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당 해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2항).	
국민 건강 증진 법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제9조2항). 19세미만의 자에 대해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제9조3항)	○ 제9조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제34조1항), 제9조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34조2항).	

<표 2> 청소년음주 관련 규제법규

관련법	관련규제조항	처벌조항	기타
청소년보호법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제26조1항).	○ 제26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1조8항). *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미성년자보호법	○ 미성년자는 음주를 할 수 없다(제2조1항1목). ○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한 친권을 대신하여 이를 감독하는 자가 음주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를 제지하여야 한다(제3조). ○ 담배 또는 주류판매자 및 그 고용인은 미성년자에게 그가 흡연 또는 음주할 것을 알고 이들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제4조1항).	* 미성년자는 20세이하의 청소년을 지칭함. ○ 제4조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6조1항).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법칙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제7조).	금지조항 친권자의 의무조항 영업자의 의무

관련법	관련규제조항	처 별 조 항	기 타
풍속 영업 의규 제에 관한 법률	○ 풍속영업소에서 술과 담배를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 하여 미성년자에게 술 과 담배를 제공하여서 는 아니된다(제3조6항).	○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1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를 받는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영업정지·시설개수명령등 필요한 행정 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당 해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2항).	

<표 3> 청소년 유해업소출입 관련 규제법규

관련법	관련규제조항	처 별 조 항	기 타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유해업소의 정의 (제2조5항) -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유해한 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풍속영업,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24조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해당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제24조2항).	○ 제24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0조2항). ○ 제24조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1조7항). ○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 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제54조).	양벌규정

관련법	관련규제조항	처 별 조 항	기 타
풍속 영업 의규 제에 과한 법률	○ 풍속영업의 범위(제2조) - 유흥주점영업 -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 증기탕업, 복합목욕탕업) - 소극장업 - 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 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및 비디오물감상실업 - 만화대여업, 무도학원 업, 무도장업 - 노래연습장업 ○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 혹은 그 종사자는 18세미만의 자를 풍속 영업소에서 유흥종사자 로 일하게 하여서는 아 니된다(제3조4항). ○ 풍속영업의 경우 대상 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이 풍속영업소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 여야 한다(제3조5항).	○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 혹은 종사자가 제3조의 규정을 위 반한 때에는 풍속영업소의 폐쇄, 6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할 수 있다(제7조). ○ 제3조 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2항). ○ 제3조 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8세미만자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처 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과 실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치 아니한다(제10조3항).	행정처분 벌칙

관련법	관련규제조항	처 벌 조 항	기 타
풍속 영업 의규 제에 관한 법률	○ 풍속영업소의 출입금지 연령(시행령 제5조) - 유흥접객업의 경우에는 20세 미만의 자 - 특수목욕장업중 증기탕 업의 경우에는 20세미 만의 자 - 전자유기장업중 성인용 전자유기자업의 경우에 는 18세미만의 자 - 소극장업중 18세미만의 자의 관람이 금지된 공 연물을 공연하는 경우 에는 18세 미만의 자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 업의 경우에는 20세미 만의 자 -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 는 18세미만의 자. 다만, 18세이상의 보호자나 친 족 또는 감독자를 동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양벌규정

관련법	관련규제조항	처벌조항	기타
미성 년자 보호 법	○ 선량을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유기장 등(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출입하는 행위를 미성년자들은 할 수 없다(제2조 1항3호). --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장소(시행령 제1조) 1. 미성년자가 관람할 수 있는 공연물 이외의 공연물을 공연하는 장소. 2. 풍속영업장소 중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 3.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장소. ○ 숙박업소, 해수욕장, 수영장, 공원, 관광지, 명승지, 기타 유원지에서 성도덕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미성년자는 할 수 없다(제2조1항4호) ○ 경찰서장이 미성년자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흥가 등에 설정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2조1항5호).		금지사항
			양벌규정

관련법	관련규제조항	처벌조항	기타
미성 년자 보호 법	-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 1.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영업장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2. 윤락행위가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3. 기타 경찰서장이 미성년자보호를 위하여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2조1항3호에 규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미성년자를 그 영업소내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제4조2항). ○ 제2조1항4호에 규정된 장소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대하여 성도덕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제4조 3항).	○ 제4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백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6조1항). ○ 제4조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조2항).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6조의2항의 벌칙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제7조).	벌칙 벌칙

<표 4> 청소년 약물남용 관련 규제법규

관련법	관련규제조항	처 별 조 항	기타
청소년보호법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제26조1항).	○ 제26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외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배포·대여한 자(항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한 자는 제외한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0조3항).	양벌규정
		○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5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가한다(제54조).	

관련법	관련규제조항	처 벌 조 항	기타
향정 신성 의약 품관 리법	○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판매·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주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제3조1항). ○ 18세미만자, 정신병자, 마약 기타 약물의 중독자에 대해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제20조1항).	○ 제3조1항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41조1항1목). ○ 제3조1항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40조1항1목). ○ 제20조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의 벌금에 처한다(제42조1항4목).	

관련법	관련규제조항	처벌조항	기타
마약법	○ 마약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마약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제6조1호). ○ 면허를 받은 마약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제제, 소분,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 또는 한외 마약의 제제를 하지 못한다(제4조).	○ 제6조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62조1항2호). ○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입·수출·제조·제제·소분·매매나 매매의 알선한 자는 수입·수출·제조·제제·소분·매매나 매매의 알선을 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60조1항1호).	
대마관리법	○ 대마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수수·운송·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제3조1항). ○ 행위의 금지 : 대마(중자의 검질 포함)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4조4호).	○ 제3조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매매 또는 대마의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제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9조1항1호). ○ 제3조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소지·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0조1항1호). ○ 제4조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0조3호).	

관련법	관련규제조항	처벌조항	기타
유해 화학 물질 관리 법	○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독물을 함유하는 물질 또는 이에 준하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제26조1항). ○ 누구든지 제1항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정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제26조2항).	○ 제26조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5조6호).	

<표 5> 청소년폭력 관련 규제법규

관련 법규	처 벌 조 항	기 타
형법 (상해 와 폭행)	○ 상해, 존속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57조1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57조2항). ○ 중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58조1항). -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과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58조2항). ○ 상해치사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59조1항). ○ 폭행, 존속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가료에 처한다(제260조1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0조2항).	

관련 법규	처 벌 조 항	기 타
폭력 행위 등처 벌에 관한 법률	○ 특수폭행 - 집단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1항 또는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1조). ○ 상습범 -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 상습적 폭행등 - 상습적으로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폭력에 의한 권리사용방해, 공갈 또는 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조1항). - 야간에 또는 2인이상이 공모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조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2조2항). ○ 집단적 폭행 - 집단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개인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조1항). - 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조2항). -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3조3항).	

관련 법규	처 벌 조 항	기 타
폭력 행위 등처 벌에 관한 법률	- 이 법위반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3항과 같다(제3조 4항). ○ 단체 등의 구성·활동 -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제4조1항). ·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4조1항1목). · 간부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4조1항2목). · 그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4조1항3목). -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증한다(제4조2항). · 공무방해죄 중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 등의 무효·공용물 파괴, 살인죄 중에서 살인,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예비음모의 죄.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업무방해, 경매·낙찰의 방해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약취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강간,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 상습범, 예비·음모의 죄를 범한 자. · 이 법의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	

관련 법규	처 벌 조 항	기 타
폭력 행위 등처 벌에 관한 법률	-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의 가입한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4조3항). -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4조4항). ○ 단체 등의 이용·지원 - 제4조1항의 단체나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기타형벌규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그 죄에 대한 형증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제5조1항). -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나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5조2항).	
특정 강력 범죄 의가 중처 벌에 관한 특례 법	○ 특정강력범죄의 적용범위(제2조) - 살인의 죄중 살인·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미수범 - 약취와 유인의 죄중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등,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상습범 - 정조에 관한 죄중 흥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수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및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의 죄	

관련 법규	처 벌 조 항	기 타
특정 강력 범죄 의가 중처 벌에 관한 특례 법	- 강도의 죄중에서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약취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 살인·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상습범, 미수범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단체 등의 구성·활동(제4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단체 등의 조직(제5조 8항) ○ 소년에 대한 형 -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 18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제4조1항). -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4조2항).	

<표 6> 유해매체 관련 규제법규

관련법	규 정 내 용	벌 칙 (형량)
청소년 보호법	○ 포장 또는 훼손의 금지(제16조) 누구든지 유해표시 및 포장을 훼손해서는 아니됨. ○ 판매금지(제17조) -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 불가 - 포장해야 할 매체물이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전시, 진열 불가 ○ 유해매체물의 수거·파기(제36조) - 청소년 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하거나 포장되지 않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수거 또는 파기 가능 ○ 유해매체물의 신고(제44조) -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유통된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 검사 및 조사(제35조1항) - 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검사, 조사할 수 있음.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 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제52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제50조1호)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51조3호) - 수거하지 않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제50조4호) -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53조)

관련법	규정내용	벌칙(형량)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 과징금의 부과(제13조) - 음반·비디오물 제작업자 또는 유통관련 업자의 허위 또는 부정등록하거나 기타 준수사항(시설기준 등)위반	○ 1천만원이하 의 과징금
	○ 벌칙(제25조) -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업자가 등록을 하 지 않고 음반 또는 비디오물 제작 - 추천을 받지않고 외국 음반 또는 외국 비디오물을 반입 또는 제조 - 심의를 받지 않고 판매·배포·대여·시 청제공 등과 시청등급위반하여 연소자에 게 판매·배포·대여·시청 제공 행위 등 - 제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 하고 판매·배포·대여 또는 시청제공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음반 또는 비디오 물을 제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몰수 및 가액 추징
	○ 벌칙(제26조) -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음반·비디오물을 판매·배포 또는 시청 제공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벌칙(제27조) -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	○ 300만원이하 의 벌금

관련법	규정내용	벌칙(형량)
	- 공윤의 심의를 받지 않고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 - 관계공무원의 검사·수거·제시물의 부착 또는 봉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한 음반·비디오물, 추천을 받지 않고 수입·제조·반입된 비디오물 또는 제조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없는자가 제조한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판매·배포·대여 또는 시청 제공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상영 ○ 과태료(제29조) - 표시의무, 신고, 납본 불이행 - 추천을 받지 않고 음반·비디오물 반입 - 허위보고 등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영화진흥법	○ 벌칙(제33조) - 등록을 하지 않고 영화를 제작 또는 수입 - 수입추천을 받지 않고 외국영화를 수입 ○ 과태료(제35조) - 신고를 하지 않고 영화제작 - 수입추천을 받지않은 외국영화의 선전물을 제작 배포 - 영화필름 및 대본의 제출의무 불이행 - 동시상영 의무 불이행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억원이하의 과태료

관련법	규정내용	벌칙(형량)
공 연 법	○ 벌칙(제27조) - 공연자의 등록의무, 공연장설치허가, 각본 등 심사,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선전물게시 금지, 외국인의 국내공연허가 규정 등 위반 - 공연자 및 공연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위반 - 정액외 요금 청구 금지 및 18세미만자 관람금지공연물에 대한 해당자 관람 금지 - 외국인의 국내공연시 허가내용과 다르게 공연 ○ 벌칙(제28조) - 공연장의 타목적 사용제한 위반 - 준수사항 위반 • 정원초과 입장 금지, 장내공연, 비상구 규정 등 -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검열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 ○ 과태료(제29조) - 폐업 등 신고 재해예방조치, 공연신고, 공연장의 청결, 관람료 등의 표시의무 위반	○ 200만원이하의 벌금 ○ 100만원이하의 벌금 ○ 50만원이하의 과태료

관련법	규정내용	벌칙(형량)
옥외광고물 관 리 법	○ 위반에 대한 조치(제10조) - 시·도지사는 미관풍치,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광고물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벌칙(제18조) -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을 표시 설치 - 신고를 하지않고 옥외광고업을 하는 경우 -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이하의 벌금
방 송 법	○ 벌칙(제43조) - 방송순서의 편성·제작이나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규제나 간섭 - 심의결정의 명령 위반 -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외국방송국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 ○ 과태료(제45조) - 심의 결정사항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지 않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관련법	규 정 내 용	벌 칙 (형량)
종합유선 방 송 법	○ 벌칙(제54조) - 송인을 받지 않고 외국의 방송프로그램을 수입하거나 외국방송 중계 또는 외국의 프로그램 제작업자와 공동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 종합유선방송의 편성에 관한 규제나 간섭 - 심의기준 위반하여 공서양속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음란물을 편성 송출 ○ 과태료(제56조) - 편성비를 초과하여 외국수입 방송프로그램을 편성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전기통신 사 업 법	○ 불온통신의 단속(제53조)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불온통신 금지 - 불온통신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 불이행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기간행 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벌칙(제22조) - 일간신문과 통신을 상호 겸영 금지위반 - 등록을 하지 않고 정기간행물 발행 -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외국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법	규정내용	벌칙(형량)
	○ 벌칙(제23조)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를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 ○ 과태료(제24조) - 납본, 자료제출요구,지사 또는 지국설치 신고불이행 등	○ 100만원이하의 벌금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 등록취소(제5조의2)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음란 또는 저속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 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침해 ○ 벌칙(제6조) - 등록을 하지 않고 출판사 또는 인쇄소 경영하거나 등록사항 부실 기재 ○ 벌칙(제7조) - 납본의무, 폐업신고 의무 불이행	○ 등록취소 ○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만원이하의 과태료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 벌칙(제16조) -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간행물 수입업 및 수입추천을 받지 않고 외국간행물 수입, 견본제출 명령 불이행 - 미풍양속 또는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풍속저해외국간행물”에 대하여 수입 추천을 하지 않거나 배호의 중지·제한 또는 내용삭제명령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당해간행물 몰수

청소년 성비행 관련 규제법규

관련법	처 벌 조 항
형 법	○ 폭력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97조) ○ 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제298조) ○ 강간내지 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301호) ○ 강간내지 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제301조2항)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받는 부녀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제303조1항).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제303조2항) ○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만하여 음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제304조)

관련법	처 벌 조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특수강도강간 -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 내지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5조1항). - 특수강도 또는 특수강도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 내지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제5조2항) ○ 특수강간등 - 흉기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협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6조1항) - 흉기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6조2항)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7조1항) -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7조2항) -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제7조4항) ○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13세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8조1항) -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백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조2항)

관련법	처 벌 조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제8조4항). ○ 강간등 상해·치상 - 제5조1항, 제6조 또는 그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제9조1항) ○ 강간등 살인·치사(제10조) - 제5조 내지 제8조, 그 미수범의 죄 또는 강간 내지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제10조1항) - 제6조 내지 제8조, 그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제10조2항)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제11조1항)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제11조2항)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교통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제13조)

관련법	처 별 조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 통신매체이용음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제14조) ○ 보호관찰등 -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함(제16조1항). -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2이상 병과할 수 있음.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여야 함(제16조2항)

